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2006. 12

김현숙 · 성명재

## 서 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령화 추세가 급진전되고 있다.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의료서비스 시설 및 활용도가 크게 증대되면서 평균수명이 급속히 신장되는 가운데 출산율이 극도로 저조해지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력 인구는 전체의 71.4%로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가능연령인구 비율이 떨어지는 한편 노인부양비율이 높아지면서 조만간 생산가능인구의 부족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은 종국적으로 노동력 및 인구 감소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제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서 여성노동공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정책대안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외국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여성노동공급의 활성화 방안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노동공급은 경제이론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노동공급이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보육 등의 문제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남성들의 노동공급에 대한 결정요인이 다르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한 정책도구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민감도(탄력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실증분석과 정책모의실험을 통해 정책시사점을 모색해 보기 위해 착수·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본원의 김현숙 박사와 성명재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여 완성하였다. 저자들은 연구진행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원내세미나와 익명의 외부심사자에 의한 연구결과물 심사 등을 통해 많은 조언을 얻었으며, 이를 연구결과에 적극 반영하여 연구성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었다. 이에 저자들은 원내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셨던 동료 및 선후배 학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노동공급 활성화 방안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여성노동공급 관련 이론 및 모형의 설정, 가계조사자료 및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정책모의실험을 통한 소득세제상의 개편방안 제안 등 이론과 실증분석 및 정책제언 측면이 모두 골고루 반영되어 있는 종합연구로서 관련 정책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이와 관련한 후속적인 학술·정책연구는 물론이고 관련 정책입안자들의 정책분석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담고 있는 연구결과는 저자들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들어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평균수명의 급속한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노년인구 수도 함께 증가하여 경제활동도 함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노동력 인구비중이 감소해가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여 미래의 노동력 풀(pool)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를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휴노동력은 현재 생산가능연령인구인 15~64세의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집단과 실업상태인 인력을 의미한다. 이 중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여성이며 여성 중에서도 가사, 육아, 학업을 이유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기혼여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장려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주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혼여성은 출산 및 육아를 통해 미래의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장려가 출산 및 육아부담을 가중시켜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는 대신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

면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둘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극복한 나라들은 예외없이 기혼여성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정착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일하는 여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하는 기혼여성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소득세체계를 개편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Child Tax Credit)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에 참가한 영유아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보육관련 비용의 세액공제를 통해 보육을 지원하게 되면 출산율의 저하도 방지하면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장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후소득에 근거한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를 효용함수가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함수라는 가정하에 구축하고 2004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여 기혼여성이 소득세 부담에 따라 노동공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였다. 남성의 노동

공급함수와 달리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세후소득에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 지출을 차감함으로써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였다.

세후소득을 산정할 경우에는 세후소득 자체가 세전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것이므로 노동공급시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변수의 내생성이 문제가 된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증분석시 도구변수법을 사용하였다. 세후소득에 대한 도구변수들로 기혼여성의 직장경력, 교육수준, 시간당 보육비용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2SLS 추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세전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을 차감한 세후소득에 대한 기혼여성의 보상임금탄력성은 0.23~0.26으로 세후소득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시 사용한 설명변수는 만2세 이하의 영아 유무, 만3~5세의 유아 유무, 자녀 수, 연령, 표본선택의 편의를 조정하는 항이다.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참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자녀 수나 연령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적인 소득세체계하에서는 실증분석시 최소자승추정법이나 도구변수법만으로 일치추정치를 구할 수 없고 누진적 소득세로 인해 생기는 비선형 볼록(non-linear convex)의 예산제약식하에서 이용가능한 이중오차모형(dual error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예산제약식상의 굴절점(kinked points)에서 노동공급시간과 여가의 선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구변수법을 이용한 추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를 반영하여 노동패널상의 개별 기혼여성마다 예산제약식을 만들어 균형점을 확인한 결과 굴절점에서 노동공급시간을

선택하는 기혼여성이 거의 없어 이중오차모형 대신 도구변수법을 이용하여 보상임금탄력성과 비보상임금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보상임금탄력성의 수치는 다른 나라 기혼여성의 보상임금탄력성보다 낮은 편이어서 기혼여성의 세후소득이 증가할 경우 여가 대신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크기는 미국 등의 나라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노동공급함수 추정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보육비용 지출을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때 과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종의 음(-)의 소득세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유사한 내용으로 면세점 이하의 기혼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과 유사하게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전제로 하여 지급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시나리오에 따라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정률 혹은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여성의 노동공급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디자인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를 세액공제해주고 근로소득이 500만~700만원인 경우에는 정책으로 150만원을 지원하며 700만~1,000만원인 경우에는 150만원에 근로소득 700만원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급증-평탄-급감구간을 도입하였다. 이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 참가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의

확대는 9.5%, 신규 노동시장참가비율은 19.6% 증가하여 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나타나는 소득창출효과는 필요재정규모의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정 소득구간에 한하여 정액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2,400만 ~4,800만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노동공급시간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혼여성의 예산제약식의 기울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근로소득세 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의 45%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액이 50만~125만원인 경우에는 세액 50만원 초과분의 70%를 세액공제하며 근로소득세액이 125만~275만원인 경우 세액 75만원에서 세액 125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근로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여성노동공급을 활성화하자는 데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지원 혜택을 면세점 이상에 국한함으로써 부분취업(part-time)보다는 전업취업(full-time)을 상대적으로 더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한 방안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노동시장참가는 거의 변화가 없고 노동공급시간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시의 세수감소분에 비해 노동공급 증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에 의거할 때 기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는 첫 번째 시나리오인 음(-)의 소득세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와 다소 유사하므로 두 제도 간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고려한 후 두 제도를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휴인력의 가장 큰 풀인 25~49세의 전문대졸 이상의 기혼 여성에게 정액이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노동시장참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는데 하나는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기혼여성의 소득에 비해 제공하는 세액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세액공제방식이나 금액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기혼여성의 세후순소득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도출하고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도출된 임금탄력성의 크기가 크지 않은 가운데에도 저소득층의 기혼여성에게 자녀세액공제를 실시할 경우 상당한 노동공급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향후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의 구성시 자녀 수나 자녀의 연령은 효용함수에 직접적인 요소로 사용되지 않고 가구의 예산제약이나 가구의 노동과 여가 간의 대체와 관련한 선호에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CES 노동공급함수를

이용하여 남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방식을 여성에게 변용하여 사용하는 대신 여성 고유의 노동공급함수를 새롭게 구축하여 이를 이용한 임금탄력성 추정이 필요하다. 임금탄력성이 다소 낮은 이유도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의 형태에 대한 가정에 기인할 수도 있다.

둘째, 노동력의 질이나 추가적인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세 가지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고학력 기혼여성에게 효과가 없는 제도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장려하는 정책적인 제도를 고안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 목 차

I. 서론	21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24
1.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변화	24
2. 향후 인력공급 전망과 여성노동공급 확대의 의의	28
3.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	41
4. 가구유형별 특성 및 세부담 분포	45
가.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가구 특성 요약	45
나. 맞벌이 대 홀벌이가구의 특성 비교	53
다. 맞벌이 대 홀벌이가구의 소득 및 소득세 부담 비교	62
5. 맞벌이의 결정요인: 2005년 가계조사자료 Probit 분석결과	65
가. 전 가구 대상	65
나. 유배우자가구 대상	67
III. 여성노동공급과 소득세	69
1. 여성노동공급함수 추정	69
가. 자녀보육비용과 여성노동공급	69
나. 여성노동공급함수 추정	73
다. 실증분석	80
2. 여성노동공급과 자녀세액공제제도	97
가. 영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	99
나. 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	104

IV. 정책대안 및 기대효과 .....	112
1. 정책기본방향과 고려사항 .....	112
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노동공급 촉진 .....	112
나. 맞벌이와 홀벌이 가구의 보육비용의 차이에 대한 보전 .....	112
다. 근로소득보전세제와의 연계 혹은 대체 .....	120
2. 정책대안 .....	122
가. 정책대안의 선정기준 .....	122
나. 정책대안의 제시 .....	125
3. 기대효과 .....	127
가. 분석의 범위와 방법 .....	127
나. 모의실험을 위한 기본 전제 .....	127
다. 기준선 분석결과 .....	131
라. 정책대안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임금조정요소(waf)가 1인 경우 .....	132
마. 정책대안1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임금조정요소(waf)가 1 이하인 경우 .....	139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46
참고문헌 .....	150
<부록 I> .....	154
<부록 II> .....	156
<부록 III> .....	166

## 표 목차

<표 II- 1> 연령계층에 따른 인구구분 .....	24
<표 II- 2> 한국의 인구구성 추이 및 전망(1960~2050년) .....	25
<표 II- 3> 한국과 주요국의 연령그룹별 노동시장참가율 (2000년 기준) .....	27
<표 II- 4> 여성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1999~2003년) .....	29
<표 II- 5> 성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2003년) ..	30
<표 II- 6> 교육정도 및 성별 경제활동 인구(2000~2005년) .....	32
<표 II- 7> 혼인상태, 교육정도 및 성별 경제활동 인구 (2000년, 2002년) .....	34
<표 II- 8>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2005년) .....	36
<표 II- 9> 성, 교육정도 및 연령별 비구직 이유(2002년) .....	37
<표 II-10> 소득계층별 가구특성(가구원 수·미성년자 수· 노인 수 및 맞벌이가구 비율) .....	46
<표 II-11> 소득계층별 가구특성(가구원 수·미성년자 수· 노인 수 및 맞벌이가구 비중) .....	47
<표 II-12> 연령별 가구특성 요약 .....	51
<표 II-13> 가구주 학력별 맞벌이가구 비율 (취업근로자가구 기준) .....	56
<표 II-14> 가구주 학력별 맞벌이가구 비율 (취업근로자가구 기준) .....	57
<표 II-15> 가구주 학력별 맞벌이가구 비율(전체가구 기준) .....	58
<표 II-16> 맞벌이가구 더미변수의 평균과 분산(2005년 기준) .....	60

<표 II-17> 총소득 및 각종 가구특성 변수의 평균·분산과 맞벌이가구 더미와의 상관계수 I .....	60
<표 II-18> 총소득 및 각종 가구특성 변수의 평균·분산과 맞벌이가구 더미와의 상관계수 II .....	61
<표 II-19> 총소득 및 각종 가구특성 변수의 평균·분산과 맞벌이가구 더미와의 상관계수 III .....	61
<표 II-20>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가구특성 비교(2005년) ..	62
<표 II-21> 맞벌이·홑벌이가구별 총소득 및 소득세 부담 분포 (전가구 기준) .....	64
<표 II-22> 맞벌이·홑벌이가구별 총소득 및 소득세 부담 분포 (완전취업근로자 가구 기준) .....	65
<표 II-23> 맞벌이 여부의 Probit 추정결과(전가구 대상) .....	67
<표 II-24> 맞벌이 여부의 Probit 추정결과 (유배우자가구 대상) .....	68
<표 III- 1> 보육비용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Blau and Currie (2003)) .....	71
<표 III- 2> 기혼여성 기초통계 I .....	85
<표 III- 3> 기혼여성 기초통계II .....	85
<표 III- 4> 기혼여성 노동시장참가 여부와 보육시설 이용 여부 결정식(biprobit) .....	87
<표 III- 5> 시간당 자녀보육비용 결정식(OLS) .....	88
<표 III- 6> 노동시장참가 프로빗 추정식 .....	89
<표 III- 7>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 $(\ln(\frac{l}{c}))$ 추정 I .....	90
<표 III- 8>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 $(\ln(\frac{l}{c}))$ 추정 II .....	92
<표 III- 9> 기혼여성 임금근로자 노동공급함수 $(\ln(\frac{l}{c}))$ 추정 .....	94
<표 III-10> 기혼여성 임금탄력성 추정 .....	95
<표 III-11>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 임금탄력성 추정 ..	96
<표 III-12> 미국의 기혼여성 임금탄력성 추정 .....	98

<표 III-13> 근로장려세제 지원내역(2006~2007년) .....	102
<표 III-14> 영국의 자녀세액공제(2006~2007년) .....	102
<표 III-15> 가구소득에 따른 영국의 자녀세액공제 금액 .....	103
<표 III-16> 미국의 자녀세액공제 내역 .....	107
<표 III-17> 미국의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현황(2002년) .....	108
<표 III-18> 미국의 주정부 단위의 자녀세액공제 내역 .....	109
<표 III-19> 미국의 지방정부 근로장려세제 현황(2003년) .....	111
<표 IV- 1> 소득계층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	113
<표 IV- 2> 자녀 수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	114
<표 IV- 3> 지역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	114
<표 IV- 4> 모(母)의 취업 여부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	115
<표 IV- 5> 연령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	115
<표 IV- 6> 연령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	121
<표 IV- 7> 미성년 유자녀 기혼취업여성의 임금률 분포 .....	128
<표 IV- 8> 미성년 유자녀 기혼무직여성의 임금률에 대한 가정 .....	129
<표 IV- 9> 미성년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세부담 추정결과(2004년도 가계조사자료 기준) .....	132
<표 IV-10> 정책대안의 모의실험 결과 .....	139
<표 IV-11> 임금조정요소 변화시 정책대안1의 모의실험 결과 .....	145

## 그림목차

[그림 II- 1] 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전망(2000~2050년) .....	27
[그림 II- 2] 주요 OECD 국가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38
[그림 II- 3]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39
[그림 II- 4]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노동패널자료) .....	40
[그림 II- 5] OECD 국가들의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81년, 2001년) .....	42
[그림 II- 6] OECD 국가들의 어린이 수의 변화와 여성 학력수준의 변화(1981년, 2001년) .....	43
[그림 II- 7] OECD 국가들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어린이 인구 비중(2001년) .....	44
[그림 II- 8] 소득계층별 평균 가구원 수 및 취업자 수 (2005년, 가계조사자료) .....	48
[그림 II- 9] 소득계층별 평균 미성년자 수(2005년, 가계조사자료) ..	49
[그림 II-10] 소득계층별 평균 노인 수(2005년, 가계조사자료) .....	50
[그림 II-11] 연령별 가구원 수 및 취업자 수 (2005년, 가계조사자료) .....	52
[그림 II-12] 연령별 미성년자 수(2005년, 가계조사자료) .....	53
[그림 II-13] 가구주 학력수준별 맞벌이가구 비율 (취업근로자가구 기준, 가계조사자료) .....	55
[그림 II-14] 가구주 학력수준별 맞벌이가구 비율 (2005년, 전체가구, 가계조사자료) .....	57
[그림 II-15] 연령별 맞벌이가구의 비율(2005년, 가계조사자료) .....	59

[그림 II-16] 맞벌이·홀벌이가구의 총소득 및 소득세 부담 분포(기준금액) .....	63
[그림 III- 1] 기혼여성의 실효임금에 따른 예산제약식 .....	82
[그림 III- 2] 영국의 아동관련 지원제도의 변화 .....	101
[그림 III- 3] 영국의 세액공제제도(2003년 4월 이후)하의 자녀 1명을 둔 가구를 위한 지원 .....	104
[그림 III- 4] 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	110
[그림 IV- 1] 평균 보육 및 교육료 및 소득대비 부담률 추이 (2004년) .....	116
[그림 IV- 2] 자녀 수별 보육 및 교육료 분포 (기관-지출가구 2004년) .....	117
[그림 IV- 3] 모(母)의 취업 유무별 보육 및 교육료 분포 (기관-지출가구 2004년) .....	118
[그림 IV- 4] 영·유아별 부담 분포(기관-지출가구 2004년) .....	119
[그림 IV- 5] 근로장려세제 지급체계 .....	121
[그림 IV- 6] 정책대안별 취업자 수의 변화 .....	137
[그림 IV- 7] 정책대안별 평균노동시간 변화효과 .....	137
[그림 IV- 8] 정책대안별 근로소득세 부담액 및 조세지원액 .....	138
[그림 IV- 9] 정책대안별 총소득 증감 및 재정소요전망 .....	138
[그림 IV-10] 임금조정요소 변화시의 취업자 수의 변화 (대안 1 기준) .....	143
[그림 IV-11] 임금조정요소 변화시의 평균노동시간 변화효과 (대안 1 기준) .....	143
[그림 IV-12] 임금조정요소 변화시 근로소득세 부담액 및 조세지원액 변화(대안 1 기준) .....	144
[그림 IV-13] 임금조정요소 변화시 총소득 증감 및 재정소요전망 (근로 + 사업소득세수 15조원 및 대안 1기준시) .....	144

## I. 서 론

20세기 말부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구조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 등으로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력 인구비중은 전체의 71.4%로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접어드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생산가능연령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비가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평균수명의 급속한 연장으로 노인인구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생산가능인구의 부족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는 곧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들이 노인을 부양할 때 져야 하는 1인당 부담도 그만큼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인구까지 감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유희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유희노동력이라 함은 현재 생산가능연령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인력과 실업상태 등에 있는 경우 등을 지칭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범주는 여성비경제활동인구이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전통문화가 오래 유지되어 오면서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의 경제활동보다는 가정 내에서 주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전통이 많이 희석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제반 여건을 놓고 볼 때 노동력 부족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벌써 일부에서는 노동력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출산을 장려하여 미래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중·단기적으로는 유휴노동력,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 점에 특화하여 여성노동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성들은 필연적으로 (혼인후) 출산, 육아, 보육 문제 등에 당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임금률, 장래성, 안정성, 자신의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한다. 그런데 여성들은 출산, 육아, 보육 문제도 매우 중요한 만큼,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런 요소들을 고려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 및 보육에 대한 부담이 미성년자녀, 특히 그 가운데 영·유아를 둔 여성들의 경우 노동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육아·보육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노동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효과를 추정해보았다. 이를 통해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여

여성노동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한 정책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출산 문제는 또 다른 요인과 정책이슈가 개입되어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장차 예상되는 사회여건의 변화추이에 비추어 보면서 여성노동공급의 위상과 실태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여성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고, 제Ⅳ장에서는 여성노동공급과 관련한 주요 외국에서의 정책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제Ⅴ장에서는 제Ⅳ장에서 살펴본 각국의 정책방안을 참조하여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제Ⅲ장의 회귀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효과를 검토한다. 제Ⅵ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와 정책대안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 1.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변화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인 고령층의 비율이 UN의 기준값인 7%를 초과하는 것을 지칭한다. 인구를 연령별로 크게 분리해보면 법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만14세 이하의 유년층 인구와 15~64세의 경제활동가능인구, 65세 이후의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할 수 있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OECD 기준에 의거할 때 학교교육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참가가 거의 불가능한 19세 이하 인구를 제외하고 20~54세의 핵심근로계층과 55~64세의 고령근로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1> 연령계층에 따른 인구구분

0~14세	15~19세	20~54세	55~64세	65세 이상
유년층 인구	학교교육중인 노동력 인구	핵심근로계층	고령근로계층	비경제활동 은퇴인구
	노동력 인구			

따라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전체 인구구성비 중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부양해야 할 부양인구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참고로 생산가능연령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를 노년부양인구비라고 칭한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력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71.4%로 다른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25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가로 접어들게 되면 고령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인구전망에 따른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구성 비중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5.1%에 해당하는 고령인구의 비중은 2020년에 이르러 15.1%, 2050년에 이르면 3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2> 한국의 인구구성 추이 및 전망(1960~2050년)

(단위 : 천명, %)

연 도	총인구	연령층 구성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960	25,012	42.3	54.8	2.9
1965	28,705	43.8	53.1	3.1
1970	32,241	42.5	54.4	3.1
1975	35,281	38.6	58.0	3.4
1980	38,124	34.0	62.2	3.8
1985	40,806	30.2	65.6	4.3
1990	42,869	25.6	69.3	5.1
1995	45,093	23.4	70.7	5.9
2000	47,008	21.1	71.7	6.9
2005	48,461	19.6	71.4	9.0
2010	49,594	17.2	72.1	10.7
2015	50,352	15.3	72.1	12.6
2020	50,650	13.9	71.0	15.1
2030	50,296	12.4	64.6	23.1
2040	48,204	11.5	58.4	30.1
2050	44,337	10.5	55.1	34.4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위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노동력의 규모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노동력 규모 자체도 감소하고, 전체 인구 중

노동력 인구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혹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반면 인구는 증가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만 발생하면 전체 노동력 규모는 증가하나 노동력의 연령구성이 고령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으로 인해 인구는 증가하면서 노동력의 연령구성이 고령화될 것으로 보이나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2020년 이후로는 노동력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력의 연령별 구성을 장기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25~49세의 주요 노동연령층의 구성비는 2000년의 6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이 되면 44% 수준이 되고, 50세 이상 연령층의 노동력 비중은 2000년 24.4%에서 2050년에는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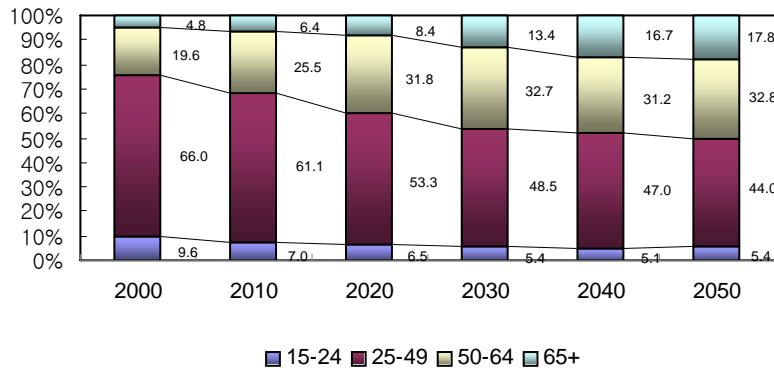
물론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 비록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노동력의 규모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참가율의 크기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규모의 축소문제가 완화될 수 있으며,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는 부양인구 비율의 증가도 완화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자료에 근거한 주요 국가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인구구조 고령화 속에서 노동력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표 II-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별, 연령별 노동시장참가율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남성의 경우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으며, 특히 비경제활동 은퇴인구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한편 25~49세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약 10%포인트 이상 낮다. 그러나 50~64세의 고령여성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은 미국,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27

일본보다는 낮지만 EU 평균보다는 높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새로운 고용력의 창출이 가능한 그룹은 25~49세의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혼인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고용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룹은 25~49세의 기혼여성 집단이다.

[그림 II-1] 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전망(2000~2050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4a)

<표 II-3> 한국과 주요국의 연령그룹별 노동시장참가율(2000년 기준)  
(단위 : %)

	남 성			여 성			전 체		
	25~49	50~64	65~74	25~49	50~64	65~74	25~49	50~64	65~74
한국	92.4	78.0	45.7	58.2	50.7	29.0	75.5	64.3	35.9
일본	97.2	89.1	42.0	66.1	56.8	21.0	81.8	72.6	30.7
EU	94.0	66.1	-	73.9	42.3	-	84.0	54.0	-
미국	92.4	75.6	23.5	77.3	61.0	14.4	84.7	68.0	18.5
OECD	93.7	72.8	-	69.0	48.4	-	81.3	60.3	-

자료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01. 한국개발연구원(2004a) 재인용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력의 규모만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연령구성의 고령화는 새로운 기술이나 신산업에 대한 적응능력이나 학습능력을 하락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인구감소는 인적자본 투자를 증가시키고 1인당 자본장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고령화가 함께 일어날 경우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인구감소의 효과를 분리해낼 경우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고령인구가 노동력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동력의 질이라는 차원에서도 고령인구보다는 25~4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일 수 있다. 25~49세의 여성들 중 결혼과 출산과정 속에서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는 연령층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참가는 고령화되어가는 노동력의 연령구조 속에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 2. 향후 인력공급 전망과 여성노동공급 확대의 의의

이미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동력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노동생산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경력 단절 없는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참가는 매우 유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

1) 물론 고령인구의 재취업이나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는 노동생산성 외에 다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된다면 노인에 대한 복지지출이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 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소득분배 문제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29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들 내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15~64세 여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4> 여성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1999~2003년)  
(단위 :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1999	2000	2001	2002	2003	1999	2000	2001	2002	2003
한 국	48.1	50.1	51.0	52.0	51.1	50.8	51.8	52.7	53.4	52.8
캐나다	64.7	65.8	66.0	66.8	67.7	69.8	70.5	70.8	71.9	73.0
프랑스	53.0	54.3	55.2	55.8	56.0	61.4	61.7	61.8	62.1	62.5
독 일	57.4	58.1	58.7	58.8	58.7	63.0	63.3	63.8	64.2	64.5
이탈리아	38.3	39.6	41.1	42.0	42.7	45.5	46.3	47.3	47.9	48.3
일 본	56.7	56.7	57.0	56.5	56.8	59.5	59.6	60.1	59.7	59.9
영 국	64.9	65.5	66.1	66.3	66.4	68.4	68.9	69.0	69.3	69.2
미 국	67.6	67.8	67.1	66.1	65.7	70.7	70.7	70.4	70.1	69.7
덴마크	71.6	72.1	71.4	72.6	70.5	76.1	75.9	75.0	75.9	74.8
핀란드	63.5	64.5	65.4	66.1	65.7	71.2	72.1	72.5	72.7	72.1
노르웨이	73.8	74.0	73.8	73.9	72.9	76.1	76.5	76.4	76.7	75.9
스웨덴	70.9	72.2	73.5	73.4	72.8	76.0	76.4	77.1	77.1	76.9
OECD 유럽	50.4	50.6	51.2	51.5	50.9	56.4	56.4	56.5	57.1	56.4
OECD 전체	54.9	55.3	55.4	55.4	55.3	59.3	59.4	59.4	59.6	59.6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4b)

200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8%로 OECD 전체 평균인 59.6%, 유럽 평균인 56.4%보다 낮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낮으며, G7 국가들과 비교해도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물론 실업률이 낮은 편이므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고용률을 기준으로 본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낮아 추가적인 노동력의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여성이 새로운 노동공급원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5> 성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2003년)

(단위 :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여성	격차	남성	여성	격차
한 국	75.0	51.1	23.9	77.9	52.8	25.1
캐나다	76.5	67.7	8.8	83.2	73.0	10.2
프랑스	67.7	56.0	11.7	73.8	62.5	11.3
독 일	70.4	58.7	11.7	78.0	64.5	13.5
이탈리아	69.7	42.7	27.0	74.8	48.3	26.5
일 본	79.8	56.8	23.0	84.6	59.9	24.7
영 국	79.3	66.4	12.9	83.9	69.2	14.7
미 국	76.9	65.7	11.2	82.2	69.7	12.5
덴마크	79.7	70.5	9.2	84.0	74.8	9.2
핀란드	69.0	65.7	3.3	76.1	72.1	4.0
노르웨이	78.8	72.9	5.9	82.9	75.9	7.0
스웨덴	75.6	72.8	2.8	80.8	76.9	3.9
OECD 유럽	70.9	50.9	20.0	77.6	56.4	21.2
OECD 전체	74.7	55.3	19.4	80.2	59.6	20.6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4b)

<표 II-5>를 살펴보면 OECD 전체의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20.6%포인트이며, OECD 유럽국가들의 평균 격차는 21.2%포인트인 반면 우리나라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5.1%포인트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것은 경기변동이나 노동수요조건에 의한 노동공급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큰 것은 노동수요 측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sup>.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를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 차이를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자. 2000년 현재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4%로 여성의 48.8%보다 25.6%포인트 높다. 교육수준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를 비교해보면 초졸 이하의 경우 17.6%포인트, 중졸학력의 경우 11.6%포인트, 고졸학력 28.9%포인트, 전문대졸 26.4%포인트, 대졸 이상 29.6%포인트를 보였다.

2005년의 경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6%로 여성의 50.1%보다 24.5%포인트 높아 그 간극은 다소 감소하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2005년 사이에 다소 변화를 보이면서도 74.3~75% 수준을 유지한 것과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노동수요 조건을 반영한다고 볼 때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의사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2) 물론 노동수요 측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고용률과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노동수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수급조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력의 일부는 비경제활동인구화(취업 대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혹은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정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lt;표 II-6&gt; 교육정도 및 성별 경제활동 인구(2000~2005년)

(단위: 천명, %)

연도, 교육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0 계	9,101	13,034	48.8	74.4
초졸 이하	2,217	1,471	44.8	62.4
중졸	1,475	1,702	42.3	53.9
고졸	3,651	6,179	49.7	78.6
전문대졸	737	949	65	91.4
대졸 이상	1,020	2,732	58.3	87.9
2001 계	9,299	13,172	49.3	74.3
초졸 이하	2,157	1,440	43.7	61.6
중졸	1,436	1,635	43	53.6
고졸	3,795	6,240	50.7	77.9
전문대졸	824	1,013	66	91.7
대졸 이상	1,086	2,845	58.5	88.3
2002 계	9,486	13,435	49.8	75
초졸 이하	2,091	1,418	43	61.3
중졸	1,273	1,634	43.4	54.4
고졸	3,897	6,328	51.5	78.3
전문대졸	886	1,110	66.6	92.7
대졸 이상	1,190	2,945	59.2	88.6
2003 계	9,417	13,538	49	74.7
초졸 이하	1,896	1,344	40.1	59
중졸	1,273	1,488	40.9	52.5
고졸	3,892	6,114	51.5	77.5
전문대졸	952	1,132	67.7	92.3
대졸 이상	1,403	3,459	58.3	89.1
2004 계	9,689	13,727	49.9	75
초졸 이하	1,852	1,294	39.5	58.7
중졸	1,273	1,491	41.1	52.5
고졸	4,018	6,190	53.1	77.9
전문대졸	1,031	1,220	67	91.3
대졸 이상	1,513	3,530	60.1	88.8
2005 계	9,860	13,882	50.1	74.6
초졸 이하	1,835	1,261	38.9	57.1
중졸	1,251	1,464	40.9	51.5
고졸	4,042	6,220	53.4	77.4
전문대졸	1,126	1,269	67.5	90.7
대졸 이상	1,604	3,667	60.3	8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9~2005).

##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33

2005년 학력별 남녀 간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살펴보면 초졸 이하 18.2%포인트, 중졸 10.6%포인트, 고졸 24.0%포인트, 전문대졸 23.2%포인트, 대졸 이상 28.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별 차이는 2000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중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한 반면, 고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것이 노동력의 질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졸 이상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차이를 더 세분화하여 기혼 및 미혼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그룹을 구별해 낼 수 있다.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최근 자료가 없어 2000년과 2002년을 비교해보았다(<표 II-7>참조). 미혼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다. 오히려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2000년, 2002년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간 더 높다. 따라서 미혼의 경우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작은 편이다. 다만 남성이 2~3%포인트 높은 이유는 고졸 이하 학력의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유사함이 사라진다. 2000년과 2002년 모두 유배우자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34%포인트 수준에 머무는데 그 차이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에게서 크게 나타난다.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에도 남녀 간의 차이는 주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 이후 고학력 여성의 상당수가 전업주부가

&lt;표 II-7&gt; 혼인상태, 교육정도 및 성별 경제활동 인구(2000년, 2002년)

(단위: 천명, %)

연도, 혼인상태, 교육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0년				
미혼	2,080	2,671	47.0	50.2
중졸 이하	95	340	7.1	19.9
고졸	1,096	1,519	54.0	57.7
전문대졸	448	332	87.0	87.0
대졸 이상	440	480	81.3	80.8
유배우자	5,825	9,908	51.2	85.5
중졸 이하	2,856	2,784	57.6	75.8
고졸	2,229	4,373	46.7	89.9
전문대졸	227	563	42.6	93.9
대졸 이상	512	2,188	46.3	89.3
사별/이혼	1,095	372	38.3	61.8
중졸 이하	869	192	35.4	54.2
고졸	193	142	62.4	73.7
전문대졸	11	8	67.7	80.8
대졸 이상	22	30	57.1	66.1
2002년				
미혼	2,356	3,054	50.6	53.1
중졸 이하	81	334	6.8	20.7
고졸	1,143	1,707	53.7	58.1
전문대졸	566	428	87.6	88.6
대졸 이상	566	584	82.9	81.7
유배우자	6,026	9,907	52.0	86.2
중졸 이하	2,624	2,508	57.3	75.3
고졸	2,509	4,415	49.5	90.0
전문대졸	302	669	45.7	95.3
대졸 이상	591	2,314	46.3	90.7
사별/이혼	1,083	451	38.7	66.1
중졸 이하	802	205	34.0	55.3
고졸	234	194	64.5	81.2
전문대졸	16	11	66.7	91.7
대졸 이상	31	41	60.8	69.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0, 2002). 『여성통계연보』에서 재인용

##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35

되면서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학력 기혼여성(유배우자, 사별, 이혼 포함) 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러므로 이 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정책이 노동력의 신규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간단한 통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분석이 학력수준이 높지 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노동력 공급수준이 남성보다는 낮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평균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력수준이나 연령층에 관계없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격차가 가장 큰 부분이 고학력 기혼여성, 그리고 25~49세 연령층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혼여성들이 추가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할 소지가 크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자료에 기초하여 남녀의 혼인상태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표 II-8>과 같다. 우선 남녀를 막론하고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6%로 비가구주 경제활동참가율 45.9%보다 훨씬 높다. 남성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 중 68.5%가 가구주로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88.2%이다. 미혼보다는 유배우자 가구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간 더 높다.

여성의 경우 가구주는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 20.5%로 가구주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64.9%로 비가구주 46.3%보다 높다. 그러나 그 차이는 남성보다는 상당히 낮다.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가구주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 그룹 역시 향후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할 수 있는 집단이다. 특히 유배우자나 사별, 이혼한 기혼여성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보다 낮아 기혼여성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향후 타그룹보다 더욱 탄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성 비가구주의 경우에는 남성 비가구주에 비해 참가율이 약간 높다. 그런데 여성 비가구주의 경우 가사나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여자인구의 33.6%를 차지하여 경제활동참가 의사를 가진 잠재적인 그룹을 모두 고려할 경우의 기혼여성 비가구주의 향후 경제활동참가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향후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8>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2005년)

(단위 :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가사·육아	통학	연로	기타
총 수	38,300	23,743	62.0	22,856	887	3.7	14,557	6,726	3,835	1,524	2,472
가 구 주	16,786	13,862	82.6	13,522	340	2.5	2,923	1,096	159	704	964
미 혼	1,832	1,536	83.8	1,466	70	4.6	296	44	139	1	113
유배우자	12,231	10,746	87.9	10,537	209	1.9	1,485	335	15	468	668
기 타	2,722	1,580	58.1	1,519	61	3.9	1,142	717	5	236	184
비가구주	21,514	9,881	45.9	9,334	547	5.5	11,633	5,630	3,676	820	1,508
미 혼	8,640	4,080	47.2	3,685	395	9.7	4,560	61	3,639	0	859
유배우자	11,544	5,548	48.1	5,407	140	2.5	5,996	5,140	36	304	515
기 타	1,331	253	19.0	242	12	4.5	1,078	429	0	516	133
남 자	18,616	13,883	74.6	13,330	553	4.0	4,734	121	2,033	800	1,780
가 구 주	12,744	11,240	88.2	10,973	266	2.4	1,504	75	82	511	836
미 혼	1,103	952	86.4	906	47	4.9	150	5	70	1	75
유배우자	10,976	9,815	89.4	9,625	190	1.9	1,162	34	11	463	653
기 타	665	473	71.1	443	30	6.3	192	36	1	47	108
비가구주	5,873	2,643	45.0	2,357	286	10.8	3,230	46	1,951	289	945
미 혼	4,606	2,109	45.8	1,871	238	11.3	2,497	6	1,937	0	555
유배우자	1,077	458	42.5	416	42	9.2	619	33	14	221	351
기 타	190	76	40.3	70	6	8.4	113	7	0	68	39
여 자	19,683	9,860	50.1	9,526	334	3.4	9,823	6,605	1,802	725	692
가 구 주	4,042	2,623	64.9	2,549	74	2.8	1,419	1,021	77	193	129
미 혼	729	583	80.0	560	23	4.0	146	39	69	0	38
유배우자	1,255	932	74.2	912	19	2.1	323	301	4	4	15
기 타	2,058	1,108	53.8	1,077	31	2.8	950	682	4	189	76
비가구주	15,641	7,238	46.3	6,977	260	3.6	8,404	5,584	1,725	531	563
미 혼	4,034	1,971	48.9	1,814	157	8.0	2,063	55	1,703	0	305
유배우자	10,466	5,090	48.6	4,992	98	1.9	5,377	5,107	22	83	164
기 타	1,141	177	15.5	172	5	2.9	964	422	0	448	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37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II-9>와 같다.

<표 II-9> 성, 교육정도 및 연령별 비구직 이유<sup>1)</sup>(2002년)

(단위 : %)

성, 교육,연령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sup>2)</sup>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	육아, 가사	기타
	전공에 맞는	임금과 근로 조건이 맞는	근처에				
계	10.8	21.8	14.4	2.4	17.4	9.1	24.1
교육정도							
중졸 이하	5.3	14.2	20.9	1.8	20.8	5.7	31.2
고졸	9.1	26.3	12.9	3.1	16.2	12.7	19.6
전문대졸	13.8	24.4	3.6	3.5	20.4	13.9	20.5
대졸 이상	32.2	27.1	5.4	1.2	9.9	3.7	20.5
연령							
15~19세	10.0	24.4	6.8	6.9	14.2	2.3	35.3
20~29세	16.9	24.7	5.5	4.0	16.7	7.9	24.3
30~39세	9.7	28.4	16.3	1.4	13.7	22.5	8.0
40~49세	12.7	27.6	15.1	3.1	18.2	6.1	17.2
50~59세	7.9	15.3	18.7	1.9	23.4	6.5	26.1
60+	6.7	8.4	17.0	0.5	15.9	0.9	50.7
여성	7.7	26.3	16.0	2.6	12.1	16.3	19.1
교육정도							
중졸 이하	3.2	17.4	23.5	1.4	15.7	10.4	28.3
고졸	7.5	31.8	13.9	3.3	9.4	20.8	13.4
전문대졸	13.8	19.4	4.2	4.4	17.8	21.5	18.9
대졸 이상	26.6	41.7	2.0	1.9	6.9	10.5	10.3
연령							
15~19세	11.7	33.6	6.2	0.9	15.4	0.0	32.2
20~29세	18.2	23.1	5.9	3.1	14.7	15.6	19.5
30~39세	8.4	31.1	15.7	1.7	8.5	30.8	3.8
40~49세	4.2	34.4	17.8	4.5	16.1	10.6	12.3
50~59세	5.5	18.0	19.6	2.2	10.3	2.1	31.6
60+	0.6	10.8	24.4	1.2	11.7	16.3	49.2

주 : 1) 지난주 비구직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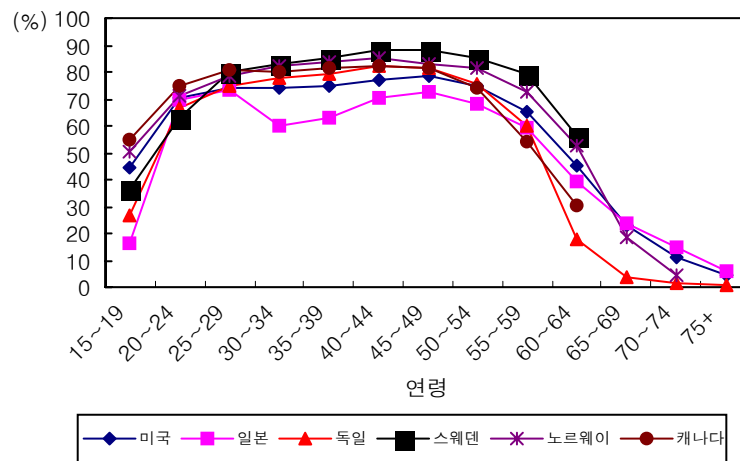
2) Lacks Necessary Schooling Training, Skills or Experiences.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3).

남녀를 통틀어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맞는 직장이 없거나(21.8%),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서(14.4%)와 같은 일거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고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경우도 17.4%에 해당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맞는 직장이 없거나(26.3%), 육아와 가사(16.3%), 근처에 직장이 없는 경우(16%)를 주요한 비구직 이유로 들었다. 여성의 비구직 이유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에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맞는 직장이거나 전공에 적합한 직장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고, 고졸이나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직장 조건 외에 육아나 가사의 부담이 주된 비구직 이유이다. 이로부터 미루어 짐작해볼 때 학력이 높은 여성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아마도 결혼 이후 경력 단절 등을 겪은 이후에 적합한 재취업의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져서) 육아나 가사부담으로 인해 쉽게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2] 주요 OECD 국가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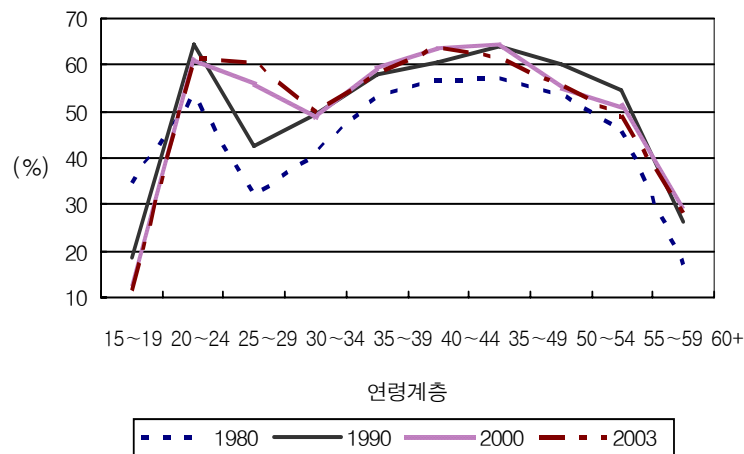
##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39

연령별로 여성의 비구직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책임이 큰 30대 여성의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이 맞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31.1%)는 점과 함께 가사와 육아부담(30.8%)을 들고 있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바라는 수준과 조건의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자녀의 출산, 육아, 가사의 부담이 집중된 시점에 참가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OECD 국가들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북유럽국가들에서는 20대 중반~30대 후반에 걸쳐 나타나는 급격한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패턴을 관찰할 수 없다. 이들 국가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낮은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이 다소 나타나지만 그 경향은 심각하지 않다. 그런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크게 나타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전형적인 M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림 II-6]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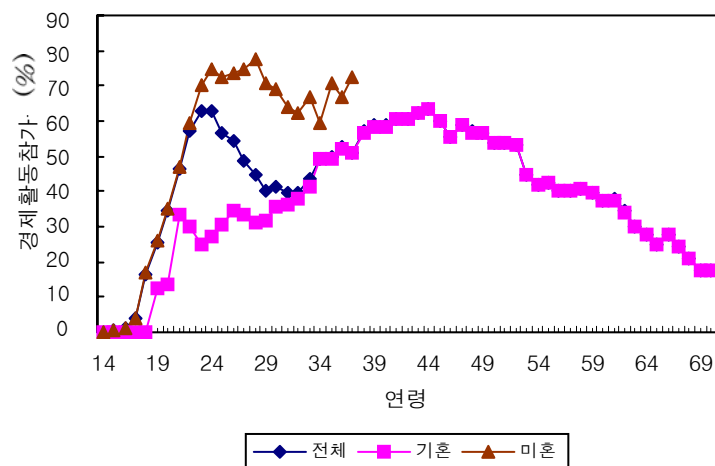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연령별로 나타내면 [그림 II-3]과 같다.

1980년에는 M자 곡선의 형태가 매우 뚜렷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고 M자 곡선의 저점을 지나는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과 1990년의 M자 곡선의 저점은 25~29세 여성이었던 반면 2000년 이후에는 그 연령층이 30~34세로 높아졌으며 그 저점도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M자 곡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는 미혼과 기혼을 나누어 연령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는 자료가 없어 서베이 자료인 노동패널을 이용해본 결과 20대 중반~30대 중반 미혼여성의 참가율은 평균 7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연령대의 기혼여성의 참가율은 30%대 중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중반~30대 중반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주원인은 기혼여성의 참가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4]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노동패널자료)



##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41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인력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력공급의 추가적 풀인 여성의 노동공급원 중 가장 저조한 참가를 보이고 있는 20대 중반~30대 중반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를 통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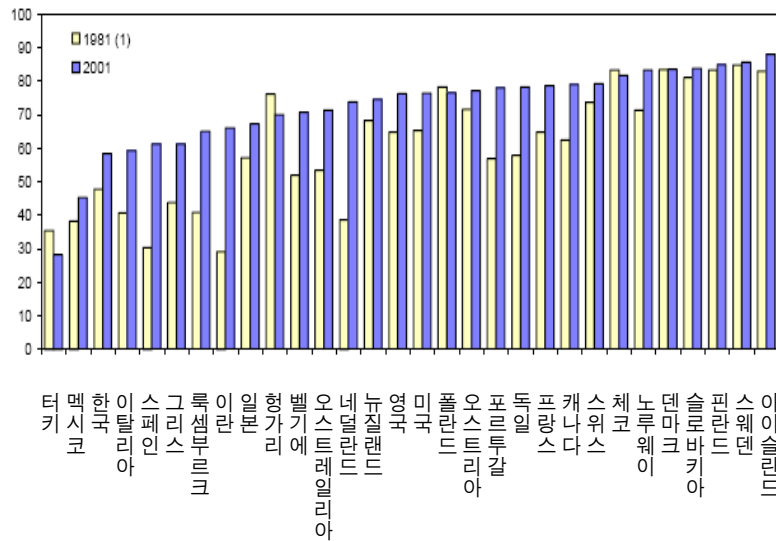
### 3.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

제2절에서 소개한 통계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20대 중반~30대 중후반의 기혼여성, 특히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그룹보다 낮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경력 단절과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시 만족할만한 조건의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흔히 여성의 교육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간에는 상당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은 출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이면에는 출산율의 감소와 여성 자신의 교육수준의 향상이 동시에 존재한다.

Jaumotte(2003)는 1981년과 2001년 두 해를 비교하여 OECD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15~64세 여성 1인당 0~14세 어린이 수와 25~54세 여성의 학력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림 II-5] OECD 국가들의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81년, 2001년)



자료 : ILO, *Labor Statistics*

[그림 II-6]의 두 그림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이면에는 여성의 학력수준의 상승과 어린 인구의 감소 즉, 출산율의 감소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경제활동참가율, 출산율, 여성의 학력수준 간 관계는 나라마다 서로 그 크기나 상호작용의 수준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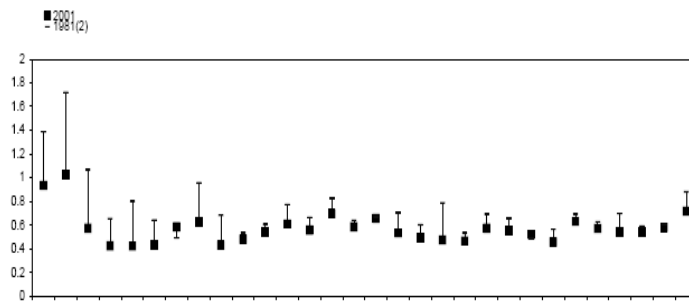
예를 들어 20년 동안 두드러지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나라인 스페인,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에서 출산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등의 경우 출산율의 하락은 매우 소폭이다. 반면에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에서는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멕시코나 한국의 경우 20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증가폭에 비해 출산율의 하락은 상대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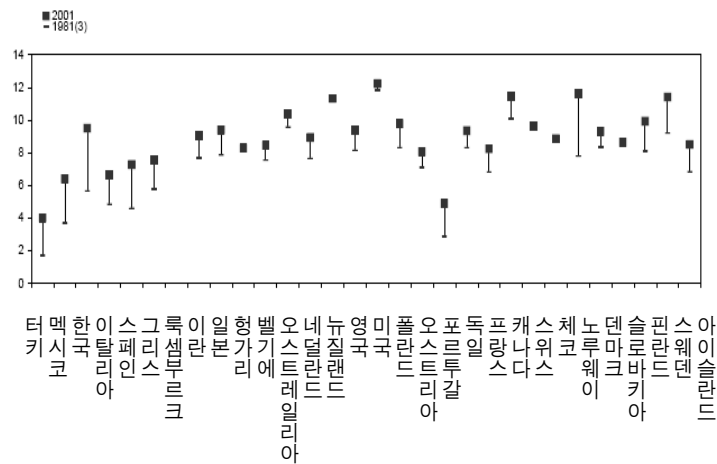
적으로 매우 크다. 터키의 경우 여성의 학력수준과 출산율은 크게 감소했지만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노르웨이는 여성의 학력수준은 크게 상승하였고 노동공급도 증가하였지만 출산율의 하락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6] OECD 국가들의 어린이 수의 변화와 여성 학력수준의 변화(1981년, 2001년)

<패널1 : 0~14세 어린이 인구 / 15~64세 여성인구>



<패널2 : 여성의 평균 학력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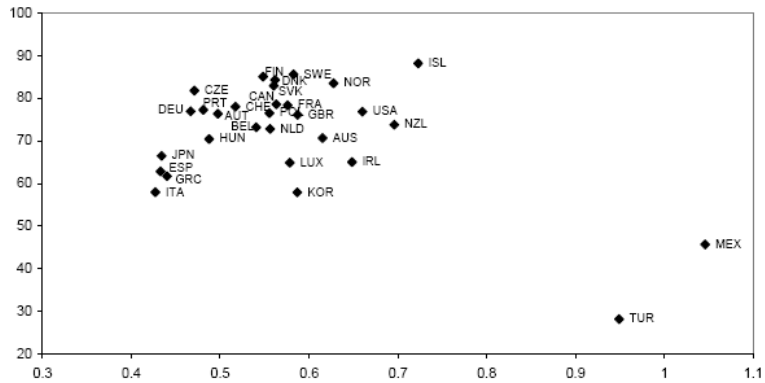
자료 : Jaumotte(2003)

일반적으로 여성의 학력수준의 상승 혹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임금의 증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경향은 있지만 노르웨이처럼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음(-)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 나라나 터키처럼 여성의 학력수준의 신장이 경제활동참가로 연계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각 나라의 노동시장 여건, 경제환경 등에 의해 나타나며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위의 두 그림이 보여주는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2001년을 기준으로 15~64세 여성인구당 0~14세 어린이 인구의 수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한 평면에 나타내보면 두 변수 간의 음(-)의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림 II-7] OECD 국가들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어린이 인구 비중 (2001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5~64세)



0~14세 인구/15~64세 여성인구

자료 : Jaumotte(2003)

##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45

Sleebos(2003) 역시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에 대해 OECD 국가의 횡단면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1980년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으나 1999년에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성의 학력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1980년에는 둘 사이에 음(-)의 결과를 발견했으나 1999년에는 이 관계 또한 역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 특히 소득세를 통해 일하는 기혼여성, 그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일하는 여성에 대해 조세인센티브를 통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본다.

### 4. 가구유형별 특성 및 세부담 분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현재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특성의 차이를 미시자료를 이용해 분석해본다. 이와 같은 분석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구의 특성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으며 다음 장에서 추정할 여성 노동공급함수의 설명요인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 가.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가구 특성 요약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가구 특성을 요약하면 <표 II-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5년 현재 가구당 평균가구원 수는 3.43명이고 이 중 평균적으로 1.45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가구원 수와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취업자가 많을수록 평균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연령층이나 노인층보다는 중년층의 평균소득이 더 높고, 또한 중년층의 경우에 자녀의 수가 가장 많다. 저연령층의 경우에는 미혼이거나 아직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 않은 가구가 많으며,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분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구원 수와 평균소득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10> 소득계층별 가구특성  
(가구원 수 · 미성년자 수 · 노인 수 및 맞벌이가구 비율)

(단위: 명, %)

2005년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가 구 원 수	2.5	3.04	3.27	3.32	3.48	3.63	3.64	3.69	3.81	3.93	3.43
취 업 자 수	0.71	1.04	1.24	1.44	1.48	1.6	1.58	1.68	1.78	1.94	1.45
미성년자 수(5세 이하)	0.08	0.25	0.29	0.25	0.3	0.36	0.27	0.24	0.26	0.17	0.25
미성년자 수(10세 이하)	0.22	0.52	0.56	0.53	0.63	0.7	0.64	0.61	0.59	0.5	0.55
미성년자 수(15세 이하)	0.42	0.77	0.76	0.76	0.94	0.98	1	0.96	0.98	0.93	0.85
미성년자 수(19세 이하)	0.49	0.92	0.93	0.96	1.13	1.16	1.19	1.21	1.21	1.2	1.04
노 인 수(65세 이상)	0.68	0.33	0.29	0.2	0.18	0.16	0.15	0.12	0.15	0.2	0.25
노 인 수(60세 이하)	0.94	0.54	0.48	0.32	0.28	0.25	0.25	0.24	0.21	0.29	0.38
맞벌이가구 비율1	19.64	29.5	37.19	47.56	46.34	49.17	49.27	50.79	51.53	54.14	43.51
맞벌이가구 비율2	0.81	6.26	10.38	21.62	29.1	28.02	29.07	37.32	37.65	43.6	24.39
맞벌이가구 비율3	0	0	0.48	4.97	8.09	9.43	13.81	21.52	27.11	32.76	11.82
맞벌이가구 비율4	0	0	0	0	0	0.28	2.56	8.61	16.24	26.54	5.43
맞벌이가구 비율5	0	0	0	0	0	0	0	0	8.52	22.04	3.06
맞벌이가구 비율6	0	0	0	0	0	0	0	0	1.3	16.28	1.76

주 : 맞벌이가구 비율은 각 분위별 가구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맞벌이가구의 점유율을 나타냄.

맞벌이가구 비율1: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0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 비율2: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6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 비율3: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1,2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 비율4: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1,8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 비율5: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2,4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 비율6: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3,000만원 이상일 경우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47

<표 11-11> 소득계층별 가구특성  
(가구원 수 · 미성년자 수 · 노인 수 및 맞벌이가구 비중)

(단위: 명, %)

2005년(비중)	1	2	3	4	5	6	7	8	9	10	계
가 구 원 수	7.29	8.86	9.54	9.68	10.16	10.58	10.59	10.76	11.1	11.44	100
취 업 자 수	4.89	7.2	8.58	9.9	10.23	11.03	10.9	11.57	12.3	13.4	100
미성년자 수(5세 이하)	3.27	10.19	11.74	10.08	12.03	14.76	10.72	9.61	10.59	7.02	100
미성년자 수(10세 이하)	4.04	9.49	10.12	9.69	11.35	12.76	11.64	11.09	10.77	9.05	100
미성년자 수(15세 이하)	4.91	9.06	9	8.9	11.06	11.52	11.74	11.3	11.56	10.96	100
미성년자 수(19세 이하)	4.74	8.84	8.96	9.27	10.85	11.15	11.39	11.61	11.61	11.58	100
노 인 수(65세 이상)	27.62	13.47	11.83	8.24	7.27	6.57	6.03	4.99	5.94	8.04	100
노 인 수(60세 이하)	24.77	14.25	12.59	8.35	7.33	6.53	6.52	6.39	5.64	7.62	100
맞벌이가구 비중1	4.51	6.78	8.56	10.93	10.65	11.31	11.3	11.67	11.85	12.45	100
맞벌이가구 비중2	0.33	2.57	4.26	8.87	11.94	11.5	11.9	15.31	15.45	17.88	100
맞벌이가구 비중3	0	0	0.41	4.2	6.84	7.98	11.66	18.21	22.96	27.73	100
맞벌이가구 비중4	0	0	0	0	0	0.51	4.71	15.88	29.96	48.94	100
맞벌이가구 비중5	0	0	0	0	0	0	0	0	27.87	72.13	100
맞벌이가구 비중6	0	0	0	0	0	0	0	0	7.41	92.59	100

주 : 맞벌이가구 비중은 전체 맞벌이가구 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해당 소득 분위의 점유율을 나타냄.

맞벌이가구 비중1: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0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 비중2: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600만원 이상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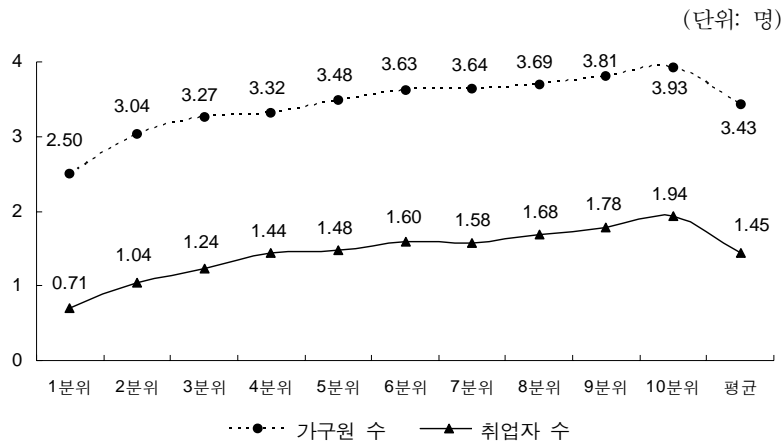
맞벌이가구 비중3: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1,2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 비중4: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1,8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 비중5: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2,4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 비중6: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림 II-8] 소득계층별 평균 가구원 수 및 취업자 수  
(2005년, 가계조사자료)



가구당 평균 미성년자의 수는 대체로 5~7분위의 중소득층에서 가장 높으며 저소득층 또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미성년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5세 이하와 10세 이하의 자녀 수는 소득 6분위, 15세 이하의 경우에는 7분위, 19세 이하의 자녀는 8~9분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을 정점으로 하여 저소득층 또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미성년자녀 수는 작아지는 구조를 나타내었다.

미성년자녀가 중상위권 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제도를 도입하면 중상위권 소득계층에 세액공제의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비록 중상위권 계층에 비해 미성년자녀가 적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절대액에 있어서는 고소득층이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연령범위를 확대할수록 미성년자녀 수가 가장 많은 소득계층이 고소득층으로 이행하는 것은 연령과 총소득 상호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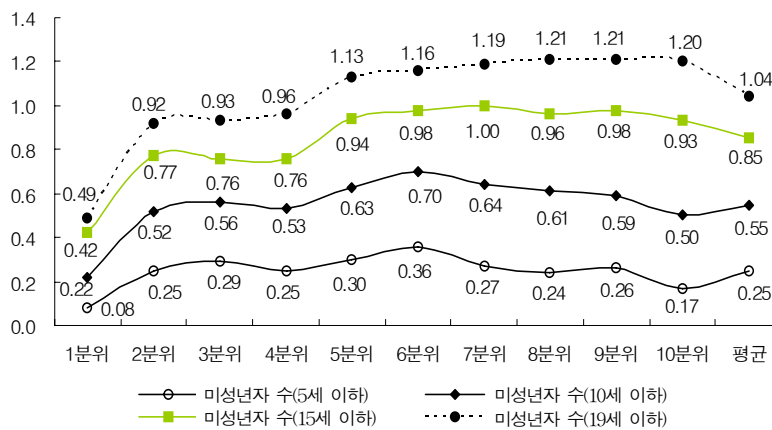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49

정(+)<sup>3)</sup>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즉, 저연령층에서 40대와 50대의 중년층에 이르는 연령대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소득 수준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3)</sup>.

가구원 중 미성년자는 주로 가구주의 자녀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린 미성년자의 비중이 높고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나이든 10대 이상의 미성년자 비중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산은 20대 후반~30대 중반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5세 미만의 자녀는 대부분 30대 초·중반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령이 그보다 높은 자녀는 그 이상의 연령층 비율이 높다. 따라서 미성년의 연령범위를 확대할수록 미성년자녀 수의 정점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상승한다.

[그림 II-9] 소득계층별 평균 미성년자 수(2005년, 가계조사자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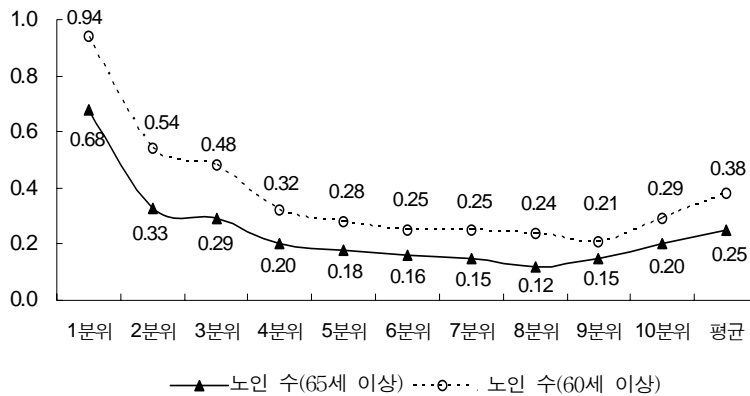
3) 연령층이 노인층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총소득과 연령대와의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중년층에 이르기까지는 총소득과 연령은 비례적인 모습에 가깝다.

연령적으로 40대와 50대 초반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다. 이들 연령층의 경우에는 이미 자녀가 충분히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거나 또는 10대 후반의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면 30대 후반~40대에 이르는 연령층에 세액공제의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가구당 노인 수의 평균은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커지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중·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런 패턴은 8분위까지 지속된다. 그런데 9분위부터는 오히려 노인 수가 소폭 상승한다. 이는 아마도 ‘시장의 선택(market selection)’에 의해 생산성 또는 소득획득능력이 높은 고소득자가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계속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I-10] 소득계층별 평균 노인 수(2005년, 가계조사자료)

(단위: 명)



가구주 연령별 노인 수 분포를 보면, 저연령층일수록 노인 수가 적고 고연령층일수록 많은 구조로 되어 있다. 저연령층의 경우에는 피부양노인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반면 중년층의 경우에는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51

각종 이유로 인해 부모들로부터 분가한 경우가 많으며,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노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가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II-12> 연령별 가구특성 요약

(단위: 명, %)

2005년	~2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평균
가 구 원 수	2	2.43	2.93	3.49	3.87	3.98	3.59	3.31	3.1	2.66	3.43
취 업 자 수	0	1.04	1.48	1.31	1.38	1.46	1.62	1.84	1.78	0.98	1.45
미성년자 수(5세 이하)	0	0.04	0.43	0.82	0.6	0.18	0.03	0.02	0.04	0.09	0.25
미성년자 수(10세 이하)	0	0.04	0.5	1.15	1.43	0.78	0.17	0.07	0.06	0.15	0.55
미성년자 수(15세 이하)	0.4	0.16	0.51	1.18	1.72	1.61	0.67	0.16	0.08	0.19	0.85
미성년자 수(19세 이하)	2	0.44	0.54	1.18	1.73	1.9	1.24	0.41	0.14	0.21	1.04
노 인 수(65세 이상)	0	0.08	0.04	0.09	0.09	0.11	0.14	0.1	0.14	0.96	0.25
노 인 수(60세 이상)	0	0.08	0.11	0.14	0.14	0.12	0.15	0.12	0.22	1.62	0.38
맞벌이가구 비중1	0	11.67	41.7	36.6	47.28	51.04	53.35	49.85	44.28	23.33	43.51
맞벌이가구 비중2	0	9.73	27.06	21.9	25.97	33.54	33.93	26.32	21.97	4.78	24.39
맞벌이가구 비중3	0	9.73	20.44	13.75	12.83	16.59	16.21	11.91	5.61	1.48	11.82
맞벌이가구 비중4	0	3.39	17	7.67	5.98	7.89	7	3.01	2.27	0.24	5.43
맞벌이가구 비중5	0	0	6.01	3.62	3.8	4.82	4.41	2.12	0.69	0.15	3.06
맞벌이가구 비중6	0	0	1.01	1.32	2.37	3.57	2.53	1.4	0.25	0	1.76

주 : 맞벌이비중1: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0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비중2: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6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비중3: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1,2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비중4: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1,8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비중5: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2,4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비중6: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3,000만원 이상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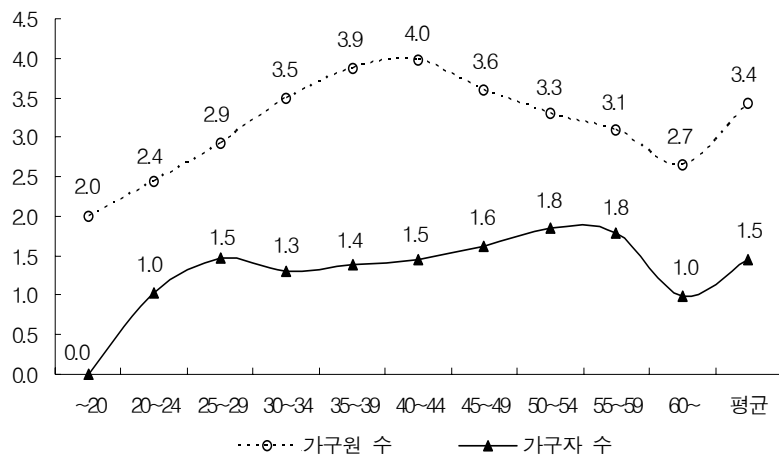
연령별 가구원 수의 분포도를 그려보면 역U자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년층의 경우 연령적으로 자녀 수가 가장 많은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미성년자녀와 생활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분포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된다.

연령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곡선은 미약하지만 쌍봉분포에 가까운 형태의 분포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결혼과 출산 등의 영향에 따라 여성들이 빠르게는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지다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란 중년층에 이르러서는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미성년자녀 수에 대한 가구주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20대 초반 또는 그 이전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단일정점 분포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녀의 범위를 연령대별로 조정하여 살펴보면 미성년 범위의 기준연령을 높일수록 가구주의 주된 연령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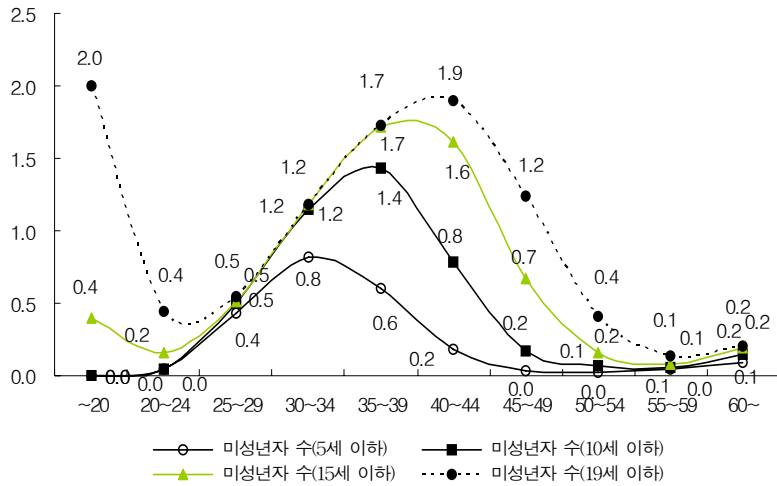
[그림 II-11] 연령별 가구원 수 및 취업자 수  
(2005년, 가계조사자료)

(단위: 명)



[그림 II-12] 연령별 미성년자 수 (2005년, 가계조사자료)

(단위: 명)



#### 나. 맞벌이 대 홀벌이가구의 특성 비교

##### 1) 맞벌이가구의 분포

맞벌이가구라 함은 부부가 함께 노동을 공급하여 각기 소득을 획득하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일회성으로 노동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맞벌이가구로 볼 수 없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맞벌이가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영속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맞벌이가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맞벌이가구의 비율과 특성을 제대로 논할 수 있다.

맞벌이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소득은 물론이고 노동공급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계조사자료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각자 소득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만 노동공급시간 등의 정보는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후자를 근거로 하여 맞벌이가구 여부를 판가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

부 각자의 소득이 일정금액(0원, 600만원, 1,200만원, … , 3,000만원)에 이르는 다양한 기준하에서 맞벌이가구를 정의하기로 한다. 가정의 현실성과 사례분석을 위해 맞벌이 여부를 판가름해주는 기준금액으로는 0원 또는 600만원을 많이 사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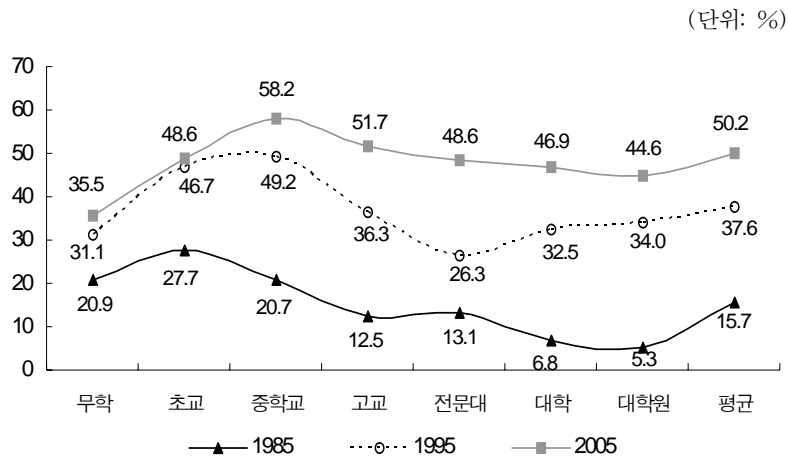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취업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와 배우자의 각기 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맞벌이가구로 정의하였을 때 맞벌이가구의 비율을 추정해본 결과, 1982년 15.9%에서 1990년 32.6%, 2000년 54.1%로 상승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다소 등락을 보이면서 대체로 50~5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취업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가구 여부 및 비율을 추정한 이유는, 2002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는 취업근로자가구에 대해서만 소득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밖의 가구유형에 대해서는 소득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맞벌이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맞벌이가구의 비율은 시계열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취업근로자가구라는 것이 시계열적으로 반드시 동일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정 결과에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상승추세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벌이가구의 비율을 가구주의 학력을 기준으로 세분화해본 결과, 1980년대에는 저학력가구일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고학력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가구주 학력별 맞벌이가구의 비율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무학과 초등학교 학력의 경우에는 다른 학력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다소 낮은데 이는 이들 학력의 가구 중 상당수가 은퇴한 노인가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최근에는 학력과 맞벌이가구 비율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패턴은 모든 가구유형에 대해 소득정보를 제공해주기 시작한 2003년부터의 자료를 토대로 전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정해본 결과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취업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무직가구<sup>4)</sup>를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13] 가구주 학력수준별 맞벌이가구 비율  
(취업근로자가구 기준, 가계조사자료)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소득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2003~2005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맞벌이가구를 판가름해주는 기준 금액을 0원 초과에서 600만원 초과로 수정하여 추정해본 결과를 보더라도, 절대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 유형별 특성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본 연구처럼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맞벌이 여부를 판가름하면 극소수 이기는 하지만 무직가구의 경우에도 맞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lt;표 11-13&gt; 가구주 학력별 맞벌이가구 비율(취업근로자가구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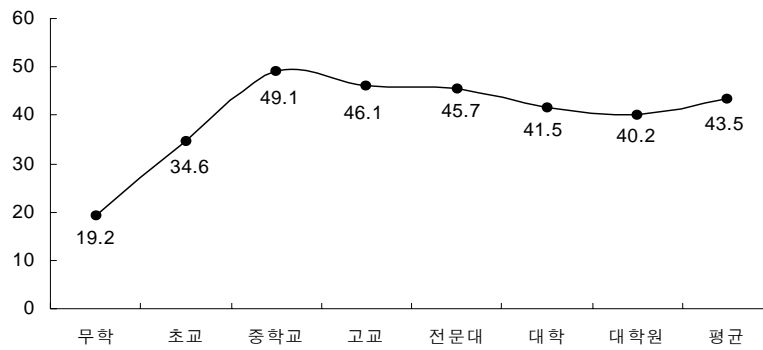
취업근로자	무학	초교	중학교	고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평균
1982	n.a.	n.a.	n.a.	n.a.	n.a.	n.a.	n.a.	15.92
1983	n.a.	n.a.	n.a.	n.a.	n.a.	n.a.	n.a.	16.99
1984	n.a.	n.a.	n.a.	n.a.	n.a.	n.a.	n.a.	16.4
1985	20.9	27.67	20.73	12.53	13.13	6.84	5.29	15.74
1986	39.69	28.69	31.22	19.49	16.48	11.65	11.14	21.86
1987	30.63	35.2	34.58	18.56	13.37	13.01	19.38	23.07
1988	29.61	35.11	39.37	22.92	14.27	10.15	32.83	25.58
1989	21.17	51.16	42.27	28.3	16.26	15.07	12.57	29.72
1990	45.97	46.83	44.21	30.08	30.39	20.23	17.03	32.57
1991	23.54	44.41	43.4	29.52	17.75	22.6	14.54	31.24
1992	22.27	45.48	46.33	29.2	14.72	25.4	18.89	31.75
1993	7.49	44.64	45.27	29.6	24.67	23.74	30.5	31.73
1994	19.52	51.33	50.54	32.52	17.28	25.15	30.44	34.79
1995	31.12	46.67	49.17	36.3	26.32	32.52	34.03	37.57
1996	26.53	39.45	46.79	36.44	36.85	31.18	29.12	36.67
1997	16.15	44.32	48.17	36.31	36.41	33.82	32.47	38.15
1998	41.09	54.62	50.76	42.1	43.77	37.29	35.96	42.39
1999	40.91	47.33	51.2	43.92	37.14	38.15	36.23	42.72
2000	62.97	49.42	60.6	54.89	54.21	48.38	66.27	54.1
2001	13.16	45.67	49.19	42.63	45.99	41.19	42.2	43.3
2002	28.5	43.74	51.41	45.7	39.53	40.83	35.57	43.9
2003	47.1	46.34	57	56.12	52.17	51.67	51.7	53.68
2004	47.93	48.79	60.09	55.64	55.61	48.67	44.2	53.17
2005	35.46	48.63	58.19	51.72	48.59	46.89	44.64	50.2

주 :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모두 6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맞벌이가구로 상정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57

[그림 II-14] 가구주 학력수준별 맞벌이가구 비율  
(2005년, 전체가구, 가계조사자료)

(단위: %)



<표 II-14> 가구주 학력별 맞벌이가구 비율(취업근로자가구 기준)

(단위: %)

기준1	무학	초교	중학교	고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평균
2003	47.1	46.34	57	56.12	52.17	51.67	51.7	53.68
2004	47.93	48.79	60.09	55.64	55.61	48.67	44.2	53.17
2005	35.46	48.63	58.19	51.72	48.59	46.89	44.64	50.2
기준2	무학	초교	중학교	고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평균
2003	23.82	23.47	30.51	29.14	25.85	29.88	38.22	29.26
2004	25.89	24.46	32.49	31.65	31.79	31.23	30.48	31.00
2005	0	22.09	30.98	33.02	34.93	33.28	35.01	32.10

주 :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모두 0원(기준1) 또는 600만원(기준2) 이상인 경우를 맞벌이가구로 상정

&lt;표 II-15&gt; 가구주 학력별 맞벌이가구 비율(전체가구 기준)

(단위: %)

기준1	무학	초교	중학교	고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평균
2003	29.17	40.44	48.19	48.07	45.34	43.02	46.71	45.54
2004	25.52	36.13	50.15	48.59	46.61	42.68	39.27	45.24
2005	19.18	34.56	49.14	46.14	45.65	41.52	40.16	43.51
기준2	무학	초교	중학교	고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평균
2003	4.18	14.82	22.18	22.52	23.77	24.41	35.62	22.27
2004	5.54	14.23	23.5	25.76	26.29	25.31	26.92	23.77
2005	3.39	12.42	22.02	26.38	28.64	28.21	30.74	24.39

주 :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모두 0원(기준1) 또는 600만원(기준2) 이상인 경우를 맞벌이가구로 상정

## 2) 맞벌이가구의 특성

맞벌이가구의 비율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명제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맞벌이가구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와 소득수준 간의 인과관계(causality)를 따지지 않기로 한다. 이 문제는 그 자체로서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본 연구의 목적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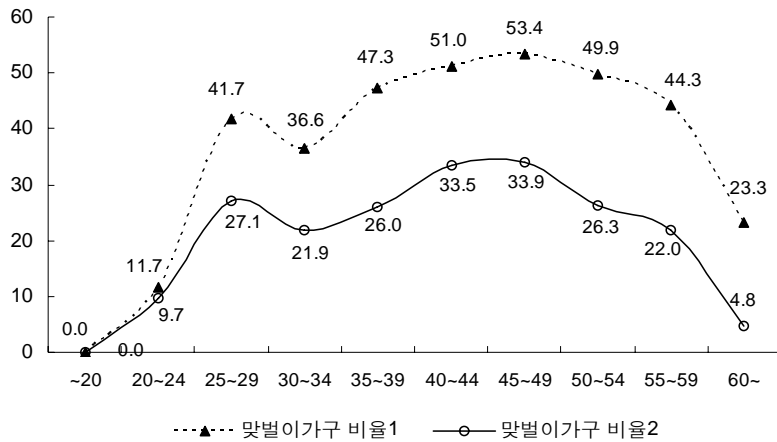
일단 상기의 두 명제 가운데 어떤 명제가 참명제(true statement) 인지를 차치하고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고소득층일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적으로 맞벌이가구의 비율은 맞벌이가구1 또는 맞벌이가구2의 경우 모두에서 20대 후반에 지역적 정점(local maximum)을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59

보인 후 소폭 하락하였다가 40대 후반에 최고 정점(global maximum)을 보이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연령대별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쌍봉분포 구조(bimodal distribution)를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하나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많이 하는 한편 30대 초반에는 출산으로 인해 여성노동공급이 감소하였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여성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II-15] 연령별 맞벌이가구의 비율(2005년, 가계조사자료)  
(단위: %)



주 : 맞벌이가구1 :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0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2 :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6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 여부는 가구원 수와 취업자 수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어린 미성년자녀와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영아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보육 등의 부담으로 인해 맞벌이가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이 5세 이하의 어린 자녀 수와 맞벌이 더미변수와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lt;표 II-16&gt; 맞벌이가구 더미변수의 평균과 분산(2005년 기준)

	평균	분산
맞벌이가구1	0.435	0.246
맞벌이가구2	0.244	0.184
맞벌이가구3	0.118	0.104
맞벌이가구4	0.054	0.051
맞벌이가구5	0.031	0.03
맞벌이가구6	0.018	0.017

주 : 맞벌이가구1 :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0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2 :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6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3 :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1,2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4 :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1,8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5 :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2,4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6 :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3,000만원 이상일 경우

&lt;표 II-17&gt; 총소득 및 각종 가구특성 변수의 평균·분산과 맞벌이가구 더미와의 상관계수 I

	평균	분산	공분산 (맞벌이가구1)	상관계수 (맞벌이가구1)
총소득(만원)	3980.379	5153591	174.385	0.155
가구원 수	3.432	1.171	0.102	0.189
취업자 수	1.45	0.748	0.19	0.443
가구주 연령	46.926	140.977	-0.659	-0.112
미성년자 수(5세 이하)	0.247	0.281	-0.006	-0.025
미성년자 수(10세 이하)	0.552	0.671	0.008	0.02
미성년자 수(15세 이하)	0.849	0.935	0.041	0.085
미성년자 수(19세 이하)	1.04	1.011	0.061	0.122

주 : 맞벌이가구1: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0원 이상인 경우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61

<표 II-18> 총소득 및 각종 가구특성 변수의 평균·분산과  
맞벌이가구 더미와의 상관계수 II

	평균	분산	공분산 (맞벌이가구2)	상관계수 (맞벌이가구3)
총소득(만원)	3980.379	5153591	257.96	0.265
가구원 수	3.432	1.171	0.079	0.17
취업자 수	1.45	0.748	0.166	0.447
가구주 연령(세)	46.926	140.977	-0.732	-0.144
미성년자 수(5세 이하)	0.247	0.281	-0.009	-0.041
미성년자 수(10세 이하)	0.552	0.671	-0.002	-0.005
미성년자 수(15세 이하)	0.849	0.935	0.035	0.084
미성년자 수(19세 이하)	1.04	1.011	0.053	0.123

주 : 맞벌이가구2: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600만원 이상인 경우

<표 II-19> 총소득 및 각종 가구특성 변수의 평균·분산과  
맞벌이가구 더미와의 상관계수 III

	평균	분산	공분산 (맞벌이가구2)	상관계수 (맞벌이가구3)
총소득(만원)	3980.379	5153591	235.983	0.322
가구원 수	3.432	1.171	0.033	0.095
취업자 수	1.45	0.748	0.081	0.29
가구주 연령(세)	46.926	140.977	-0.536	-0.14
미성년자 수(5세 이하)	0.247	0.281	0	-0.002
미성년자 수(10세 이하)	0.552	0.671	0.005	0.017
미성년자 수(15세 이하)	0.849	0.935	0.023	0.073
미성년자 수(19세 이하)	1.04	1.011	0.03	0.092

주 : 맞벌이가구3: 부부 각자의 소득이 모두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다. 맞벌이 대 홀벌이가구의 소득 및 소득세 부담 비교

맞벌이가구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금액을 0원 초과로 하였을 경우 2005년 현재 맞벌이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4,381만원으로 홀벌이가구의 3,672만원보다 약 700만원 정도 많다. 맞벌이가구의 가구원 수는 평균 3.67명으로 홀벌이가구의 3.25명보다 많으며 취업자 수도 각각 1.89명과 1.11명으로 맞벌이가구가 더 높다. 미성년자의 경우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맞벌이가구가 0.23명으로 홀벌이가구의 0.26명보다 낮다. 그러나 그보다 연령이 더 높은 미성년자녀의 수는 맞벌이가구가 홀벌이가구보다 많은 것을 볼 때 영유아의 존재가 맞벌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 수는 홀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많다. 이는 노인가구의 경우 맞벌이가구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표 II-20>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가구특성 비교(2005년)

(단위: 만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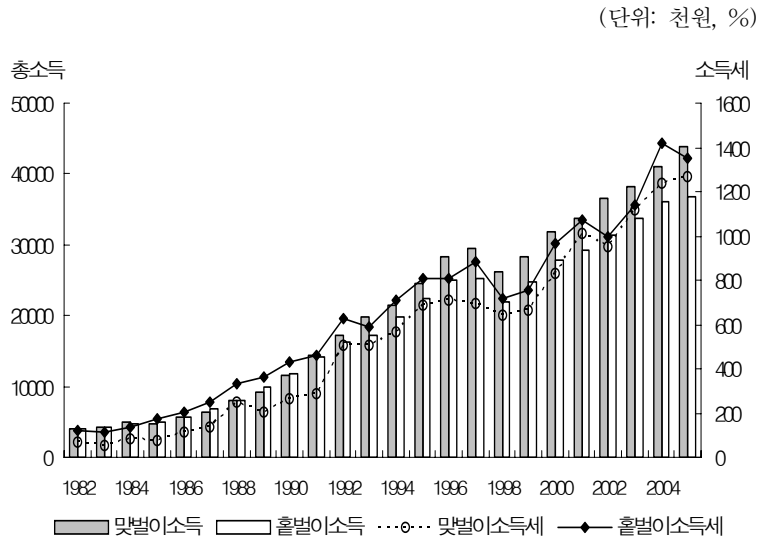
	기준금액: 0원		기준금액: 600만원		기준금액: 1,200만원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총소득	4381.14	3671.66	5038.174	3833.488	5977.106	3898.492
가구원 수	3.666	3.252	3.757	3.387	3.714	3.421
취업자 수	1.886	1.114	2.131	1.355	2.136	1.422
가구주 연령(세)	45.411	48.092	43.925	47.342	42.39	47.112
미성년자수(5세 이하)	0.232	0.258	0.209	0.252	0.243	0.247
미성년자수(10세 이하)	0.571	0.537	0.545	0.553	0.59	0.55
미성년자수(15세 이하)	0.943	0.777	0.992	0.829	1.041	0.841
미성년자수(19세 이하)	1.18	0.932	1.258	1.01	1.292	1.029
노인수(65세 이상)	0.145	0.325	0.121	0.264	0.128	0.252
노인수(60세 이상)	0.255	0.476	0.187	0.406	0.179	0.388

주 : 기준금액은 맞벌이가구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나타내며, 이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각각 0원, 600만원, 1,2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맞벌이가구로 인정하는 경우를 일컫음.

##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63

앞에서 보았듯이 맞벌이가구의 평균소득은 홑벌이가구보다 높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은 이와 반대이다. 이는 비록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수준은 홑벌이보다 높지만 소득자 각각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득세체계를 감안할 때, 소득자가 한 명이어서 누적적으로 과세되는 것보다 두 명의 소득자가 각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덜 누진적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소득세 부담이 더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월등히 높아지면 소득세 부담 역시 맞벌이가구가 더 높겠지만 위에 나타난 정도로 맞벌이가구의 소득수준이 더 높은 상태에서는 현재의 소득세공제체계를 감안할 때 맞벌이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림 II-16] 맞벌이·홑벌이가구의 총소득 및 소득세 부담 분포(기준금액)



<표 II-21> 맞벌이·홀벌이가구별 총소득 및 소득세 부담  
분포(전가구 기준)

(단위: 천원, %)

	총소득			근로·사업소득세			근로·사업소득세 실효세율		
	전가구	맞벌이	홀벌이	전가구	맞벌이	홀벌이	전가구	맞벌이	홀벌이
1982	3954	4000	3949	118	65	124	2.98	1.63	3.14
1983	4333	4294	4338	108	55	114	2.49	1.29	2.63
1984	4820	4939	4805	132	81	138	2.73	1.63	2.86
1985	5030	4771	5061	161	72	172	3.21	1.52	3.4
1986	5735	5773	5729	188	110	201	3.27	1.91	3.5
1987	6730	6262	6818	230	133	248	3.41	2.13	3.63
1988	8052	7984	8067	320	252	335	3.97	3.16	4.15
1989	9813	9201	9968	331	204	363	3.37	2.22	3.64
1990	11655	11474	11705	396	261	433	3.4	2.27	3.7
1991	14128	14282	14088	425	289	460	3.01	2.02	3.27
1992	16445	17174	16260	601	507	625	3.66	2.95	3.84
1993	17771	19788	17231	573	503	591	3.22	2.54	3.43
1994	20214	21568	19824	676	564	708	3.34	2.62	3.57
1995	23003	24597	22496	776	684	806	3.37	2.78	3.58
1996	25745	28198	25009	783	709	806	3.04	2.51	3.22
1997	26299	29460	25304	837	693	882	3.18	2.35	3.48
1998	23036	26145	21874	695	638	716	3.02	2.44	3.27
1999	25708	28408	24777	734	665	758	2.86	2.34	3.06
2000	29017	31734	27803	923	830	965	3.18	2.61	3.47
2001	30376	33647	29286	1058	1015	1072	3.48	3.02	3.66
2002	32593	36485	31304	986	953	997	3.02	2.61	3.18
2003	35350	38324	33825	1132	1114	1142	3.2	2.91	3.38
2004	38282	40940	36086	1336	1238	1417	3.49	3.02	3.93
2005	39804	43811	36717	1314	1266	1351	3.3	2.89	3.68

주 : 맞벌이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0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추정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65

<표 II-22> 맞벌이·홀벌이가구별 총소득 및 소득세 부담 분포  
(완전취업근로자가구 기준)

(단위: 천원, %)

기준금액 0원	총소득			근로·사업소득세			근로·사업소득세 실효세율		
	전가구	맞벌이	홀벌이	전가구	맞벌이	홀벌이	전가구	맞벌이	홀벌이
2003	37672	40943	25898	1171	1187	345	3.11	2.9	1.33
2004	39859	43045	28425	1349	1306	344	3.39	3.03	1.21
2005	42003	46847	28223	1332	1371	258	3.17	2.93	0.91
기준금액 600만원	총소득			근로·사업소득세			근로·사업소득세 실효세율		
	전가구	맞벌이	홀벌이	전가구	맞벌이	홀벌이	전가구	맞벌이	홀벌이
2003	37672	47199	25898	1171	1472	345	3.11	3.12	1.33
2004	39859	48650	28425	1349	1542	344	3.39	3.17	1.21
2005	42003	52076	28223	1332	1628	258	3.17	3.13	0.91

주 : 1. 맞벌이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기준금액(0원 또는 6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추정  
2. 완전취업근로자가구는 4개 분기 모두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구를 대상

5. 맞벌이의 결정요인: 2005년 가계조사자료 Probit  
분석결과

가. 전 가구 대상

본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맞벌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검정해보았다. 맞벌이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를 종속변수로 하고, 맞벌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변수로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노인 수(65세 이상), 보살핌이 필요한 연령층으로 볼 수 있는 미성년자녀 수, 가구유형(취업근로자가구 여부)을 나타내는 더미, 가구주의 소득(근로·사업소득), 각종 학력더미를 사용하여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Probit 모형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과 연령의 제곱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계수추정치가 양수와 음수를 추정되었으며 p-값도 거의 0에 가까워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다가 하락하는 역U자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시사한다.

65세 이상 노인 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양(+)  
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구 내에 노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임으로써 맞벌이의 확률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5세 이하 또는 10세 이하의 아동 수에 대해서는 계수추정치가 음(-)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가구 내에 영유아가 있을 경우 육아부담 등으로 인해 맞벌이가 어려워짐을 시사한다. 그러나 보살핌이 덜 필요해지는 10세 이상 아동을 포함할 경우 부호가 역전되는 것을 볼 때 육아부담이 맞벌이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가구주의 소득에 대한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가구 내의 주소득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의 유인이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종의 소득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 학력더미의 경우에는 모두 추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앞서서도 보았듯이 학력 간 맞벌이가구의 비율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력(교육수준)더미를 설명변수에서 제외한 경우를 볼 때 계수추정치의 절대값이 다소 변하기는 하였지만 본질적인 추정결과는 학력더미를 포함하였을 때와 거의 같다.

<표 II-23> 맞벌이 여부의 Probit 추정결과(전 가구 대상)

	전가구-1				전가구-2			
	계수	표준편차	z값	p-값	계수	표준편차	z값	p-값
가구주 연령	0.109	0.025	4.75	0.000	0.110	0.024	4.44	0.000
가구주 연령2	-0.001	0.000	-5.00	0.000	-0.001	0.000	-4.79	0.000
배우자 연령	0.110	0.009	11.5	0.000	0.110	0.009	11.77	0.000
배우자 연령2	-0.097	0.000	-8.95	0.000	-0.001	0.000	-9.27	0.000
65세 이상 노인 수	0.166	0.067	2.46	0.014	0.173	0.067	2.58	0.010
5세 이하 아동 수	-0.337	0.054	-6.14	0.000	-0.329	0.054	-6	0.000
6~10세 아동 수	-0.148	0.045	-3.26	0.001	-0.1451	0.045	-3.21	0.001
11~15세 아동 수	0.094	0.043	2.17	0.030	0.097	0.043	2.26	0.024
16~19세 아동 수	0.068	0.054	1.25	0.211	0.064	0.054	1.19	0.235
취업근로자가구 여부	0.307	0.052	5.81	0.000	0.315	0.052	6.02	0.000
가구주 근로·사업소득	0.000	1.62E-05	-6.73	0.000	-9.1E-05	0.000	-6.05	0.000
가구주 학력더미(초등)	0.260	0.382	0.68	0.495				
가구주 학력더미(중등)	0.349	0.377	0.93	0.354				
가구주 학력더미(고등)	0.374	0.375	1.00	0.318				
가구주 학력더미(전문대)	0.520	0.383	1.36	0.175				
가구주 학력더미(대학)	0.522	0.377	1.38	0.166				
가구주 학력더미(대학원)	0.559	0.393	1.42	0.155				
상수	-5.039	0.659	-7.64	0.000	-4.409	0.554	-7.95	0.000

주 : 가구주 근로·사업소득은 1만원 단위

나. 유배우자가구 대상

앞의 가항에서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런데 가계조사자료에는 기혼가구 이외에 미혼가구 또는 편부모가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후자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맞벌이가구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들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유배우자가구)만을 대상으로 Probit 모형을 상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II-24>와 같다.

가구주의 연령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외하고는 전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추정결과가 대동소이하다.

<표 II-24> 맞벌이 여부의 Probit 추정결과(유배우자가구 대상)

	유배우자가구-1				유배우자가구-2			
	계수	표준편차	z값	p-값	계수	표준편차	z값	p-값
가구주 연령	0.060	0.038	1.58	0.114	0.048	0.037	1.3	0.195
가구주 연령2	0.000	0.000	-2.01	0.044	0.000	0.000	-1.79	0.074
배우자 연령	0.197	0.039	4.99	0.000	0.198	0.039	5.07	0.000
배우자 연령2	-0.002	0.000	-5.61	0.000	-0.002	0.000	-5.75	0.000
65세 이상 노인 수	0.189	0.071	2.65	0.008	0.196	0.071	2.76	0.006
5세 이하 아동 수	-0.335	0.056	-5.93	0.000	-0.326	0.056	-5.79	0.000
6~10세 아동 수	-0.175	0.045	-3.85	0.000	-0.171	0.045	-3.8	0.000
11~15세 아동 수	0.082	0.045	1.82	0.068	0.085	0.045	1.89	0.058
16~19세 아동 수	0.066	0.057	1.16	0.245	0.061	0.057	1.07	0.282
취업근로자가구 여부	0.333	0.054	6.16	0.000	0.343	0.053	6.42	0.000
가구주 근로·사업소득	0.000	1.68E-05	-7.10	0.000	-1E-04	1.55E-05	-6.44	0.000
가구주 학력더미(초등)	0.281	0.403	0.70	0.486				
가구주 학력더미(중등)	0.355	0.398	0.89	0.372				
가구주 학력더미(고등)	0.361	0.395	0.91	0.361				
가구주 학력더미(전문대)	0.548	0.404	1.36	0.175				
가구주 학력더미(대학)	0.535	0.397	1.35	0.178				
가구주 학력더미(대학원)	0.577	0.413	1.40	0.163				
상수	-5.502	0.731	-7.52	0.000	-4.827	0.623	-7.74	0.000

주: 가구주 근로·사업소득은 1만원 단위

### Ⅲ. 여성노동공급과 소득세

#### 1. 여성노동공급함수 추정

##### 가. 자녀보육비용과 여성노동공급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주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의사결정과는 달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은 기혼여성이 속해 있는 가구의 경제적·인적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어린 자녀가 없는 가구의 기혼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의 보육비용은 여성의 취업에 대한 기회비용이기에 자녀의 보육비용은 여성의 노동공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자녀보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자녀보육비용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자의 관계에 관한 Gelbach(2002)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무료 공공유치원 수와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single mother)의 경제활동참가율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를 연구한 Chevalier-Viitanen (2002)의 연구도 공적인 자녀보육 시설의 이용 가능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자녀보육비용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사이에는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상의 사실은 미국과 영국 외의 많은 나라에서

도 일반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크기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자료나 보육비용에 관한 정의, 분석모형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요인 이외에도 여성의 교육수준, 소득정도에 따라서도 보육비용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각각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혼인상태 여부에 따라 보육비용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다른가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자녀의 나이가 적을수록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많은 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자녀보육비용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베이를 한 Blau-Currie (2003)의 선행연구 요약을 <표 III-1><sup>5)</sup>에 제시하였다.

한편, Gelbach(2002)와 Chevalier-Viitanen(2002)은 자녀보육과 여성노동공급 간의 인과관계를 Granger 인과관계 테스트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양자 모두 자녀보육이 여성노동공급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경우도 전일제 직업(full time job)을 택할 것인가 시간제 직업(part time job)을 가질 것인가를 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자녀보육을 포함한 가정 내 생산활동에 남성보다 여성에 더 적합하다고 하는 비교우위로 인해 여성의 취업형태 결정은 성 역할(gender role)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어린 여성의 경우 전일제 직장보다는 시간제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Falzone(2000)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막내가 어릴수록, 그리고 남편의 수입이 많을수록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직장을 선호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요인에 더하여 세제, 육아휴가와 출산휴가, 자녀보육비용 역시 경제활동참가와 더불어 전일제, 시간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김현숙·원종학(2004)에서 재인용

<표 III-1> 보육비용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Blau and Currie (2003))

연구자	데이터	모집단	고용	보육비용	방법론	추정결과(탄력성)
Anderson and Levine (2000)	SIPP 1990~1993	13세 미만 어린이	이항(binary) : 경제활동참가	어머니의 시간당 총보육비용	Probit; standard	기혼 < 13 : -0.30 미혼 < 13 : -0.47 기혼 < 6 : -0.46 미혼 < 6 : -0.58
Baum(2002)	NLSY 1988~1994	1988~1994 출산 여성	출산후 직장부귀	시간당 총보육비용	Discrete time logit hazard	저소득층: -0.59 기타: -0.02
Blau and Robins(1991)	NLSY 1982~1986	6세 미만 어린이	이항(binary) : 지난 4주 동안 고용	보육 시간당 총보육비용	Probit; standard	0.04
Connelly(1992)	SIPP 1984	기혼, 13세 미만 어린이	이항 : 경제활동참가	어머니의 시간당 총보육비용	Probit; standard	-0.2
Connelly and Kimmel (2000)	SIPP 1992~1993 (data for 1994)	6세 미만 어린이	전일제, 시간제, 비경제활동인구	가장 어린 자녀의 주된 보육에 대한 시간당 지출	Ordered probit on FT, PT, OLE	기혼: 전일제 : -0.71 시간제 : -0.08 미혼: 전일제 : -1.22 시간제 : -0.37
Connelly and Kimmel (2000)	SIPP 1992~1993 (data for 1994)	미혼, 6세 미만 어린이	이항 : 경제활동참가	가장 어린 자녀의 주된 보육에 대한 시간당 지출	Probit; standard	-1.03
U.S. GAO(1994b)	NCCS 1990	13세 미만 어린이	이항 : 경제활동참가	주당 총보육비용	Probit; standard	저소득층: -0.50 차상위층: -0.34 비저소득층: -0.19
Han and Waldfogel (2001)	CPS 1991~1994	6세 미만 어린이	이항 : 고용	어머니의 시간당 총보육비용	Probit; standard	기혼: -0.30 미혼: -0.50

&lt;표 III-1&gt;의 계속

연구자	데이터	모집단	고용	보육비용	방법론	추정결과(탄력성)
Hotz and Kilburn (1994)	NLS72, 1986	6세 미만 어린이	이항 : 고용	시간당 총보육비용	Probit	-1.26
Kimme(1998)	SIPP 1987	13세 미만 어린이	이항 : 전월 취업	어머니의 시간당 총보육비 지출	Probit: standard	기혼 : -0.92 미혼 : -0.22
Powell(1997)	Canadian NCCS	기혼, 6세 미만 어린이	이항 : 고용	근로와 관련된 어머니의 시간당 총가족지출	Probit: standard	-0.38
Ribar(1992)	SIPP 1984	15세 미만 어린이	고용	시간당 총보육비용	Probit	-0.74
Blau and Hagy(1998)	NCCS 1990	6세 미만 어린이	고용	보육시설 제공자 조사에 의한 질 조정 지역별 보육비용	Multinomial logit	-0.2
Blau and Robins(1988)	EOPP 1980	기혼, 14세 미만 어린이	고용	지역별 주 평균 보육 지출	Multinomial logit	-0.34
Fronstin and Wissoker (1995)	NCCS 1990	6세 미만 어린이	고용	보육시설 제공자 조사에 의한 지역별 평균 보육 비용	binary logit	저소득지역 : -0.45 고소득지역 : 0.06
Michalopoulos and Robins(2000)	Canadian and U.S. NCCS	기혼, 5세미만 어린이	전일제, 시간제, 비경제활동인구	시간당 총보육지출	Multinomial logit	-0.156
Michalopoulos and Robins (2002)	Canadian and U.S. NCCS	미혼, 5세 미만 어린이	전일제, 시간제, 비경제활동인구	시간당 총보육지출	Multinomial logit	-0.259
Powell(2002)	Canadian NCCS	기혼, 6세 미만 어린이	고용	가장 어린 자녀의 주된 보육에 대한 시간당 지출	Multinomial logit	Center user : -1.40 Non-relative user : -3.60 Relative user : -0.80
Ribar(1995)	SIPP 1984	기혼, 15세 미만 어린이	전일제, 시간제	시간당 총보육비용	structural multinomial	-0.09
Tekin(2002)	NSAF 1997	미혼, 13세 미만 어린이	전일제, 시간제	시간당 총보육비용	Multinomial logit	전일제 : -0.15 시간제 : -0.07

자녀의 보육관련 비용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표 III-1>에 나타난 것처럼 주로 노동시장참가 여부, 전일제와 시간제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Connelly(1992)는 노동시장참가 여부에 대한 시간당 자녀보육비 지출의 영향을 2SLS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Connelly(1992)와는 달리 김현숙·원종학(2004)은 보육비 지출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적인 회귀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통제함수추정치(control function estimator)를 이용하여 이항선택모형에서 일치추정치를 도출하였다.

반면, 자녀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김현숙·원종학(2004)에서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은 모형이며 여성이 취업을 통해 얻는 임금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자녀보육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임금과는 별개의 변수로 자녀보육비용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를 여성의 노동시간 결정에 고려하며 동시에 시간당 자녀보육비용도 시간당 임금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도입하여 여성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다.

#### 나. 여성노동공급함수 추정

##### 1) 세후소득과 노동시간 간의 내생성

Lee(2004)가 지적하였듯이 총소득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 혹은 시간당 비임금 소득을 구하는 경우에는 매우 큰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동패널자료의 시간당 임금은 상당한 측정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내생성이 존재한다. 노동패널의 개인자료 중 연봉제 임금, 월임금, 주임금, 시간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제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전체 임금을 주당 평균근로시간 혹은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1년간 주수(52주)나 한 달간 주수(4.3주)를 이용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보고된 월평균 소득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과 한 달간 주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노동공급시간에 설명변수로 사용될 시간당 임금은 노동공급 시간 그 자체를 이용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발생하는 편의(division bias)’를 갖게 되고 이는 두 변수 간의 내생적인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함수를 구성할 때 시간당 임금변수의 내생성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공급에 소득세를 고려할 경우 나타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문제는 세후소득 및 비근로소득과 노동공급 시간사이에 나타나는 내생성 문제이다. Lee(2004)와 Lee and Chun(2005)은 이와 같은 내생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도구변수법과 3SLS 추정방식을 사용하여 남성의 세후임금과 근로시간 간의 내생성 문제를 교정하였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일정한 시간의 노동을 제공할 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자가 노동공급을 통해 얻게 되는 보상이 임금 혹은 비임금 소득은 세전소득이지만, 체감하는 소득은 모두 세후소득이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득세를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여성노동공급과 소득세, 특히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여성노동공급의 관계이므로 소득세를 고려하여 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세를 고려하게 되면 임금과 노동시간 간에 내생성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2004년 현재 4단계 세율체계를 지닌 누진세제이다. 그 밖에 4단계의 근로소득공제와 2단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결합되어 있어 개인이 직면하는 소득세율체계는 여러 단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연간 임금 혹은 비임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제한 세후소득은 노동시간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세후소득이 노동공급시간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소득세 자체가 노동공급시간에 영향을 미쳐 세후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변수 간의 내생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노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이 아닌 비근로소득의 크기는 균형점에서는 한계세율에 의존하게 되므로 이 또한 노동시간 자체에 의존하게 된다.

#### 2) 자녀보육비용과 기혼여성의 시간당 실효임금(effective wage)

노동공급시간과 시간당 임금 간의 내생성 문제는 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측정오차의 문제를 통해 나타나고, 소득세를 고려한 경우에는 세후임금이 근로시간에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내생성의 문제는 남성의 노동공급을 고려할 때도 나타나는 것이므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고려할 때 특수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기혼여성을 1차적인 자녀 양육자로 볼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자녀 양육 및 양육비용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연령의 영유아를 둔 기혼여성은 자녀를 전적으로 돌볼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혼여성의 시간배분은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대한 배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기혼여성이 취업을 할 경우에는 자녀를 대신 돌봐줄 공식적인 기관(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원 등)이나 비공식적인 탁아모(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을 이용한 탁아)에게 자녀를 맡기게 되며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기혼여성은 자신이 일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기관을 이용한 양육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

으며 이는 기혼여성의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동공급모형에서 예산제약식의 기울기가 시간당 세전임금(비임금)인 것과 달리 기혼여성의 소비와 근로시간 간의 예산제약식의 기울기로 나타나는 임금은 소득세와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을 차감한 실효임금 혹은 실효소득(effective wage or income)이다. 기혼여성  $i$ 의 실효임금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sup>6)</sup>.

$$w_i^* = w_i(1 - t_{w_i, h_i}) - p_{cc_i}$$

여기서  $t_{w_i, h_i}$ 는 기혼여성  $i$ 의 세율이며 이는 기혼여성  $i$ 의 시간당 총임금과 근로시간에 의존하게 된다.  $p_{cc_i}$ 는 자녀보육의 시간당 비용으로 실효임금은 소득세를 제외한 순시간당 임금에서 시간당 자녀비용을 차감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공식적인 보육과 비공식적인 탁아의 비용 간에 차이가 있느냐이다.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탁아가 공식적인 기관을 이용한 양육보다 저렴한 것으로 추측<sup>7)</sup>할 수 있으나 노동패널 제7차연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비공식적인 탁아의 경우, 집에 와서 자녀를 돌봐주는 양육도우미 등의 이용으로 인해 공식적인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다소 평균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의 차이를 실효임금 계산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공식적인 보육과 비공식적인 탁아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는 두 보육형태의 한계비용이 동일해져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할 때 두 보육형태의 비용은 균형에서는 동일해야 한다고 보고 실효임금 계산시 보

6) 위와 같은 실효임금식은 Averett et al(1997)과 유사하다. 다만 Averett et al.(1997)은 자녀세액공제제도가 이미 도입된 미국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실효임금방정식에 자녀세액공제에 따른 공식적 보육기관 이용시의 보육비용이 차감되어 있다.

7) Connelly(1992)는 비공식적인 탁아의 잠재가격은 0이라고 가정하였다.

육 형태의 차이에 따른 비용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은 만5세 이하의 자녀에게 지출되는 보육비에 대해서만 고려하였고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지출하는 교육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기혼여성의 실효임금을 구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연령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 혹은 교육비 지출을 기혼여성이 노동공급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칙은 없다. 단,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노동의사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투자로 교육비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학령전 아동에 대한 보육비만을 실효임금 계산시 시간당 보육비용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혼여성은 자녀를 돌보는 것과 소비 간의 한계대체율이 실효임금(소득)과 동일한 수준에서 자신의 노동시간을 선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시간당 세후임금 혹은 세후소득의 설정은 남성의 노동공급과는 달리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을 기혼여성의 시간당 임금 혹은 소득의 기회비용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를 차감한 세후소득으로부터 시간당 보육비용을 차감한 임금 혹은 소득을 순수한 세후실효임금 혹은 세후실효소득으로 고려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 3) 여성노동공급함수 : CES 효용함수

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은 기혼여성의 시간당 임금,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 소득세, 비근로소득의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혼여성은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공급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Lee(2004)의 효용함수 설정을 따라 대체탄력성이 일정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한다. CES 효용함수는

효용함수에 대한 Slutsky 조건을 만족시켜 준오목함수의 효용함수를 가정하게 함으로써 효용함수의 특성을 만족시키는 널리 이용되는 함수형태이다.

CES 효용함수하의 기혼여성의 효용극대화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max_{c_i, l_i} U(C_i, l_i) &= [\phi_i c_i^{-\rho} + l_i^{-\rho}]^{-1/\rho} \\ \text{s.t.} \quad c_i &= w_i^* h_i + v_i = [(1 - t_{w_i, h_i}) w_i - p_{cc_i}] h_i + v_i \\ T &= h_i + l_i \end{aligned}$$

여기서  $c_i$ 는 기혼여성  $i$ 의 소비,  $v_i$ 는 기혼여성  $i$ 의 비근로소득,  $l_i$ 는 기혼여성  $i$ 의 여가시간,  $T$ 는 모든 이에게 허용된 일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총시간으로 Lee & Chun(2005)와 같이 하루 잠자는 시간 등을 제외한 14시간을 하루당 총시간으로 설정하여 연간 시간을 산정하였다. Lee(2004)의 효용함수식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소비함수 제약식에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구성할 때 자녀 수나 자녀의 질(quality)적 수준을 독립적인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여성노동공급을 소비, 여가, 자녀 수, 자녀의 질적 수준의 함수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와 여가 간의 선호를 결정하는  $\phi_i$ 에 자녀 수와 어린 자녀 존재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소비와 효용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하고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ln\left(\frac{l_i}{c_i}\right) = -\lambda \ln \phi_i - \lambda \ln [(1 - t_{w_i, h_i}) w_i - p_{cc_i}] \quad (1)$$

여기서  $\lambda \equiv \frac{1}{1+\rho}$  이다. 위 식으로부터 구해지는 개인의 여가에 대한 소비의 상대적 선호를 나타내는  $\phi$ 은 Slutsky 방정식을 구할 때 이용된다. 또한 효용극대화의 1계 조건으로부터 근로시간  $h$ 에 대한 관계식도 구할 수 있다.

$$h = \frac{T - \phi^{-\lambda*} \text{aftertax wage}^{\lambda*} vy}{1 + \phi^{-\lambda*} \text{aftertax wage}^{-\lambda}}$$

여기서  $vy$ 는 가상소득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0인 경우의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위의 관계식에서 도출된 값들과 구해진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Slutsky 방정식에 따라 비보상 임금탄력성 (소득효과+대체효과)와 보상임금탄력성(대체효과)를 구할 수 있다. 비보상 임금탄력성과 보상임금탄력성 산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E_{hw} = \frac{\lambda \phi^{-\lambda*} \text{aftertax wage}^{1-\lambda*} vy}{\text{aftertax wage} * T - \phi^{-\lambda*} \text{aftertax wage}^{1-\lambda*} vy} - \frac{(1-\lambda) \phi^{-\lambda*} \text{aftertax wage}^{1-\lambda}}{1 + \phi^{-\lambda*} \text{aftertax wage}^{1-\lambda}}$$

$$\begin{aligned} E_{hw}^{comp} &= E_{hw} - \text{aftertax wage} * \frac{\partial h}{\partial vy} \\ &= E_{hw} + \frac{\phi^{-\lambda*} \text{aftertax wage}^{1-\lambda}}{1 + \phi^{-\lambda*} \text{aftertax wage}^{1-\lambda}} \end{aligned}$$

실효임금이 높아지면 여가가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늘리려는 대체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측정할 값이 보상임금탄력성이다. 반면 실효임금이 높아지면 여가는 보통재 (normal good)이므로 여가를 더욱 소비할 유인이 생기며 이로 인

해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소득효과이다. 비보상 임금탄력성은 두 가지 효과가 합해져서 나타나므로 그 부호는 사전적으로는 알 수 없다.

#### 다. 실증분석

##### 1) 실증분석 모형과 이슈

위와 같은 CES 효용함수 가정을 이용한 효용극대화 식의 1계 조건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에 필요한 식을 구성할 수 있다. 위의 식 중  $\phi$ 는 개인의 소비와 여가상의 선호를 반영하므로 실증분석 시에는 기혼여성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연령, 자녀 수, 영유아 존재 유무 등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ln \phi_i = k_0 + k_1 age_i + k_2 \# of child_i + k_3 (dummy \ of \ age \ 0-2)_i + k_4 (dummy \ of \ age \ 3-5)_i + \epsilon_i$$

어린 자녀의 존재나 자녀 수,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는 효용함수 설정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용함수에 직접적인 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소비와 여가상의 선호에 반영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차원에서 볼 때 효용함수의 설정방식에 따라 노동공급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자녀 수와 어린 자녀를 효용함수에 설명요소로서 직접 포함한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값과 탄력성이 서로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Averett et al.(1995)은 자녀 수를 직접적으로 효용함수의 한 요소로서 가정하고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상임금탄력성(대체탄력성)을 구한 결과 1보다 큰 값을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함수 형태에 대한 가정에 따라 임금탄력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CES 효용함수는 남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변용하여 소득세 외에 시간당 보육비용을 세전소득에서 차감하여 세후소득 예산제약식을 구성하고 소비와 여가 간의 대체선호에 어린 자녀의 존재 유무가 영향을 준다는 형태로 전환했기 때문에 남성의 노동공급함수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임금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용한 노동공급함수와 자녀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효용함수로부터 도출한 노동공급함수의 탄력성을 비교할 경우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다소 클 개연성은 존재한다.

소비와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식 (1)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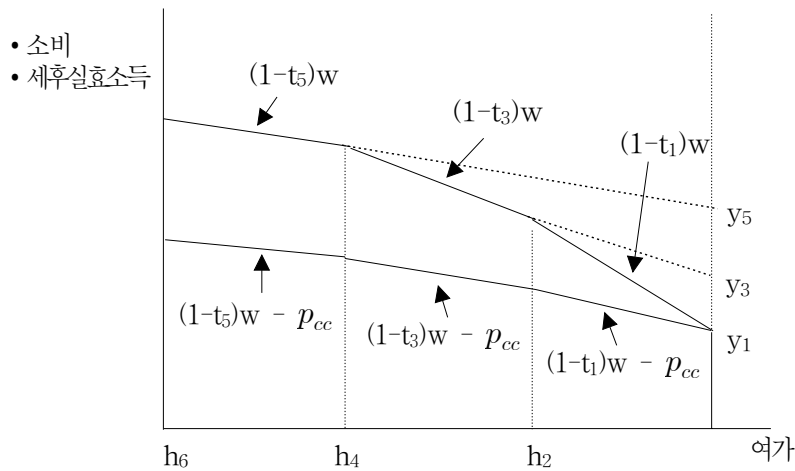
$$\ln\left(\frac{l_i}{c_i}\right) = \beta_0 + \beta_1 age_i + \beta_2 \# of\ child_i + \beta_3 (dummy\ of\ age0-2)_i \\ + \beta_4 (dummy\ of\ age3-5)_i + \beta_5 \ln w_i^* + \beta_6 \lambda_p + u_i$$

여기서  $\beta_0 = -\lambda k_0$ ,  $\beta_1 = -\lambda k_1$ ,  $\beta_2 = -\lambda k_2$ ,  $\beta_3 = -\lambda k_3$ ,  $\beta_4 = -\lambda k_4$ ,  $\beta_5 = -\lambda$ 이고  $\lambda_p$ 는 Mill's ratio의 역수이며  $\beta_6$ 는 이의 추정계수이다. 따라서 소비와 여가의 상대적 비율은 임금의 함수로 나타나며 이는 곧 노동공급시간이 임금의 함수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여기서  $\beta_5$ 가 음수인 것은 위의 CES 효용함수를 따라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한 경우 Slutsky 조건이 충족되는 충분조건을 구성하게 된다.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beta_5$ 를 구하고 이와 실효임금, 총부존시간, 가상소득(비근로소득),  $\phi$ 를 구하여 대체탄력성인 보상임금탄력성을 구하면 효용함수의 성격상 비율

수(non-negativeness)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증 분석시 고려해야 할 계량경제학적 문제가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 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한 예산제약식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소득세가 없는 경우 효용극대화 식에서의 예산제약식은 여가와 소비 평면에서 선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누진적인 소득세제가 도입되고 기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도입되면 예산제약식은 비선형(non-linear) 예산제약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실효임금을 구하기 위해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을 구하면 기혼여성의 예산제약식은 [그림 III-1]처럼 나타난다.

[그림 III-1] 기혼여성의 실효임금에 따른 예산제약식



주 :  $h$ 는 각 구간별 노동공급시간,  $t_1$ ,  $t_3$ ,  $t_5$ 는 각 구간별 세율,  $p_{cc}$ 는 시간당 보육비 지출,  $y_1$ ,  $y_3$ ,  $y_5$ 는 구간별 가상 소득

위와 같은 예산제약식하에서는 Hausman(1981)에서 사용된 최우추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비선형 예산제약식 혹은 볼록하지 않은(non-convex) 예산제약식하에 효용극대화의 해를 찾는 방

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Moffitt(1986) 역시 위와 같은 방법론을 이용한 이중오차모형(dual error model)을 사용하여 비선형 혹은 비볼록 예산제약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Moffitt(1986)에서 제시한 이중오차 중의 하나는 관측되지 않은 개인별 선호의 이질성(heterogeneity)이며, 다른 하나의 오차는 최적화 오차(optimization error)로 개인이 복잡한 예산제약식에 따라 자신의 노동공급시간을 최적화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Moffitt(1986)은 최적화 오차 외에 측정오차 등도 두 번째 오차로 고려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도구변수법을 이용하여 시간당 임금의 측정오차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내생성을 해결하고자 한다<sup>8)</sup>. 도구변수법은 내생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만약 개인의 노동공급선택이 예산제약식상의 굴절점(kinked points)에서 발생하게 되면 최우추정법보다 열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구변수법을 사용할 수 없고 이중오차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다.

노동패널상의 기혼여성(712명)의 노동공급시간 선택과 각 개인이 직면하는 실효임금과 가상소득, 소비에 따른 예산제약식을 그려 굴절점에서 노동공급시간을 결정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굴절점에서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기혼여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노동공급시간에 따른 소득세율과 자녀보육비용 추정치하에서 선택한 점을 만약 예산제약식을 비선형이

8) 나아가 Moffitt(1986)의 방법론을 이용한 이중오차모형을 통해 비선형 예산제약식을 직접 고려하여 최우추정법을 통해 노동공급함수 추정을 시도할 것이다.

9) 개인의 소득의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예산제약식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각 과세표준소득의 범위를 1% 내외로 조정하여 본 결과 1명의 여성이 굴절점 근처에서 노동공급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라 선형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소득세율에 따라 새롭게 확장된 예산제약집합까지 고려한다 해도 변화시키지 않고 여전히 현재 선택한 노동공급시간과 소비조합을 선호하게 되므로 비선형 예산 제약식이 제약조건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구변수법을 이용하는 것이 비선형 예산제약식하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과 임금 간의 관계는 표본 선택의 편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이미 노동시장에 참가한 집단으로부터만 관측 가능하므로 표본선택의 편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남성보다 더욱 선별적이어서 노동시장에 참가한 여성만을 표본으로 할 경우에 추정치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참가 여부식을 구성하여 이로부터 도출된 추정치를 이용하여 Mills' ratio를 구하여 이를 노동공급시간 방정식의 설명변수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Mills' ratio를 포함시키지 않은 모형의 결과와 비교해본다.

## 2) 실증분석의 자료

실증분석을 위해 노동패널 제7차연도인 2004년의 기혼여성 중 18세 이하의 고등학생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의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누락된 관측치를 제외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여부와 보육시설 이용 여부의 분석을 위해 일차적으로 사용된 표본자료를 정리하면 <표 III-2>와 같다.

노동시장에 참가한 기혼여성 중 노동공급시간과 임금에 대한 관측치가 있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표본을 정리하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2> 기혼여성 기초통계 I

	전체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가	노동시장 참가 & 보육시설 이용
노동시장참가 여부(참가=1)	0.409 (0.492)	1 (0)	1 (0)
연령	38.09 (10.98)	37.51 (7.65)	37.2 (6.97)
비근로소득	2,497,604 (2,309,602)	2,115,394 (2,037,768)	2,223,895 (2,214,302)
경력연수	1.879 (4.68)	4.597 (6.41)	4.453 (5.92)
고등학생 이하 자녀 수	1.78 (0.63)	1.81 (0.61)	1.82 (0.58)
만2세 이하 영아유무(유=1)	0.27 (0.444)	0.16 (0.37)	0.13 (0.34)
만3~5세 유아 유무(유=1)	0.35 (0.477)	0.28 (0.45)	0.30 (0.46)
교육수준	12.16 (3.56)	12.57 (2.96)	12.77 (2.82)
부모동거 여부 (동거=1)	0.10 (0.31)	0.099 (0.299)	0.10 (0.30)
대도시 거주 여부(대도시=1)	0.49 (0.50)	0.50 (0.50)	0.51 (0.50)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06(0.25)	0.083 (0.276)	0.067 (0.25)
총표본 수	1,558	712	539

<표 III-3> 기혼여성 기초통계 II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712	39.19	7.07
교육연수(년)	712	12.14	3.07
비근로소득(원/월)	712	2,113,975	2,769,773
고3 이하 자녀 수	712	1.72	0.58
만0~2세 영아유무(유=1)	712	0.114	0.318
만3~5세 유아유무(유=1)	712	0.176	0.381
경력연수(년)	712	4.69	5.94
세전 시간당 소득(원)	712	6,772.4	11,351.1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원)	712	344.9	944.4
소득세(연/원)	712	907,335.6	3,243,641
시간당 실효임금(원)	712	5,971.3	8,548.1
연간노동시간	712	2,492.9	877.6

<표 III-3>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당 임금의 평균은 6,772.6원이다.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의 추정치를 차감하고 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시간당 세후실효임금은 5,971.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노동시간은 2,492시간으로 일주일 중 5.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하루에 8.7시간의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실증분석의 결과

#### 가) 자녀보육비용의 추정치

기혼여성의 실효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에서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을 차감해야 한다. 그런데 자녀보육비용은 부모가 선택하는 기관이나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독립적인 변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도구변수로 기혼여성의 보육서비스 구매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의 추정치를 사용한다. 표본선택의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결정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biprobit 모형을 통해 회귀식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나온 노동시장참가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추정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표본선택의 편의를 교정한 후 자녀보육비용의 추정치를 구한다. 노동시장참가 여부와 보육시설 이용 여부의 동시 결정식의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에서 알 수 있듯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여부와 보육시설 이용 여부식의 공분산은 0.204로 유의하며 Wald 검정결과 공분산의 값  $\rho$ 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즉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와 보육시설 이용 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와 관련해서는 타가구원의 소득이 높으면 노동시장참가에 덜 참가하게 되며, 만5세 이하의 어린 영유아의 존재는 기혼여성의 양

III. 여성노동공급과 소득세 87

육부담을 가중시켜 노동시장참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참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4> 기혼여성 노동시장참가 여부와 보육시설 이용 여부 결정식(biprobit)

변수	biprobit 계수 (z값)	
	노동시장참가	보육시설 이용 여부
log(비근로소득)	-0.412** (-7.86)	0.231** (4.68)
교육연수	0.052** (3.44)	0.062** (4.97)
연령	0.135** (5.07)	-
연령 <sup>2</sup>	-0.001** (-5.35)	-
대도시거주 여부	-0.0132 (-0.19)	0.293** (2.75)
고3 이하 자녀 수	0.0203 (0.33)	0.336** (4.02)
만 0~2세 영아 유무	-0.526** (-5.49)	-1.237** (-14.14)
만 3~5세 유아 유무	-0.270** (-3.38)	0.436** (4.65)
부동산거주여부	0.369** (2.61)	0.489** (2.86)
가구주 여부	0.257 (1.53)	-
상수	2.372** (2.62)	-3.705** (-5.15)
$\rho$	0.204 (Error: 0.0549)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생 이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시설이용률이 높으며, 만2세 이하 영아가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3~5세의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비근로소득 즉, 기타 가구원과 금융 및 부동산 소득이 높거나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변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위의 biprobit 모형으로부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의 추정치와 보육시설 이용의 추정치를 구해 자녀보육비용 결정식에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5> 시간당 자녀보육비용 결정식(OLS)

변수	시간당 보육비용
고3 이하 자녀 수	579.901 (1.53)
만 0~2세 영아 유무	-736.515 (-0.57)
만 3~5세 유아 유무	-1185.467 (-1.50)
log(비근로소득)	240.069 (0.47)
교육연수	346.726** (4.33)
$\lambda_p$	582.751 (0.37)
$\lambda_f$	-1025.84 (-0.49)
상수	-6265.85 (-0.89)

- 주: 1.  $\lambda_p$ 는 노동시장참여식으로부터의 inverse Mills' ratio  
 2.  $\lambda_f$ 는 보육시설이용식으로부터의 inverse Mills' ratio  
 3.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III-5>에서 알 수 있듯이 앞의 biprobit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표본선택 편의 조정항은 크게 유의하지 않다.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시간당 보육비용의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당 보육비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해 증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회귀식으로부터 도출된 시간당 보육비용의 추정치는 시간당 실효임금을 구할 때 이용된다.

나) 임금에 대한 표본선택 편의 교정과 노동공급함수 추정

시간당 실효임금이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식을 구성하기 전에 노동공급시간과 임금에 대한 관측치가 있는 기혼여성은 이미 노동시장에 참가한 경우이므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표본만으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할 때 발생하는 표본선택의 편의를 교정하기 위해 노동시장참가 여부에 대한 프로빗 추정치로부터 inverse Mills' ratio를 구해 편의를 조정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다. 노동시장참가에 대한 프로빗 추정식은 <표 III-6>과 같다. 추정결과는 위의 biprobit 추정치의 계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노동시장참가 프로빗 추정식

종속변수	노동시장참가(참가=1)
log(비근로소득)	-0.391** (-8.98)
교육연수	0.027* (2.10)
연령	0.177** (7.07)
연령2	-0.02** (-7.66)
대도시거주 여부	-0.025 (-0.42)
고3 이하 자녀 수	-0.017 (-0.34)
만 0~2세 영아 유무	-0.498** (-5.41)
만 3~5세 유아 유무	-0.266** (-3.40)
부모동거여부	0.344** (3.17)
가구주 여부	0.215 (1.49)
상수	1.697* (2.13)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추정결과로부터 Mills' ratio를 구하여 이를 노동공급함수에 추가한 경우와 이를 무시하고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비교한다. 노동공급함수 추정시 실효임금의 내생성을 교정하기 위해 우선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은 자녀보육비용 추정식의 추정치를 대신 사용하였고, 소득세를 차감함에 따라 나타나는 내생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Lee(2004)와 유사하게 두 가지 종류의 도구변수를 이용하였다. 하나는 세전소득에서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추정치를 제거한 값을 시간당 실효임금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였고, 다른 하나는 교육수준과 직업경력기간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 두 가지 변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도 보고하였다. 단, 자녀보육비용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수준, 경력과 더불어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의 추정치를 도구변수로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표 III-7>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 ( $\ln(\frac{L}{c})$ ) 추정 I

변수	OLS	IV = 세전 소득-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교육수준, 경력, 시간당 보육비용추정치)	IV = 세전소득-시간당 보육비용추정치, 교육수준, 경력
log(w*)	-0.094** (-4.93)	-0.288** (-6.98)	-0.630** (-7.77)	-0.290** (-7.03)
고3 이하 자녀 수	-0.066 (-1.38)	-0.041 (-0.84)	-0.074 (-1.43)	-0.041 (-0.85)
만 0~2세 영아 유무	-0.076 (-0.83)	-0.057 (-0.65)	-0.061 (-0.66)	-0.057 (-0.65)
만 3~5세 유아 유무	0.127 (1.68)	0.113 (1.56)	0.082 (1.07)	0.113 (1.56)
연령	0.002 (0.56)	0.002 (0.52)	-0.001 (-0.26)	0.002 (0.52)
상수	-8.72** (-31.41)	-7.11** (-16.77)	-4.012** (-4.24)	-7.10** (-16.74)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Ⅲ. 여성노동공급과 소득세 91

노동시장참가 여부에 대한 표본선택을 교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영유아의 존재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이다. 표본선택 편의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를 보여주는 <표 Ⅲ-7>의 경우, 만2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에는 모형에 따라 노동공급시간에 유의하지는 않으나 양(+)<sup>1)</sup>의 영향을 주거나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표본선택의 편의를 교정한 <표 Ⅲ-8>의 경우, 만2세 이하의 영아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여가시간을 늘이고 노동공급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3~5세 사이의 유아의 경우에는 표본선택을 교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형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표본선택을 교정한 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매우 뚜렷하게 음(-)<sup>2)</sup>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3 이하 자녀 수의 존재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표본 사이에만 나타나는 노동공급시간의 표본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한 inverse Mills' ratio의 계수는 <표 Ⅲ-8>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선택의 편의를 교정한 모형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두 표 모두에서 OLS 추정치와 서로 다른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추정치를 비교해보면 OLS와 비교하여 세전임금변수나 세전임금변수와 교육수준, 경력을 도구변수로 동시에 사용한 모형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과 경력연수, 보육비용 추정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비보상 및 보상임금탄력성을 계산해보면 OLS 모형과 세전임금변수를 도구변수로 추가한 모형의 경우에는 보상임금탄력성의 계수가 0.01~0.10 수준의 낮은 탄력성을 보이는 반면, 경력과 교육수준, 자녀보육비용 추정치를 도

구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상임금탄력성이 0.23~0.24로 더 크게 나타나고 효용함수의 준오목성을 충족시키는 Slutsky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8>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 ( $\ln(\frac{L}{c})$ ) 추정 II

변수	OLS'	IV = 세전 소득-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교육수준, 경력, 시간당 보육비용추정치	IV = 세전소득-시간당 보육비용추정치, 교육수준, 경력
log(w*)	-0.103** (-5.97)	-0.282** (-7.55)	-0.613** (-8.28)	-0.285** (-7.62)
고3 이하 자녀 수	-0.036 (-0.84)	-0.029 (-0.67)	-0.060 (-1.28)	-0.029 (-0.68)
만 0~2세 영아 유무	0.570** (5.81)	0.532** (5.66)	0.530** (5.30)	0.532** (5.66)
만 3~5세 유아 유무	0.499** (6.69)	0.453** (6.32)	0.424** (5.53)	0.453** (6.31)
연령	0.007 (1.70)	0.002 (0.41)	-0.001 (-0.32)	0.002 (0.41)
$\lambda_P$	-4.426** (-12.50)	-4.290** (-11.87)	-4.255** (-10.98)	-4.290** (-11.87)
상수	-6.798** (-23.06)	-5.151** (-12.31)	-2.191** (-3.06)	-5.126** (-12.26)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위와 같은 차이는 시간당 임금의 측정오차로 인해 단지 세전임금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측정오차를 해결할 수 없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측정오차가 클 경우 임금변수를 직접적으로 대신하는 도구변수인 세전임금이나 임금에 대한 추정치<sup>10)</sup>보다는

10) Lee and Chun(2005)은 임금에 대한 추정치를 노동시장 참여 여부식으로부터 구한 inverse Mill's ratio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구한 후 이를 노동공급시간함수에서 임금에 대한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보상 임금탄력성을 구해보니 -0.0017로 세전임금을 이용한

임금변수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으나 교란항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도구변수<sup>11)</sup>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간당 근로소득을 구할 때 전체 근로소득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구하면서 나타난 편의문제가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할 때 다른 종류의 내생정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혼여성 표본은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비임금근로자도 포함하고 있다. 소득이 임금소득인지 비임금소득인지에 따라 임금탄력성이 다를 수 있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나누어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해보았다. 추정결과 표본 수가 541명인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표본과 유사하나 다소 보상임금탄력성이 전체 표본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172명의 표본을 가진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탄력성의 값이 아주 작은 음수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노동공급함수 추정치를 제시하면 <표 III-9>와 같다.

<표 III-9>의 추정치는 모두 실효임금 계산시 만5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용만을 고려하여 세후임금에서 차감하여 도출한 것이다. 보다 광범위하게 자녀보육비용을 실효임금을 구할 때 고려한 연구결과는 약간 다른 추정치를 제시한다<sup>12)</sup>.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 학력이나 경력 외에 거주하는 지역이 대도시 여부인지도 도구변수 중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Lee(2004)는 학력과 경력의 제곱항도 도구변수로 동시에 사용하였다. 대도시 거주 여부나 학력이나 경력의 제곱항을 포함한 경우의 노동공급함수 추정치는 학력과 경력만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만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출 모두를 실효임금 계산시 고려할 경우의 실증분석 결과와 임금탄력성은 <부록 I>에 수록하였다.

<표 III-9> 기혼여성 임금근로자 노동공급함수 ( $\ln(\frac{L}{c})$ ) 추정

변수	OLS	IV = 세전 소득-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교육수준, 경력, 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세전소득-시간당 보육비용추정치, 교육수준, 경력
log(w*)	-0.252** (-9.15)	-0.270** (-9.77)	-0.657** (-10.12)	-0.264** (-9.55)
고3 이하 자녀 수	-0.030 (-0.72)	-0.032 (-0.77)	-0.052 (-1.16)	-0.031 (-0.75)
만 0~2세 영아 유무	0.510** (5.92)	0.510** (5.92)	0.511** (5.49)	0.510** (5.92)
만 3~5세 유아 유무	0.410** (6.25)	0.408** (6.22)	0.375** (5.27)	0.3409** (6.24)
연령	-0.003 (-0.72)	-0.003 (-0.76)	-0.005 (-1.03)	-0.003 (-0.75)
$\lambda_p$	-4.852** (-14.16)	-4.837** (-14.11)	-4.535** (-12.15)	-4.842** (-14.13)
상수	-4.862** (-14.12)	-4.711** (-13.66)	-1.477* (-2.39)	-4.765** (-13.82)

주 : \*\*는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 \*는 5% 유의수준에 유의함.

#### 4) 임금탄력성

위의 모형으로부터의 비보상임금탄력성과 보상임금탄력성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세전소득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측정오차의 문제로 인해 OLS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탄력성을 얻게 되며 대체탄력성의 크기가 매우 작은 양(+) 값으로 나타난다.

도구변수로 교육수준, 경력, 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를 고려하면 탄력성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보상임금탄력성은 0.23~0.24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임금근로자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0.26~0.30의 값을 보이고 있어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경우보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상임금

탄력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선택을 고려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탄력성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기혼여성 임금탄력성 추정

모 형		OLS	IV = 세전 소득-시간 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교육수준, 경력, 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세전소득-시간당 보육비용추정치, 교육수준, 경력
표본선택 무시 (전체 표본)	비보상	-0.26	-0.26	-0.11	-0.26
	보상	-0.08	0.11	0.24	0.11
표본선택 고려 (전체 표본)	비보상	-0.32	-0.26	-0.13	-0.32
	보상	0.038	0.11	0.23	0.11
표본선택 고려 (임금근로자)	비보상	-0.26	-0.25	-0.12	-0.25
	보상	0.09	0.12	0.26	0.12

한편 약간의 설명변수 조정을 통해 Lee(2004)의 방법론을 이용하고 여기에 노동시장참가의 표본선택 편의를 교정하여 구한 기혼남성의 보상임금탄력성은 0.35로 나타났다.

만5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여성의 보상임금탄력성은 더 낮아진다.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만5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비용은 연령이 높은 아동에 비해 기혼여성의 실효임금에 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5세 이하의 자녀를 1명 이상 둔 기혼여성의 경우(표본수는 182명)만을 대상으로 탄력성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보다 교육수준

과 경력, 시간당 자녀보육 추정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경우 보상 임금탄력성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세후임금에 만5세 이하 자녀보육비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11>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 임금탄력성 추정

모형		OLS	IV = 세전 소득-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교육수준, 경력, 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세전소득-시간당 보육비용추정치, 교육수준, 경력
표본선택무시 (전체표본)	비보상	-0.23	-0.25	-0.05	-0.24
	보상	0.12	0.11	0.27	0.11
표본선택고려 (전체표본)	비보상	-0.21	-0.23	-0.008	-0.24
	보상	0.14	0.12	0.31	0.13

이처럼 기혼여성의 보상임금탄력성은 양(+)<sup>1)</sup>의 값을 갖는 반면 비보상임금탄력성이 작은 값이지만 음(-)<sup>2)</sup>의 값을 갖는 것은 대체 효과에 비해 소득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변하여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을 더 선호하는 대체효과보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여가를 늘리려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의 크기와 동일하게 혹은 약간 더 크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상당히 큰 소득효과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는 남편의 소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김현숙·원종학(2004) 참조).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은 현저

하게 노동시장에 덜 참가한다. 위와 같은 경향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혼여성의 실효소득이 증가할 경우 기혼여성은 노동시장에 덜 참가하거나 혹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보기 위해 노동시장에 잔존하기는 하지만 근로시간을 감소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여성들에 비해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임금에 소득효과가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 2. 여성노동공급과 자녀세액공제제도

여성노동공급과 소득세를 연계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자녀세액공제제도이다. 물론 소득세체계 내의 소수자 공제나 자녀의 보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서도 여성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형식으로 제공되는 자녀세액공제제도가 여성노동공급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출산율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제1절의 여성노동공급함수에서 기혼여성의 예산제약식인  $c_i = w_i^* h_i + v_i = [(1 - t_{w_i})w_i - p_{cc_i}]h_i + v_i$ 에서  $p_{cc_i}$ 를 감소시켜 기혼여성의 실효임금을 높임으로써 노동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정한 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만 한정하여 제공하는 등의 형태를 통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녀세액공제제도가 여성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몇 개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Ribar(1990, 1992)와 Averett et al.(1997), Michalopoulos et al.(1992)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공

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결과는 다소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비보상임금탄력성도 양(+)의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Averett et al.(1997)을 살펴보면 모형의 설정에 따라 임금탄력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III-12> 미국의 기혼여성 임금탄력성 추정

모형의 설정	비보상 임금탄력성	보상임금탄력성	소득탄력성
토빗(Tobit)	1.29	1.33	-0.05
도구변수법	1.05	1.04	0.01
이중오차법	1.63	1.59	0.04

자료 : Averett et al(1997)

모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보상임금탄력성과 보상임금탄력성의 차이는 거의 없고 소득탄력성마저 양(+)의 작은 값을 보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탄력성하에 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Kumar(2005)는 PSID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고려한 기혼여성의 보상임금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0.63의 수치를 얻었고 소득탄력성은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0.13~-0.22로 나타나 본 연구의 비보상임금탄력성 수치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제도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일하는 부모에게 자녀

의 양육과 관련한 비용을 납세자의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이다. 이 때 일하는 부모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 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기준하여 구분하는가, 환급가능한 제도인가 여부는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나 구체적인 체계에 따라 매우 신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는 나라들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와 자녀세액공제제도(Child Tax Credit 혹은 Child Care Tax Credit)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면서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자녀 수에 따라 다른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는 가구의 소득수준은 자녀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의 소득수준보다 낮아 자녀세액공제제도가 함께 도입될 경우, 기혼여성이 직면하는 예산제약선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소득구간, 개인의 소득면세점 구간, 근로장려세제의 혜택만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등으로 나뉘어 굴절점과 비볼록(non-convex)인 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의 변화에 대한 추정은 비볼록, 비선형의 예산제약선상의 극대화점을 찾는 작업이 된다.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던 영국과 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의 여부, 도입한다면 어떤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 가. 영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

영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중층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2003년에 기존의 다른 제도와 병합하여 확대된 자녀세액공제제도는 기존의 세제 및 급여금(benefit)제도의 몇 가지를 통합하여, 근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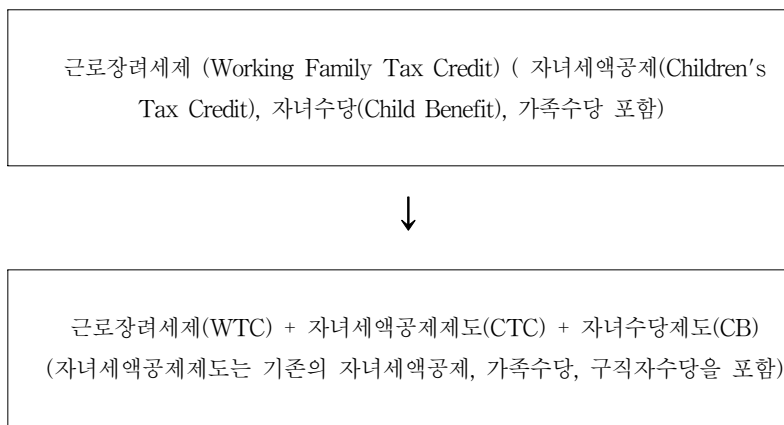
와 관계없이 자녀를 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영국은 2003년 이전에 존재했던 근로가족세액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를 대폭 수정하여 자녀세액공제제도와 근로장려세제로 나누었다. 새로운 자녀세액공제제도에는 2001년에 도입되어 1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약 500만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었던 기존의 자녀세액공제(Children's Tax Credit)도 포함되었다. 또한 부양할 자녀를 둔 약 118만가구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던 자녀수당(Child Allowances)과 가족보험(Family Premium) 또는 구직자수당(Income-Related Jobseeker's allowance, JSA)도 이 광범위한 자녀세액공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부양할 자녀가 있으면서 퇴직연금이나 무능력자급여금 또는 중증장애수당 또는 유족 급여금 또는 질병치료수당을 받는 약 17만가구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던 국민보험급여금(National Insurance Benefits)에 대한 자녀추가급여(Child Additions)는 2003년 4월을 기준으로 더 이상 새로이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단, 자녀수당(Child Benefit)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면서도 가계 소득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원금으로 부양자녀를 둔 700만의 모든 가구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 동 지원제도는 2003년의 세계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주된 자녀 보육자에 대하여 소득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그 수혜자의 연령이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국에 거주하면서 이민자가 아니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부양할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은 등록된 자녀보육자 또는 승인된 보육자로부터의 보육만 포함되고 혈육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가정 내의 보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혈육관계에 있는 자가 자녀보육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근로장려세제(Working Tax Credit, WTC)는 2003년 이전 제도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만 수령할 수 있었던 조건을 삭제하고 일을 하는 가구 중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그림 III-2] 영국의 아동관련 지원제도의 변화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1,665파운드를 기본요건으로 하여, 장애자에게는 연간 2,225파운드를 추가지급하고 편부모에게는 1,640파운드를 지급하며,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연간 680파운드를 추가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 외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과 연령이 50세 이상인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이 있으며 부양자녀의 수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이 존재한다. 그 외 자녀 수에 따른 지원도 존재한다.

자녀세액공제의 공제액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family element) 하는 경우 연간 1,090파운드와 부양자녀 기준으로는(dependent element) 자녀 1인당 1,765파운드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의 출생 당해연도에는 두 배로 증가될 수 있고, 부양자녀기준의 금액은 자녀가

장애자로서 ‘장애자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을 받고 있을 경우 더욱 높아진다. 보통의 장애인 자녀는 부양자녀 기준금액에 2,350파운드가 추가되고, 중증장애인 자녀는 추가된 그 금액에 945파운드가 또 추가된다.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장려세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III-13> 근로장려세제 지원내역(2006~2007년)

지원자격 및 조건	지원액 (파운드/연간)
기본	1,665
장애인	2,225
편부모 가정	1,640
30시간 이상 근무	945
50살 이상의 근로자	
16~29 시간 근로자	1,140
30시간 이상 근로자	1,705
자녀 수 1인	175(주당)
자녀 수 2인 이상	300(주당)

<표 III-14> 영국의 자녀세액공제(2006~2007년)

(단위: 파운드)

자녀세액공제의 구성요소	연간 세액공제액
가구기준	1,090
1살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요소(가구요소에 추가)	545
부양자녀요소(1인당)	1,765
장애자녀요소(부양자녀요소에 추가)	2,350
중증장애자녀요소(부양자녀요소 및 장애자녀요소에 추가)	945

Ⅲ. 여성노동공급과 소득세 103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연간총소득(부부합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자녀가 1살 미만이거나 장애를 갖고 있다면 공제액이 커진다.

<표 III-15> 가구소득에 따른 영국의 자녀세액공제 금액

(단위: 파운드)

연간총소득 (부부합산)	1 자녀	2 자녀	3 자녀
5,000	2,240	3,930	5,625
10,000	2,240	3,930	5,625
15,000	1,835	3,930	5,625
20,000	545	1,680	3,375
25,000	545	545	1,525
30,000	545	545	545
40,000	545	545	545
50,000	545	545	545
60,00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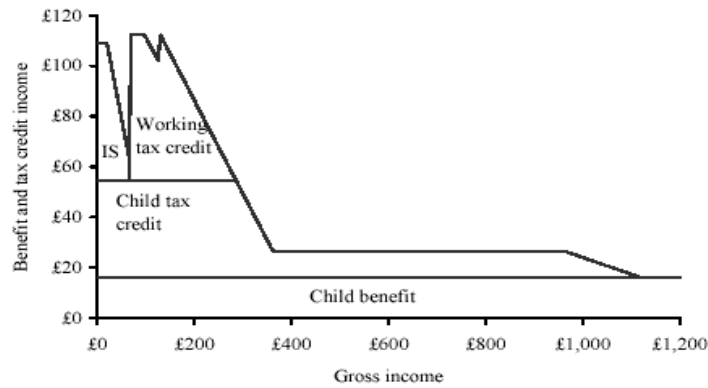
이외에 자녀수당은 16세 이하의 자녀 중 첫째 자녀는 주당 17.45파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상의 자녀는 1인당 11.70 파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①부모가 일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WTC)에서 자녀 수에 따라 추가되는 지원 ②부모의 노동시간이나 노동시장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제공되는 자녀세액공제(CTC) ③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가구에 소득이나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자녀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를 둔 가구가 받게 되는 자녀와 관련된 정부 지원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 3] 영국의 세액공제제도(2003년 4월 이후)하의 자녀 1명을 둔 가구를 위한 지원

(단위: 주당 파운드)



- 주 : 1. 새로운 세액공제제도는 연간 기준제도이나 위 그래프는 주간 제도로 취급하여 그려짐.  
 2. 대상 가구가 최소임금(주당 67.20파운드)을 받으면서 16시간 근로하고 주당 126파운드에 해당하는 30시간 보편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함.  
 3. 위 그래프에 자녀보육세액공제, 주택급여금, 지방세급여금은 표시되지 않았으며, 자녀 출생 후 첫 해에 지급되는 추가지원은 무시됨.
- 자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The New Tax Credits, Briefing Note No. 35, 2003, <http://www.ifs.org.uk/taxben/bn35.pdf>.

#### 나. 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

미국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와 근로장려세제(EITC) 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세액공제제도이다.

자녀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일정한 한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만 받을 수 있다. 2004년 현재, 부부합산 신고한 기혼자는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11만달러 미만, 미혼의 가구

주 또는 미망인은 조정총소득 7만 5천달러 미만, 부부별도 신고한 기혼자는 조정총소득 5만 5천달러 미만까지이다.

자녀세액공제액은 적격한 자녀 1인당 최대 1천달러이다. 여기서 적격한 자녀란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녀를 말한다. 첫째, 개인소득세 신고서(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m 1040)에 등재된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둘째, 과세연도말 현재 17세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 납세자의 친자녀, 입양자녀, 의붓자녀와 이상의 자녀들의 부양가족(예를 들면 손주)이거나, 납세자가 친자녀처럼 돌보는 납세자의 형제, 자매, 의붓형제 및 자매, 이상의 자들의 부양가족(예를 들면 조카), 또는 수양자녀(권한 있는 지정기관이 지정한 자녀)이어야 한다. 넷째, 미국 시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resident alien)이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액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자녀세액공제 대상금액(적격한 자녀의 수 × 1천달러)이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포함한 개인소득세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sup>13)</sup> 금액을 제한 금액, 즉, 개인소득세 규모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개인소득세 규모를 초과하는 세액공제를 받고 동시에 ‘추가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세 세액 규모보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액이 작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액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001년 이전까지는 세부담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1년 법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액이 자녀 1인당 최대 500달러에서 1천달러로 인상되었고 세부담이 없는 가구

13) 각종 세액공제에는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자녀및부양가족부양세액공제(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노인및장애자세액공제(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교육세액공제(education credits), 퇴직저축부담금세액공제(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가 포함됨.

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2004년 현재, 자녀세액공제제도에 있어서 환급은 추가적 자녀세액공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추가적 자녀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개인소득세 세액공제액이 세액 규모 이상이어서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자녀세액공제 대상금액’이 ‘개인소득세 세액 규모를 초과하는 각종 세액공제액’보다 크고 연간 근로소득 총액이 10,750달러를 넘을 경우 추가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자녀의 수가 셋 미만이라면 ‘자녀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세액초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과 ‘10,750달러를 넘는 근로소득의 15%’ 중 적은 금액이 추가적 자녀세액공제액이 된다. 자녀의 수가 셋 이상일 경우는 ‘10,750달러를 넘는 근로소득의 15%’가 ‘자녀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세액초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과 같거나 크다면 ‘자녀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세액초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이 초과자녀세액공제액이 된다. 그리고 자녀의 수가 셋 이상이면서 ‘10,750달러를 넘는 근로소득의 15%’가 ‘자녀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세액초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보다 적다면 ‘10,750달러를 넘는 근로소득의 15%’와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 - (근로소득보전세제 + 사회보험 혜택)’ 중 더 큰 금액을 초과 자녀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이처럼 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녀세액공제(CTC)와 추가 자녀세액공제(ACTC) 두 가지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이며 부모가 일하는 조건하에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제공되고 있다.

<표 III-16> 미국의 자녀세액공제 내역

세액공제 내역	소득기준	세액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 (CTC)	맞벌이 11만달러 미만 미혼 및 미망인 7만 5천달러 미만 부부별산 5만 5천달러 미만	소득세<자녀세액공제 : 1,000달러- 소득세 소득세>자녀세액공제 : 1인당 1,000달러
추가자녀세액공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가구소득이 10,750달러 이상의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자녀 이하 : <math>\min(\text{자녀세액공제-세액초과 세액공제액}, 10,750\text{달러 초과분의 } 15\%)</math></li> <li>○ 3자녀 이상이면서 자녀세액공제-세액초과 세액공제액 &gt; 10,750달러 초과분의 15% : 자녀세액공제-세액초과 세액공제액</li> <li>○ 3자녀 이상이면서 자녀세액공제-세액초과 세액공제액 &lt; 10,750달러 초과분의 15% : <math>\max(10,750\text{달러 초과분의 } 15\%, \text{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 - \text{근로소득보전세제} - \text{사회보험 혜택})</math></li> </ul>

주: 2001년 이후 환급가능한 제도로 전환

<표 III-17>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대비 혹은 세액공제 대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세액공제액 중 자녀세액공제의 비중은 50%를 초과하며, 소득세 내에서의 비중은 과세가능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자녀세액공제와 연계하여 지역별로 다른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III-18>과 같다.

&lt;표 III-17&gt; 미국의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현황(2002년)

(단위: 건, 천달러)

	세액공제 전 소득세액		세액공제 총액		자녀세액공제		C/A	C/B
	신고건수	금액 (A)	신고건수	금액(B)	신고건수	금액(C)		
총계	102,233,722	836,842,718	40,614,049	39,862,411	25,939,801	21,520,271	0.03	0.54
조정안된 총소득	6,362	126,812	3,505	2,530	3,309	2,073	0.02	0.82
1천~5천달러 미만	1,043,946	86,032	66,586	1,988	967	146	0.00	0.07
5천~1만달러 미만	4,900,184	920,171	973,630	88,808	3,002	173	0.00	0.00
1만~1만5천달러 미만	7,368,855	3,360,944	1,953,420	420,240	505,421	65,598	0.02	0.16
1만5천~2만달러 미만	9,597,592	7,533,723	3,591,100	1,296,278	1,806,393	568,134	0.08	0.44
2만~2만5천달러 미만	9,398,913	11,595,051	4,368,212	2,521,266	2,568,356	1,217,906	0.11	0.48
2만5천~3만달러 미만	8,335,821	15,081,338	3,412,145	2,752,051	2,250,375	1,451,304	0.10	0.53
3만~4만달러 미만	13,771,581	37,348,222	5,486,696	4,693,512	3,919,474	3,174,981	0.09	0.68
4만~5만달러 미만	10,474,982	42,646,938	4,693,277	4,532,921	3,325,948	3,201,938	0.08	0.71
5만~7만5천달러 미만	17,337,657	110,612,387	7,565,612	8,794,532	6,142,106	6,449,137	0.06	0.73
7만5천~10만달러 미만	9,232,101	99,069,914	4,601,401	5,414,769	3,631,612	3,841,146	0.04	0.71
10만~20만달러 미만	8,413,648	178,213,646	3,014,331	3,073,196	1,782,839	1,547,734	0.01	0.50
20만~50만달러 미만	1,906,901	126,492,563	631,464	1,727,991	-	-	-	-
50만~100만달러 미만	336,402	64,443,533	155,422	1,072,855	-	-	-	-
100만~150만달러 미만	78,032	28,084,517	41,692	605,279	-	-	-	-
150만~200만달러 미만	31,280	16,257,452	17,893	366,642	-	-	-	-
200만~500만달러 미만	44,158	39,731,097	26,993	1,038,953	-	-	-	-
500만~1,000만달러 미만	10,012	20,521,351	6,761	479,322	-	-	-	-
1,000만달러 이상	5,296	34,717,028	3,909	979,279	-	-	-	-
과세가능한 납세신고	90,963,779	829,310,588	29,284,105	32,330,281	18,108,308	17,199,077	0.02	0.53
과세불가능한 납세신고	11,329,943	7,532,130	11,329,943	7,532,130	7,831,493	4,321,194	0.57	0.57

자료: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Fall 2004, Publication 1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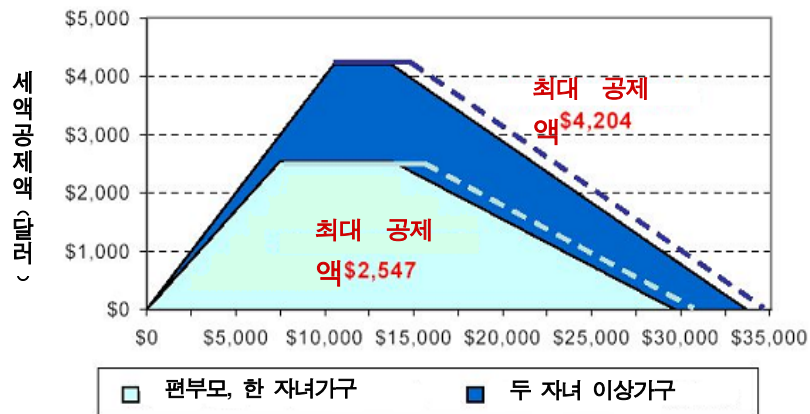
<표 Ⅲ-18> 미국의 주정부 단위의 자녀세액공제 내역

주단위의 세액공제	지역	제공내역
연방정부와 연계된 자녀 세액공제 제공	27개주	인정된 보육시설 이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LA는 25달러; 뉴욕, 미네소타, 뉴잉글랜드, 오하이오, 오레곤은 1,584달러
환급가능한 자녀세액공제	7개주 : 뉴욕,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오레곤 등	
근로장려세제	오레곤	연방정부의 부양가족세액공제와 연계
자녀 키우는 부모나 만1세 이하 자녀부양자에 대한 세액공제	미네소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과 세액공제 연계	메인, 알칸소	

자녀세액공제제도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일을 하여 얻는 소득에 정부가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녀 수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혜택을 달리하여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세액공제(환급가능)도 증가하는 점증구간, 세액공제 규모가 고정된 평탄구간,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액공제가 감소하는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액공제 구간을 소득수준별, 자녀수별, 부부 혹은 편부모 여부별로 살펴보면 [그림 Ⅲ-4]와 같다.

자녀가 한 명인 편부모의 최대 세액공제액은 2,547달러이고, 두 자녀 이상인 가구의 최대 세액공제액은 4,204달러이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점감구간의 세액공제 규모가 더 크다.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수준을 자녀 수와 연동함에 따라 일하는 가구에게 근로의욕을 제공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그림 III- 4] 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 : 부부의 경우 점감구간 공제액이 편부모보다 크며 이는 점선으로 표시

한편 미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내용은 <표 III-19>와 같다.

그 외에 최저생활보장제도로서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프로그램은 한 자녀 이상의 가구에게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생계를 위한 최소수준의 소득과 실제 가구소득 간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또한 자녀수에 연동하여 제공되므로 자녀와 관련된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미국의 자녀관련 세액공제제도로는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와 가구소득에 따라 제공하는 자녀세액공제제도와 그보다 낮은 수준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 수에 의존하여 제공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며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려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참조하여 기혼여성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나라에

III. 여성노동공급과 소득세 111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를 가정해 본다.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설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를 추정해본다.

<표 III-19> 미국의 지방정부 근로장려세제 현황(2003년)

주 정부	연방정부 근로소득보전에 대한 비율
	환급가능 세액공제
콜로라도	10%
콜롬비아	25%
인디애나	6%
캔자스	15%
메릴랜드 <sup>1)</sup>	20%
메사추세츠	15%
미네소타	Varies with earnings; average 33%
뉴저지	20% (if income < \$20,000)
뉴욕	30%
오클라호마	5%
버몬트	32%
	4% (1인 자녀 )
위스콘신	14 % (2인 자녀 )
	43 (3인 자녀 이상)
	환급불가능한 세액공제
일리노이	5% (expires after 2002 unless extended by legislature)
아이오와	6.5%
메인	5%
오레곤	5%
로드아일랜드	25%

주 : 1) 메릴랜드의 경우 주정부 세액공제의 50% 수준에서 환급불가능한 근로장려세제를 제공하고 환급가능공제와 환급불가능한 공제 중 선택할 수 있음.

## IV. 정책대안 및 기대효과

### 1. 정책기본방향과 고려사항

#### 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노동공급 촉진

미국과 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없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는 가구 중 일정 소득 미만의 가구에 자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때 부모 중 어머니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없다. 영국의 경우에는 2003년 세계개혁 이후로 부모의 근로와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수혜대상자의 조건이 달라지며 이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촉진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전제조건으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세 체계에 대해 논하고자 하므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자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도록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

#### 나. 맞벌이와 홀벌이 가구의 보육비용의 차이에 대한 보전

##### 1) 가구의 보육비 지출 현황<sup>14)</sup>

2004년 보육실태조사자료에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특성에

---

14) 『표준보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2005)에서 일부 발췌.

따른 보육비 지출 및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기타 학원 등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실태 조사상의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 간의 보육료의 차이를 분석해본다. 보육실태조사자료상에는 그 외의 다양한 정보도 존재하므로 몇 가지 유형에 따라 가구의 보육비 부담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구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이 보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보육비 지출수준은 다음 <표 IV-1>에 나타나 있다.

<표 IV-1> 소득계층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단위: 천원, %)

	2002			2004		
	도수	백분율	평균값	도수	백분율	평균값
100만원 이하	410	12.50	93.50	413	10.36	96.18
100만~200만원 이하	1,379	42.06	126.62	1,347	33.78	148.81
200만~300만원 이하	895	27.29	185.88	1,154	28.94	194.74
300만~500만원 이하	489	14.91	271.81	850	21.31	290.37
500만원 이상	106	3.23	367.65	224	5.62	365.86

둘째, 자녀 수별 평균보육 및 교육비를 살펴보면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보육 및 교육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2명까지는 1인당 보육 및 교육비가 2002년에는 약 10만원, 2004년에는 약 13만원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보육 및 교육비가 체감하는 현상을 보였다. 자녀 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가 거의 9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약 6~7%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는 1%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분석을 통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lt;표 IV-2&gt; 자녀 수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단위: 천원, %)

	2002			2004		
	도수	백분율	평균값	도수	백분율	평균값
1명	1,441	43.96	106.35	1,825	45.76	129.05
2명	1,618	49.36	212.76	1,914	47.99	252.30
3명	208	6.35	241.00	236	5.92	301.90
4명	10	0.31	342.90	13	0.33	307.54
5명	1	0.03	148.00	-	-	-

셋째, 거주지역별 분포는 2002년에는 대도시가 약 46%로 가장 컸으나 2004년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며, 읍면의 경우 2002년보다 2004년에 비중이 상당히 증가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 평균보육 및 교육료 부담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보육 및 교육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중소도시의 경우 보육 및 교육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의 경우는 보육 및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lt;표 IV-3&gt; 지역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단위: 천원, %)

	2002			2004		
	도수	백분율	평균값	도수	백분율	평균값
대도시	1,523	46.45	175.40	1,516	38.01	205.10
중소도시	1,188	36.23	178.35	1,530	38.37	214.27
읍면	568	17.32	127.07	942	23.62	164.45

넷째, 모(母)의 취업 유무별로는 모의 취업으로 모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보육 및 교육비 지출이 없는 경우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 모(母)가 취업한 경우의 보육 및 교육비 평균값은 약 25만원 이고, 모(母)가 무직인 경우의 보육 및 교육비는 평균적으로 약 17만원(2004년 기준)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母)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2년에는 약 30%에서 2004년에는 약 35%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평균 보육 및 교육비도 2002년 대비 2004년에 상당히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V-4> 모(母)의 취업 여부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단위: 천원, %)

	2002			2004		
	도수	백분율	평균값	도수	백분율	평균값
모취업 무	2,251	68.65	145.83	2,584	64.79	169.87
모취업 유	1,028	31.35	216.86	1,404	35.21	252.65

마지막으로 연령별 보육 및 교육비를 살펴보면 만3~5세까지의 경우가 보육 및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고 6세 이상이나 3세 미만의 경우는 보육 및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구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0~2세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균보육 및 교육비가 낮은 것이며, 6세 이상의 경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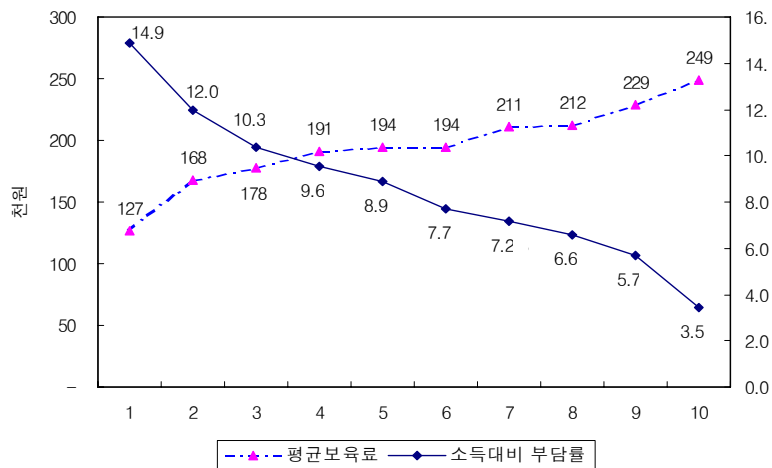
<표 IV-5> 연령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단위: 천원, %)

	2002			2004		
	도수	백분율	평균값	도수	백분율	평균값
0세	329	6.15	35.69	374	5.83	49.99
1세	388	7.26	46.18	391	6.10	64.08
2세	413	7.73	67.53	432	6.74	98.02
3~5세	1,494	27.95	142.02	1,476	23.02	163.12
6세 이상	2,722	50.92	102.54	3,739	58.31	124.40

2) 부모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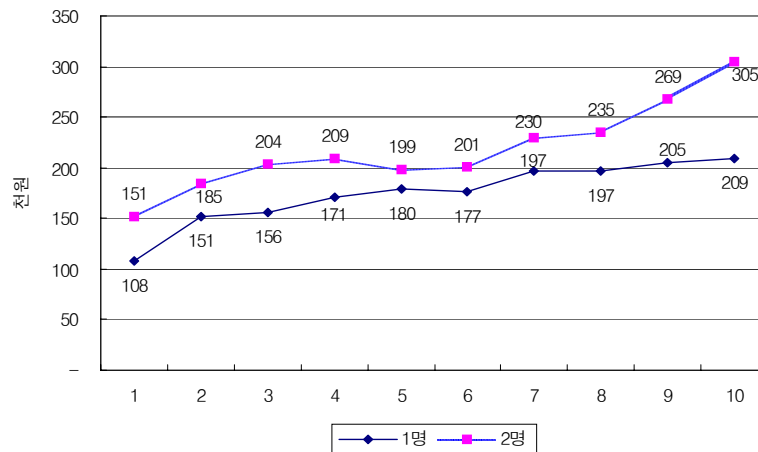
보육실태조사에서는 다양한 보육 및 유사보육시설의 이용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중 보육시설, 유치원, 만일제 이상 학원을 일반적인 보육시설로 구분하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 부담을 분석하였다. 가구의 보육 및 교육비 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계가 보육 및 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커지지만 소득 대비 부담비율은 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의 경우 1분위는 보육 및 교육비를 13만원 정도 부담하지만 10분위는 약 2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에 보육 및 교육비 수준과는 반대로 소득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1분위는 소득 대비 15% 이상을 보육 및 교육비로 부담하지만 10분위는 약 4% 이하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 대비 보육 및 교육비 부담비율이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1] 평균 보육 및 교육료 및 소득대비 부담률 추이(2004년)



자녀 수별 보육 및 교육비의 분포는 자녀가 1명일 때보다 2명 일 때가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약 1.5배 정도 보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약 0.5배 정도의 추가적인 보육 및 교육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 수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IV-2] 자녀 수별 보육 및 교육료 분포(기관-지출가구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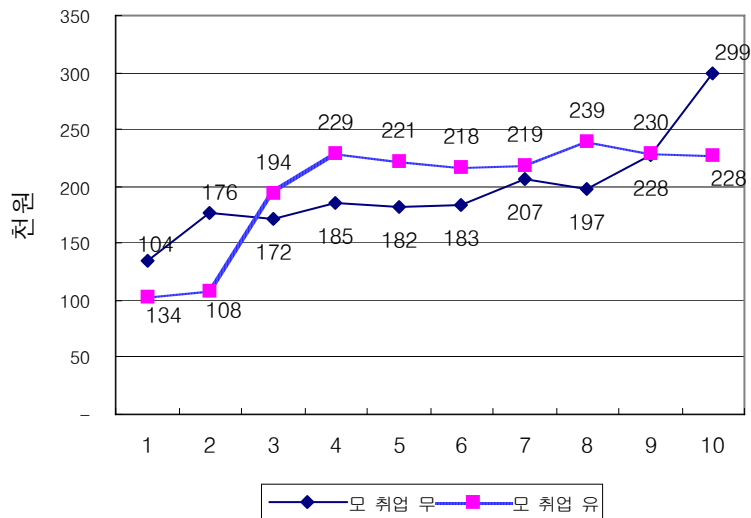


모(母)의 취업 여부별로 살펴보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4~7분위의 경우에만 모(母)가 취업한 경우에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2분위는 2004년의 경우 모(母)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한 경우보다 더 많은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위의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높다고 하여 중산층에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그 차이가 5만원 이하

이므로 해당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보육 및 교육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형태를 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없으므로 소득공제방식이 부적합하지만 중산 계층에 한정된 현상이므로 소득공제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상을 여성취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세액공제의 형태를 띠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만약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세액공제 형태를 고려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고 기혼여성의 취업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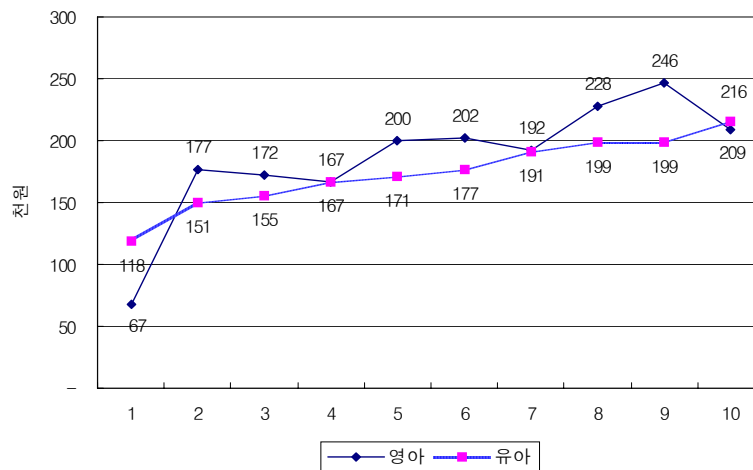
[그림 IV-3] 모(母)의 취업 유무별 보육 및 교육료 분포  
(기관-지출가구 2004년)



연령별로는 1~2세의 경우에는 보육 및 교육료 수준이 약간 높고 3~5세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만0세의 경우는 부모가 거의 집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빈도

수가 매우 적어 분석하기 어려우며, 만1세의 경우에도 편차가 심한데, 이는 빈도 수가 작아서 생기는 현상으로 분석에 어려움 존재한다. 3~5세의 경우는 보육 및 교육료의 수준이 연령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위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4] 영·유아별 부담 분포(기관-지출가구 2004년)



### 3) 정책시사점

2004년 보육실태조사의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보육비 지출수준이나 지역별 보육비의 편차, 연령별 보육비 차이 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표성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적어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육비 지출에 대한 보전이 소득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매달 약 5만원의 보육비가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도 활성화할 수 있고 필요경비인 보육비용에 대한 보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자녀 수에 따른 보육비 지출이 다르므로 자녀 수에 따라 서로 다른 세액공제액을 설정하는 문제 등은 검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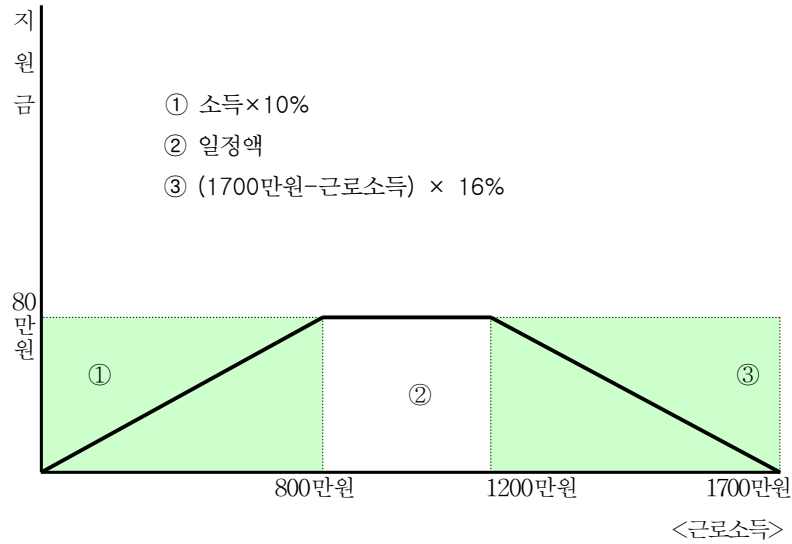
#### 다. 근로소득보전세제와의 연계 혹은 대체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2008년부터 연봉 1,700만원(2007년 소득 기준)이 안 되는 근로자 가구에 최대 연 80만원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장려세제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소득 기준 외에 출산율정책과 연계하였다. 따라서 아동 수 기준, 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총소득 기준, 소득과약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산기준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 수급대상을 결정하였다. 또한 시행 초기단계는 예산을 고려하여 자녀 2인 이상인 가구를 수급대상으로 한정하였고 소득과약 등의 문제로 인해 임금근로자가구에 국한하기로 하였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산정하여 대상을 결정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라도 사업소득은 EITC 급여액 기준에는 사용하지 않고 총소득에 포함하여 EITC 배제기준 해당 여부에만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사업소득의 포착률이 낮은 현 단계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의 형태는 [그림 III-5]에 나타난 미국의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을 두는 방식을 채택한다. 지원방식은 [그림 IV-5]와 같다.

[그림 IV-5] 근로장려세제 지급체계



2008년에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는 향후 자녀 1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나아가 사업자에게 확대하며 무자녀가구에게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각 단계마다 소요예산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표 IV-6> 연령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항목	일정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 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2007~2009)	2단계 (2010~2012)	3단계 (2013~)	4단계
적용 확대 내용		자녀 2인 이상	자녀 1인 이상	자녀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용 가구		31만	90만	150만	360만
연 소요예산		1,500억원	4,000억원	1조원	2조 5,000억원

기본대상 : 연소득 1,700만원 미만으로 무주택이고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위처럼 계획된 근로장려세제의 1차적인 대상이 자녀가 2인 이상인 근로자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하게 결정하고 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한다는 목적을 결합하여 기혼여성의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소득수준이 면세점 이상인 가구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 2. 정책대안

### 가. 정책대안의 선정기준

여성노동공급 지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본절에서는 조세지원(예 : 세액공제)을 통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는 미성년자녀의 유무,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유무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는 육아·보육 문제가 여성노동공급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 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호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 본인이 노동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3자 또는 제3의 기관에서 육아·보육을 대신해줄 필요가 있다. 이때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의 공급대가로 수취하는 세후소득에 따라 노동공급이 영향을 받는다. 유자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보육비의 크기도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제Ⅲ장에서 여성노동공급함수를 추정된 결과에서 보았듯이 미성년 유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미성년 자녀, 특히 그 가운데 영·유아의 유무와 세후순임금률 등이 통계적·경제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여성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노동공급에 따른 순소득을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유인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유자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첫째, 여성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 또는 정책이나 정률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을 사용한다.

둘째, 여성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여성노동공급의 확대에 있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급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동일한 효과가 예상된다면 가능한 한 비용절약적인 방안을 우선시한다.

상기의 전제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 조건으로부터 한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앞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보육비·교육비 부담 수준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다면, 비록 고소득층일수록 교육·보육비 부담의 절대수준이 더 크더라도 그것 자체가 고소득층에서는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성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수준을 지닌 계층에는 조세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비용절약 및 효과 극대화 측면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점을 토대로 미성년 유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지원방안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일차적으로는 조세지원의 대상범위를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여성근로자로 한정한다. 논의의 시작점에서는 주된 분석대상이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 국한하였으나 굳이 기혼여성에게만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편모가정의 여성에게도 확대 적용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적용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 5세 이하로 한정하는 것은 정책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두 가지 상충적인 조건을 적절히 조화시켰기 때문이다. 적용대상 아동의 연령을 18세 등으로 하면 적용대상 가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반비용이 크게 확대되는 반면에 취학연령 이후의 아동은 그보다 어린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의 손길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별도의 보육비용이 덜 소요된다. 그러므로 노동공급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후실효임금률에 있어서도 취학연령 이후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료 부담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공급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유아보다 연령이 많은 아동에게까지 조세지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자에 한정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약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제의 소득을 과소 또는 과다보고함으로써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세후임금률을 실제보다 더 높게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약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에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책대안의 제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sup>15)</sup>.

제1안 : (負의 소득세) 세액공제제도

- 근로소득 0~500만원 : 근로소득의 30%를 세액공제
- 근로소득 500만~700만원 : 150만원 정액을 세액공제
- 근로소득 700만~1천만원 : 150만원에서 근로소득 700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세액공제

제2안 : 보조금 지급방안

본인의 근로소득 1천만원 이상, 가구소득이 2,400만~4,800만원 사이인 경우에 대해 60만원 정액을 세액공제(보조금)

제3안 : 근로소득세 세액기준으로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 기준 0~50만원 : 45%를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 기준 50만~125만원 : 세액 50만원 초과분의 70%를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 기준 125만~275만원 : 75만원에서 세액 125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세액공제

---

15) 세액공제 형태의 지원 외에 현재 소득세체계 내에 존재하는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용해보았다.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수손실도 작았고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외국의 제도를 많이 참조하였다.

제1안은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유사한 조세지원제도로써 저소득층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여 조세지원을 집중해주는 방안이다. 근로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세지원의 혜택이 0원이 된다.

제2안은 저소득층보다는 중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 정부로부터 보육비를 지원받는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별도의 보육비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이중지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따라서 홑벌이에 비해 보육비 부담이 평균적으로 월간 5~6만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맞벌이 중소득층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안은 근로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여성노동공급을 활성화하자는 데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지원혜택을 면세점 이상에 국한함으로써 시간제(part-time)보다는 전일제 취업(full-time)을 상대적으로 더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한 방안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은 차이가 나타남)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임금이 매우 낮은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작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왜냐하면 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업취업의 경우에도 연소득이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의 대안들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안은 상기의 대안을 기초로 적용대상의 범위나

방법 등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기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비교·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기대효과

#### 가. 분석의 범위와 방법

정책대안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이원적으로 나누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것과 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것을 적절히 조화시키도록 한다.

일차적으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토대로 노동시장에의 참가 여부와 노동공급시간의 변화효과, 근로소득세 부담 및 조세지원액 등을 추정한다. 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하여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추정하고, 전체 소득세의 세수(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의 세수합)에서 이들 여성들의 기여분 비율 등을 추정하여 제2절에서 제안한 정책대안에 따라 수반되는 세후순조세수입의 변화효과, 즉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한다. 아울러 여성노동공급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소득창출규모도 함께 추정한다.

#### 나. 모의실험을 위한 기본 전제

2004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자영업자 제외)은 모두 1,686명(또는 가구, 배우자 없는 여성 22인 포함)이다. 이 중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는 취업여성은 510명이며, 나머지 1,176명은 무직여성이다.

취업여성의 경우 학력과 연령 등에 따라 평균적인 임금률 수준이 상이하다. 취업여성 510명을 학력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시간당

평균임금률을 추정한 결과 <표 IV-7>의 결과를 얻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평균임금률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표 IV-7> 미성년 유자녀 기혼취업여성의 임금률 분포

(단위: 원/시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평균
무학~중등	-	3,868	4,128	4,119	4,052
고등	5,452	5,358	5,177	-	5,296
대학	7,535	11,820	9,354	-	10,693
대학원	8,654	14,118	23,302	-	17,198
평균	6,564	7,985	6,231	4,119	7,189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률이 관찰되고 있다. 그렇지만 무직가구의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률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직여성의 경우에도 임금률 수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이 학력과 연령을 감안하여 평균임금률을 원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취업여성을 대표하는 표본이 모든 연령대와 모든 학력대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는 해당자를 찾을 수 없어 평균임금률을 가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접연령대 또는 인접학력별 평균임금률 등을 적용하여 아래의 <표 IV-8>과 같이 임금률을 가정하여 모의실험에 사용하였다.

&lt;표 IV-8&gt; 미성년 유자녀 기혼무직여성의 임금률에 대한 가정

(단위: 원/시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평균
무학~중등	3,868	3,868	4,128	4,119	4,052
고등	5,452	5,358	5,177	5,177	5,296
대학	7,535	11,820	9,354	10,693	10,693
대학원	8,654	14,118	23,302	17,198	17,198
평균	6,564	7,985	6,231	4,119	7,189

다만 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무직여성의 임금률을 사용함에 있어 취업근로여성의 평균임금률을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취업여성 과 무직여성의 구분이 무작위성을 가지지 않고 선택(selection)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여성들이 먼저 취업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직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취업여성의 평균임금률보다 낮은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논의는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차등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직여성의 임금률이 최소한 취업여성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가정에서 양자 간에 전혀 아무런 임금률 차이가 없다는 경우까지 복수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논의의 편의상 취업여성의 평균임금률에 대비한 무직여성의 평균임금률 비율을 임금조정요소(wage adjustment factor, 이하 waf로 표기)라고 정의하기로 하자.

그 밖에 모의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금률 외에도 실효보육료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당 보육료에 대해서도 가정이 필요하다.

이미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여 돌보게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보육료율을 곧바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당 보육료 수준을 알 수 없다. 현재 무직자로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여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 가운데 일부에서는 조세지원의 결과로서 새로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시간당 보육료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시간당 보육료는 시장평균가격을 사용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평균 시간당 보육료는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여성근로자 중에서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사람의 시간당 보육료를 평균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4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의 시간당 보육료율 평균은 1,587원으로 추정되었다.

모의실험시에 사용하는 모형은 <표 III-9>에서 교육수준, 경력, 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세진 시간당 임금률과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시간당 보육료를 토대로 하여 모의실험을 시행한다. 모의실험을 위해서는 각 소득구간별로 한계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다양한 예산제약조건에 대한 조합을 작성해야 한다. 2004년 현재의 소득세체계와 정책대안별 한계세율구간 및 한계세율을 정리하여 작성한 표는 <부록 II>에 첨부하였다.

모의실험에 사용하는 모수는 제III장의 회귀분석결과를 사용하여 현재의 조세체계하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여성노동공급 실태를 역으로 추정해보면 실제로 자료에서 관찰된 값과 모의실험 결과치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추정오차로 볼 수 있다.

정책대안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할 경우 실제의 자료 값과의 차이는, 추정오차와 정책효과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추정오차 부분이 아니라 정책효과 부분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모의실험 결과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자료 값이 아니라 현재 조세체계하에서 수행된 모의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편의상 현행 제도를 상정하여 추정한 모의실험 결과를 기준선 추정치라고 부르기로 하자.

#### 다. 기준선 분석결과

모의실험은 다음 조건하에서 실시한다. 모든 여성은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모두 여성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표준공제 60만원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자료가 2004년 자료인 만큼 2004년도 현재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각 소득자별로 소득세 부담을 산출한다.

상기 조건하에서 근로소득세의 면세점과 소득구간 및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수준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차이로 인해 달라지는 만큼, 미성년자 수에 의존하게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선의 경우 실제 자료에서는 전체 여성 1,686명 중 510명이 취업근로자이다. 1인당 평균 연간 노동공급시간은 1,686명을 분모로 하였을 경우 748.9시간, 510명의 취업근로자만을 분모로 하는 경우에는 2,344.5시간이다. 기준선을 토대로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취업근로자 가운데 498명이 노동을 공급하면서 2,439.3시간(498인 평균 기준)의 노동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 자료보다 12인이 적다. 그러나 모의실험 결과에서는 무직여성 1,176인 중에서 47인이 노동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노동공급시간은 650.0시간(47인 평균 기준)으로 추

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전체 여성(1,686명)의 평균 근로시간은 779.8시간으로 추정된다. 실제의 평균 근로시간 748.9시간에 비해서는 30.9시간이 더 많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추정오차에 의해 기대효과가 다소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정책대안에 대한 기대효과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기준선 모의실험 결과를 벤치마크하도록 한다.

라. 정책대안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임금조정요소(waf)가 1인 경우

한국노동패널자료에 기초하여 상기의 세 가지 정책대안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함에 앞서 2004년도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세부담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2004년도 현재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의 가구당 부담 평균은 약 130만 7천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10만 7천원 정도로 추정되어 가구당 평균 소득세 부담액 중 평균적으로 약 8.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아래에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각 정책대안별로 재정소요규모와 총소득 창출효과 등을 추정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표 IV-9> 미성년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세부담 추정결과  
(2004년도 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원, %)	
가구당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부담 평균	1,307,258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107,325
비율	8.21

일단 무직자에 대한 시장선택(market selection)으로 인한 편향(bias)이 없다는 전제, 즉 임금조정요소가 1이라는 조건(waf=1) 하에서 정책대안의 효과를 추정해보았다.

세 가지 대안에 따라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 1>은 근로소득이 0~1천만원인 여성근로자 가운데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국한하여 조세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다. 적용범위의 상한이 1천만원인데 이는 이들 가구의 근로소득세 면세점보다 낮다. 그러므로 이 방안은 일종의 負의 소득세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매우 유사하다.

면세점 이하의 여성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만큼 저소득층이 주된 타겟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자 수는 기준선에서의 취업자 수 545명(=498+47)보다 107명이 많은 652명(=503+14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취업인원 수의 증가율이 무려 19.6%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686가구 전체를 분모로 하였을 때 1인당(또는 1가구당) 여성노동공급시간 평균은 779.79시간에서 853.75시간으로 9.4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취업근로여성 및 근로시간의 증가로 인해 1,686가구 전체의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 평균은 30만 7,731원에서 변동이 없었다. 이는 면세점 이하의 여성들에게만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별도의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부(-)의 소득세 형태로 지급되는 조세지원액은 전체 가구를 분모로 하였을 때 가구당 평균 18만 8,097원이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 부담액에서 조세지원액을 차감하면 순근로소득세 부담액은 11만 6,205원으로 감소한다. 순세부담액의 감소율이 평균적으로 37.8%에 이른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순세부담액이 작아지지만 조세지원을 받는 가구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가구와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추정하였듯이 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가진 여성의 소득세 부담은 가구당 평균 근로·사업소득세

부담액의 8.21%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순세부담 감소율 37.8%와 비중 8.21%를 곱한 비율을 다시 근로·사업소득세의 세수에 곱해 주면 세수순감소액, 즉 <대안 1>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필요재정 소요액을 추정할 수 있다. 만약 근로·사업소득세의 세수규모를 15조원 정도로 가정한다면 이 때 필요한 재정소요규모는 총 4,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만약 근로·소득세의 세수규모를 20조원으로 가정한다면 재정소요규모는 6,200억원 정도에 이른다. 여기서 실제의 2004년도 세수실적을 적용하지 않고 가상적으로 15조원 또는 20조원의 세수규모를 상정하는 이유는 미래 시점에서의 재정소요규모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노동공급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안 1>의 경우 가구당 평균소득은 기준선(578만 5,389원)보다 약 72만원 정도 증가한 650만 3,356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노동공급 확대에 의해 창출되는 소득총규모는 세수를 15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2조 8,732억원(20조원 가정시에는 3조 8,309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필요재정소요규모는 총소득 창출액의 약 16.2% 정도를 차지한다. 총소득창출액이 재정소요의 약 6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안 2>는 중산층을 주된 타깃으로 하여 정액(연간 60만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적용하였을 경우 노동공급자의 수는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히려 노동공급시간은 779.79시간(1686가구 기준)에서 778.61시간으로 1.18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중소득층의 여성노동공급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지만, 모의실험결과에서 보듯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 한계세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노동공급시간의 변화효과는 대체효과 없이 순수하게 소득효과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무차별곡선이 미분가능하게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경우 대체효과의 변화방향은 가격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소득효과의 경우에는 선형적으로는 변화의 방향을

가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미미하나마 소득효과가 음(-)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근로시간의 감소는 곧 소득감소를 의미하므로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은 기준선에 비해 미미하게 감소(-1,123원)한다. 이 때 정책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당 평균 5만 4,104원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부담 감소 및 보조금 지급효과를 포괄한 순세부담액은 25만 2,504원이 된다. 이 경우 재정소요규모는 총 2,460억원(세수 15조원 기준, 20조원 기준시에는 3,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안 3>은 면세점 이상의 여성근로자 중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해주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중소득층을 겨냥한 세액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역시 노동공급자 수는 기준선과 동일한 545인이다. 다만 가구당 평균 노동공급시간이 782.83시간으로 기준선보다 3.04시간 증가(증가율로는 0.4%)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효과는 없지만 기존의 노동공급자 가운데 최소한 일부가 노동공급시간을 조정함에 따라 소폭 노동공급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여성근로자별로 소득효과와 가격효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변화효과가 모든 취업여성근로자에게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노동공급시간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은 30만 3,977원으로 기준선의 경우보다 오히려 평균 3,754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평균적으로는 취업여성근로자의 소득분산이 조금 작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안 3>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686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당 평균 4만 5,733원의 조세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안 3>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순세부담액이 평균 4만 9,487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대안

3>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소요규모를 추정해보면, 세수규모를 15조원 또는 20조원으로 가정할 때 각각 1,980억원 또는 2,64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안 2>와 <대안 3>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각각 2,460억원 및 1,980억원 재원이 소요되지만 정작 노동공급시간 확대 효과는 거의 0에 가깝거나 미소하게나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들 대안의 경우에는 소득창출효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재정만 낭비하고 효과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의 모의실험결과를 토대로 할 때 미성년자녀, 특히 그 가운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공급을 촉진·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면세점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해주는 방안은 노동공급 증진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반면 재정만 크게 부담지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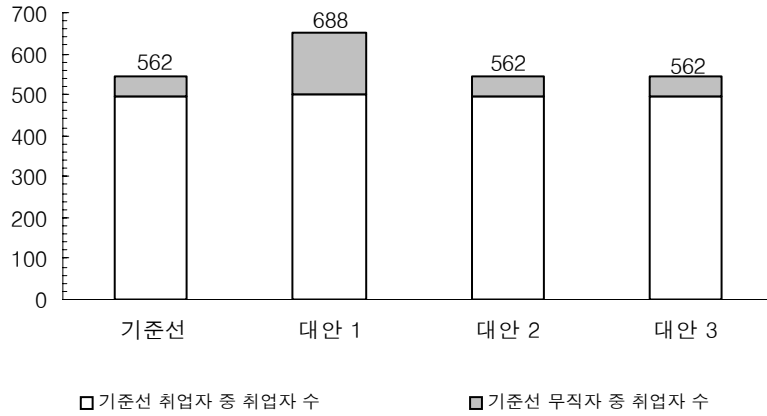
이에 비해 근로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형태의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창출은 물론이고 기존 취업자들 중에서도 일부의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여성노동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負의 소득세 제도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상기의 분석결과는 임금조정요소가 1이라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만약 이 요소가 1보다 작다면, 즉 무직여성의 평균 임금이 취업여성보다 낮다면 상기의 추정결과는 수정이 필요하다. 다음 항에서는 이런 경우에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IV. 정책대안 및 기대효과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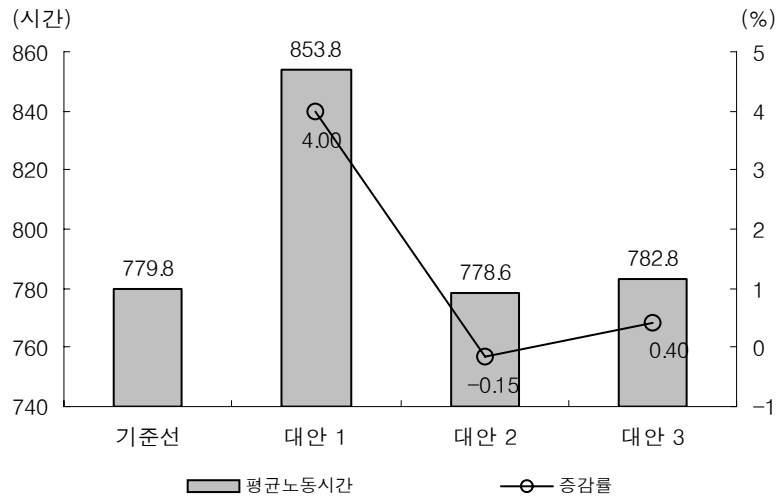
[그림 IV-6] 정책대안별 취업자 수의 변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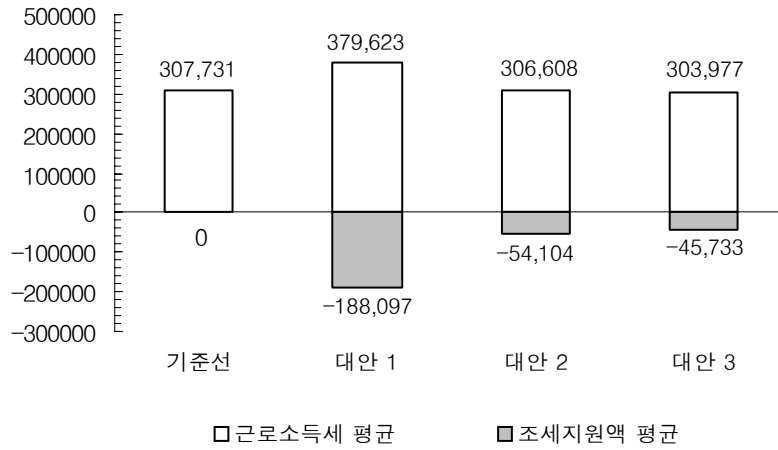
[그림 IV-7] 정책대안별 평균노동시간 변화효과

(단위: 시간/연, %)



[그림 IV-8] 정책대안별 근로소득세 부담액 및 조세지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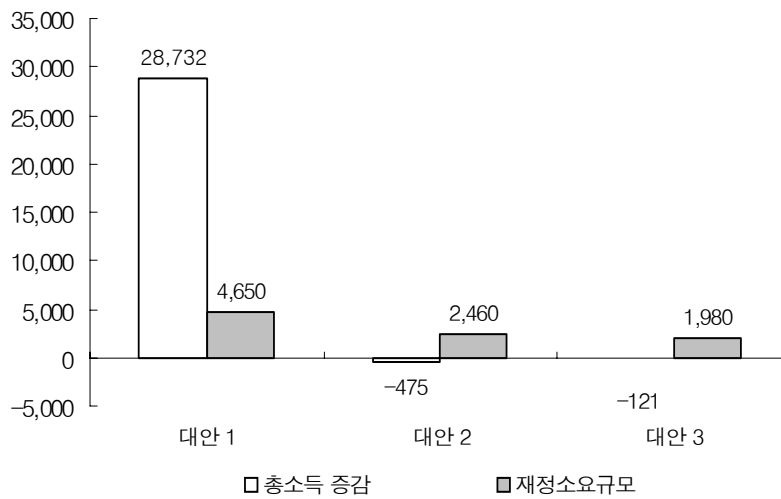
(단위: 원)



[그림 IV-9] 정책대안별 총소득 증감 및 재정소요전망

(근로+사업소득세수 15조원 기준시)

(단위: 억원)



<표 IV-10> 정책대안의 모의실험 결과

(단위: 명, 원, %, 억원)

	기준선	대안 1	대안 2	대안 3
기존 취업자 중 취업인 수	498/510	503510	498/510	498/510
기존 무직자 중 취업인 수	47/1176	149/1176	47/1176	47/1176
평균근로시간(전체 기준)	779.79	853.75	778.61	782.83
(기존 취업자중 취업자 평균근로시간)	2,439.32	2,536.88	2435.55	2449.05
(기존 무직자중 취업자 평균근로시간)	650.03	642.76	650.03	650.03
(취업자 평균근로시간)	2288.47	2135.92	2285.01	2297.38
근로소득세 평균	307,731(A)	379,097	306,608	303,977
조세지원액 평균	0	188,097	54,104	45,733
순세부담 평균(B)	307,731	191,526	252,504	258,244
기준선 대비 순세부담 변화효과(C=B-A)	0	-116,205	-55,227	-49,487
기준선 세부담액 대비 순세부담 변화율(C/A)	0	-37.76%	-19.95%	-16.08%
근로+사업소득세 세수 대비 재정소요 부담 비율	0	3.10%	1.64%	1.32%
세수효과(근로+사업소득 세수 15조원 기준)	-	4,650억원	2,460억원	1,980억원
세수효과(근로+사업소득 세수 20조원 기준)	-	6,200억원	3,280억원	2,640억원
근로시간 증감률	-	9.48%	-0.15%	0.39%
가구당 평균여성근로소득	5,785,389원	6,503,356원	5,773,509원	5,782,358원
총소득 증감(억원 단위) (세수 15조원 기준시)	-	2조 8,732억원	-475억원	-121억원
총소득 증감(억원 단위) (세수 20조원 기준시)	-	3조 8,309억원	-634억원	-162억원

마. 정책대안1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임금조정요소(waf)가 1 이하인 경우

앞의 라항에서 우리는 일정 소득구간 내에서 정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나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 중 과표가 일정 범위 이하인 경우에 국한하여 세액공제를 확대적용해주는 방안은 유자녀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효과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면세점 이하의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負의 소득세제도를 도입하면 여성노동공급 확대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에서는 기대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새로 노동공급을 시작하고자 하는 무직여성의 임금이 취업여성의 평균임금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근로의 유무를 떠나 양자의 생산성이 동질적임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 측면이 있다. 만약 시장에서 일종의 선택과정을 거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여성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에 대한 잠재적인 임금률 수준은 취업여성의 평균적인 임금률 수준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본 항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정하여 앞의 <표 IV-8>에서 보듯이 취업여성의 학력별·연령별 평균임금률에 1보다 작은 일정한 상수, 즉 임금조정요소를 곱한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만 <대안 2와> <대안 3>은 이미 정책대안으로서의 효과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안 1>에 대해서만 임금조정요소를 0.5~1 사이의 범위에서 조정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노동공급확대 효과, 세부담액 및 조세지원액 변화, 재정소요, 소득창출규모 등을 비교한다.

임금조정요소의 값이 작아질수록, 즉 무직여성과 취업여성 간 평균임금률의 상대비가 낮아질수록 기존의 무직자 등에서 노동시장에 신규로 참여하게 되는 인원이 줄어든다. 이는 임금조정요소가 작아질수록 실효임금률이 낮아지고, 따라서 실효임금률이 임계임금률(reservation wage)을 하회하게 되는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동공급을 포기하게 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임금조정요소가 1이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무직여성 중 노동을 공급하는 인원 수가 기준선의 경우보다 102명 더 많은 149명이었으나 임금조정요소가 0.9에서 0.5 정도로 0.1포인트씩 작아질수록 22명, 24명, 19명, 19명, 13명씩 한계탈락자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인당(또는 1가구당) 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은 임금조정계수가 1이었을 경우 853.75시간이었으나 waf가 0.9인 경우에는 848.18시간, 0.5인 경우에는 832.88시간으로 점차 감소한다. 노동공급시간의 감소는 노동공급자의 수 자체가 감소함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 노동공급 상태를 지속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노동공급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탈퇴한 여성들을 제외하고 노동공급이 양(+)의 값을 지니는 여성들만을 기준으로 평균 노동시간을 산출해 보면, waf가 1인 경우에는 642.76시간이었는데, waf가 작아질수록 평균 노동시간은 점점 더 큰 값을 가진다. 이에 따라 waf가 0.5인 경우에는 평균 노동시간이 1,168.99시간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로부터 노동공급 상태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waf가 하락할수록 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근로시간이 짧은 한계노동공급자들이 waf가 작아짐에 따라 노동을 포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에 따라 발생할 뿐이며 실제로 노동공급 상태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노동공급시간을 감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공급을 지속하는 여성들 중에서 노동공급시간이 짧은 사람을 제외하면 평균값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에 waf가 작아질수록 노동공급 지속 여성들도 자신들의 노동공급시간을 감축함으로써 평균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 효과 가운데 전자의 크기가 후자의

크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waf가 작아지는 경우 노동공급을 지속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공급을 증가시켰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들의 경우에도 실효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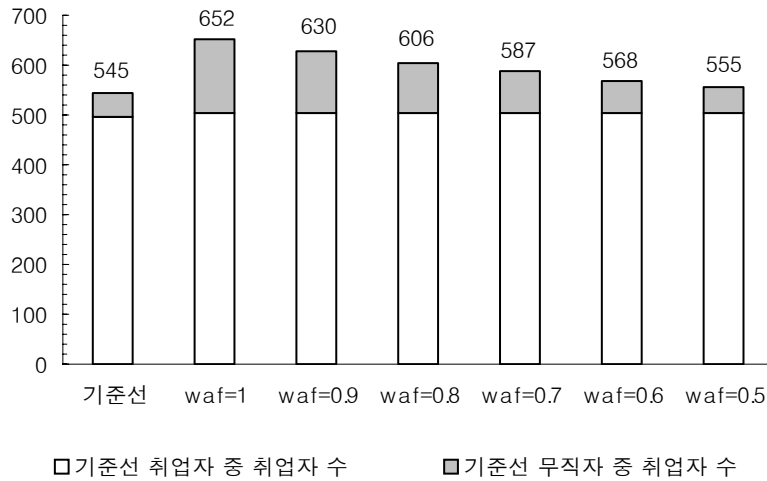
임금조정요소의 값이 1에서 0.5로 대폭 하락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 과세자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들의 노동공급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조정계수가 작아지면서 노동공급시간과 노동공급인원이 모두 감소하지만 이는 모두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면세자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면세자가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

반면에 가구당 조세지원액 평균은 waf=1인 경우에는 17만 6,712원에 이르지만, waf가 작아질수록 그 값도 작아져 waf=0.5일 때에는 15만 1,629원으로 14.2% 감소한다. 이는 <대안 1>의 주된 타겟이 면세자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면세자의 노동공급시간 단축 또는 노동시장에서의 탈퇴는 곧 이들에게 지원되었던 세액공제의 형태를 지녔던 보조금 총액을 절감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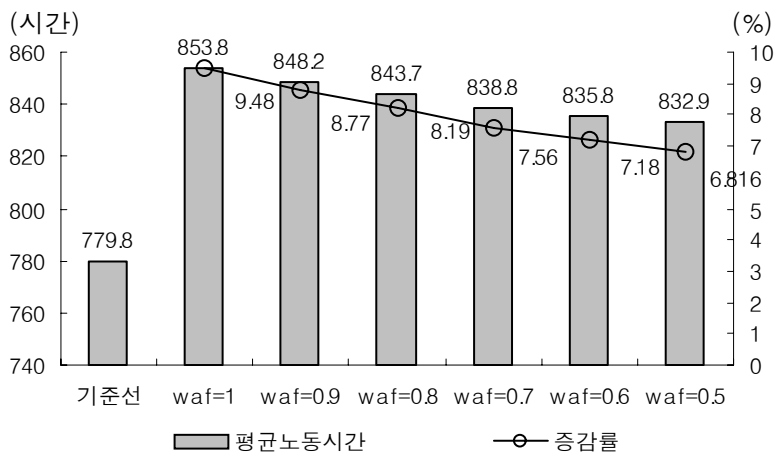
총재정소요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세수합계를 15조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waf=1인 경우에는 4,650억원, waf=0.5인 경우에는 3,240억원으로 추정된다.

노동공급시간은 waf의 크기에 따라 기준선 대비 6.8~9.5%의 증가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선에 비해 노동공급시간이 확대되므로 소득수준도 증가한다. 새로이 창출되는 소득규모를 추정해보면 waf의 값에 따라 1조 6,670억원에서 2조 8,732억원(소득세수 15조원 가정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V-10] 임금조정요소 변화시의 취업자 수의 변화(대안 1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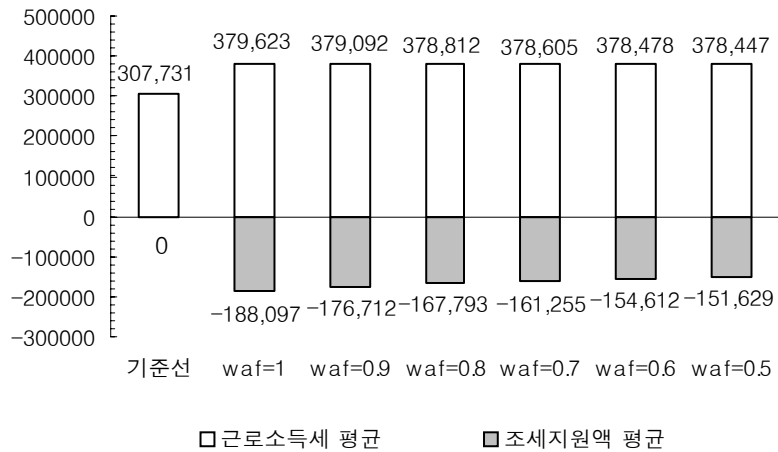


[그림 IV-11] 임금조정요소 변화시의 평균노동시간 변화효과(대안 1 기준)  
(단위: 시간/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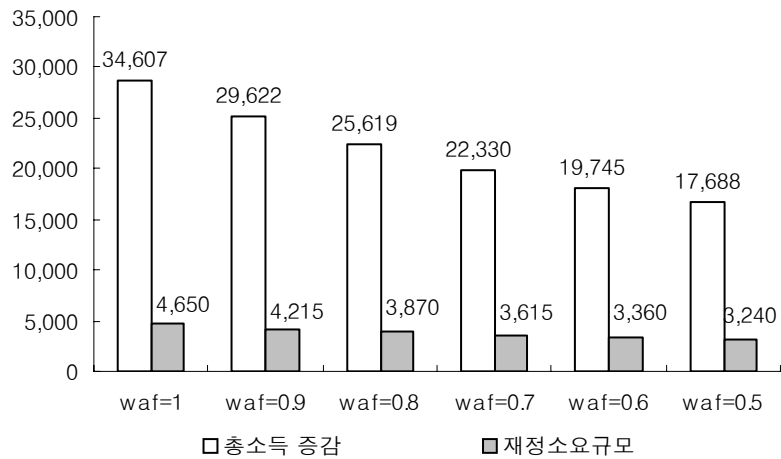
[그림 IV-12] 임금조정요소 변화시 근로소득세 부담액 및 조세지원액 변화(대안 1 기준)

(단위: 원)



[그림 IV-13] 임금조정요소 변화시 총소득 증감 및 재정소요전망 (근로+사업소득세수 15조원 및 대안 1 기준시)

(단위: 억원)



IV. 정책대안 및 기대효과 145

<표 IV-11> 임금조정요소 변화시 정책대안의 모의실험 결과  
(단위: 인, 원, %, 억원)

	기준선	waf=1	waf=0.9	waf=0.8	waf=0.7	waf=0.6	waf=0.5
기준 취업자 중 취업인 수	498,510	503,510	503,510	503,510	503,510	503,510	503,510
기준 무직자 중 취업자 수	47/1176	149/1176	127/1176	103/1176	84/1176	65/1176	52/1176
평균근로시간(진체 기준)	779.79	853.75	848.18	843.65	838.76	835.77	832.88
(기준 취업자중 취업자 평균근로시간)	(2,439.32)	(2,536.88)	(2,536.88)	(2,536.88)	(2,536.88)	(2,536.88)	(2,536.88)
(기준 무직자중 취업자 평균근로시간)	(650.03)	(642.76)	(378.73)	(795.78)	(854.06)	(1008.38)	(1168.99)
(취업자 평균근로시간)	(2288.47)	(2135.92)	(2191.57)	(2275.57)	(2322.03)	(2379.78)	(2422.82)
근로소득세 평균	307,731(A)	379,097	379,092	378,812	378,605	378,478	378,447
조세지원액 평균	0	188,097	176,712	167,793	161,255	154,612	151,629
순세부담 평균(B)	307,731	191,526	202,379	211,019	217,351	223,865	226,818
기준선 대비 순세부담변화효과 (C=B-A)	0	-116,205	-105,352	-96,712	-90,380	-83,866	-80,913
기준선 대비 순세부담 변화율(C/A)	0	-37.76%	-34.24%	-31.43%	-29.37%	-27.25%	-26.29%
근로+사업소득세 세수 대비 조정요소 부담 비율	0	3.10%	2.81%	2.58%	2.41%	2.24%	2.16%
세수효과	-	4,650억원	4,215억원	3,870억원	3,615억원	3,360억원	3,240억원
(근로+사업소득세수 15조원 기준)	-	6,200억원	5,620억원	5,160억원	4,820억원	4,480억원	4,320억원
세수효과	-	9.48%	8.77%	8.19%	7.56%	7.18%	6.81%
(근로시간 증감률)	5,785,389원	6,503,356원	6,415,725	6,345,188	6,283,094	6,237,876	6,201,954
가구당 평균여성근로소득	-	2조 8,732억원	2조 5,225억원	2조 2,402억원	1조 9,918억원	1조 8,108억원	1조 6,670억원
총소득 증감(억 원 단위) (세수 15조원 기준시)	-	3조 8,309억원	3조 3,634억원	2조 9,870억원	2조 6,557억원	2조 4,144억원	2조 2,227억원
총소득 증감(억 원 단위) (세수 20조원 기준시)	-	-	-	-	-	-	-

##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복지수준이 크게 제고되면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된 것이 근본원인이다. 반면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령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빚어지는 문제는 매우 다양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노동력의 부족 문제이다.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출산율을 높여 미래의 인력자원을 늘리는 방법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sup>16)</sup>.

유휴노동력의 구성요소 중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비중이 높은 부분은 여성노동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학력수준이 높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유휴인력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중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면 그만큼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부수적으로 유휴여성노동력 활용을 통해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는 동시에 특히 중·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면서 확대일로에 있는 상대소득분배격차를 축소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여성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과중한 노인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16)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처럼 유휴여성노동력의 활용을 확대하는 문제는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여성, 특히 미성년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공급 문제는 일반적인 남성들의 노동공급 문제와는 차별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닌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육아·보육 문제이다. 미성년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노동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다수가 가족이나 친지, 또는 보육시설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이 경우 별도의 부대비용(보육비)이 수반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들이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세후)임금뿐만 아니라 육아·보육을 위한 보육비도 중요한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노동공급함수의 추정결과를 이용해서는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보육비용을 명시적으로 노동공급함수에 도입하여 유자녀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자료를 수집·통합·가동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성노동공급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법 등을 활용하였다.

여성노동공급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종의 負의 소득세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유사한 내용을 지닌 방안으로서 여성면세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해주는 방안(대안 1)과, 소득수준이 일정한 구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대안 2),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획득하는 여성 중 근로소득세 과표가 일정 수준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해주는 방안(대안 3) 등 모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기대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안 2>와 <대안 3>은 보조금 지급 또는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을 위한 재정소요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당초의 목적과 달리 여성노동공급 확대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비용 비효율적인 방안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Ⅱ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유희인력이 가장 많은 부분은 전문대졸 이상의 25~49세 기혼여성 집단이다. 이 그룹에 속하는 기혼여성들에게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보전을 자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수행할 경우 여성노동공급의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된 노동공급함수를 이용할 경우,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유인하는 데에는 약 60여만원에서 최대 75만원을 보전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는 큰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가상실험의 결과가 고학력의 중간소득층의 기혼여성에게 세액공제제도가 효력이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위의 가상실험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무차별 곡선의 형태와 예산제약식에 따라 도출된 것인바, 보육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기혼여성의 예산제약식을 유의하게 넓혀 줄 수 있는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다면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중간소득층 이상의 기혼여성에게 유의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보다 다양한 정책대안의 개발과 가상모의실험은 추후 연구로 남긴다.

한편 負의 소득세 형태를 지닌 <대안 1>, 즉 먼세점 이하의 여성근로자중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정률 또는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대안 2>, <대안 3>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필요재정소요규모가 크게 확대되지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공급시간 확대효과는 9.5%, 신규 노동시장 참여자 수는 19.6% 증가할 정도로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노동공급 확대로 인해 창출되는 소득창출효과는 필요재정소요규모의 약 4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의 효과는 무직여성들의 시간당 평균임금률이 취업여성들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도출한 것이다. 만약 취업 여부가 시장에서 생산성 차이를 감안한 시장선택의 결과였다면, 전자의 임금률은 후자보다 낮을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 절대수준은 축소되었지만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정(+)의 노동공급확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무직여성과 취업여성 사이의 임금률 상대비, 즉 임금조정요소(waf)의 값에 따라 <대안 1>의 효과와 <대안 1>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소요규모는 달라진다. waf의 값이 0.5~1 사이일 경우 노동공급시간 증대효과는 6.8~9.5%이고 재정소요는 3,240억~4,650억원(세수 15조원 기준시)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창출효과는 이보다 상당히 큰 1조 6,670억~2조 8,73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상기와 같은 정책대안과 기대효과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여성노동공급 확대방안은 負의 소득세 형태를 지니는 자녀세액공제제도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만5세 이하의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이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을 획득할 경우,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30%를 세액공제 방법을 통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이 500만~7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정액으로 150만원을 지원하며, 700만~1천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근로소득 700만원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2008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장려세제와 형태가 유사하다.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 고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상기 방식의 자녀세액공제를 통한 여성노동공급 확대 정책과 유사한 점과 일부 중복되는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양자 간에 중복이 없도록 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도를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김현숙·원종학, 『여성노동공급과 조세·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 비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4-04,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제4권, 한국조세연구원(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 2005.
- 성명재,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성명재·전영준, 『소득세제의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98-02,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안종범·송재창, 「저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재분배 효과와 재정수요를 중심으로, 『한국재정』, 2000.
- 이철인, 『고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03-03,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전병목·이상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EITC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전영준·김재진,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 과제』, 고령화대비 협동연구시리즈 04-01, 2004a.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노동시장』, 고령화대비 협동연구시리즈 04-03, 2004b.

- 한도숙,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0.
- Averett, Peters, and Waldman, “Tax Credits, Labor Supply, and Child Ca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9, No. 1, 1997.
- Blau David and Janet Curre, Preschol, “Day Care and After School Care : Who’s Minding Kids?,” Working Paper, 2003.
- Blau and Robins, “Child-Care Costs and Family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0, No. 3, 1988.
- Chevalier, A. and T. K. Viitanen, “The Causality Betwee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Availability of Childcare,”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9, November 2002, pp. 915~918.
- Connelly, R.,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1), 1992, pp 83~90.
- Edgerton, Jess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Stanford University, 2002.
- Eissa, Nada, “Taxation and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 the Tax Reform Act of 1986 as a Natural Experiment,” NBER Working Paper, No. 5023, 1995.
- Eissa and Nichols, “Tax Transfer Policies and Labor Market Outcomes,” AEA/NEA Joint Session on Skills, Policy and Labor Market Outcomes Across Demographic

Groups, 2005.

- Falzone, J. S., "Labor Market Decisions of Married Women: With Emphasis on "Part-time" Employment,"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Vol. 6, No. 4, 2000, pp. 662~671.
- Gellbach, J. B., "Public Schooling for Young Children and Maternal Labor Suppl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No. 1, pp. 307~322, 2002.
- Hausman, J., "Labor Supply," in Aaron H. and Pechman, J (eds), *How Taxes Affect Economic Behavior*, Brookings, Washington D.C., 1981.
- Jaumotte 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 Past Trends and Main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76, OECD, 2003.
- Kumar, Anil, "Lifecycle Consistent Estimation of Effects of Taxes on Female Labor Supply in the US : Evidence from Panel Data," Working Paper 05-04,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2005.
- Lee, Chul-In, "The Effects of the Korean Income Taxation on Labor Supply and Welfare : A Piecewise-Linear Budget Constraint Approach Combined with IV Estimation,"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20, No.2, 2004.
- Lee, Myungheon and Young Jun Chun, "The Effect of EITC on Labor Supply," University of Incheon, 2005.
- Michalopoulos. C., P. K. Robins, and I. Garfinkel. "A

- Structural Model of Labor Supply and Child Care Demand,”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 1992, pp. 166~203.
- Moffitt, R., “The Econometrics of Piecewise-Linear Budget Constraint : A Survey and Exposition of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4: 317~27, 1986.
- Moffitt, R., “The Econometrics of Kinked Budget Constrai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4, No. 2, 1990, pp. 119~139.
- Ribar, David C., “A Structural Model of 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Working Paper 1-91-1, 1990.
- Ribar, David C., “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 1995, pp. 134~165.
- Robins, Phillip, “Federal Financing of Child Care : Alternative Approaches and Economic Implication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9, 1990.
- Sleebos, Jolle, E.,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3, OECD, 2003.

## <부록 I>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의 추정결과 연장표

<부표 I-1>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 ( $\ln(\frac{l}{c})$ ) 추정 I

변수	OLS	IV = 세전 소득-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교육수준, 경력, 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세전소득-시간당 보육비용추정치, 교육수준, 경력
log(w*)	-0.101** (-3.54)	-0.224** (-4.74)	-0.484** (-5.61)	-0.281** (-6.20)
고3 이하 자녀수	-0.077 (-1.37)	-0.060 (-1.17)	-0.134** (-2.29)	-0.074 (-1.44)
만 0~2세 영아 유무	-0.039 (-0.43)	-0.079 (-0.95)	0.027 (0.29)	-0.069 (-0.83)
만 3~5세 유아 유무	0.147 (1.87)	0.125 (1.77)	0.169* (2.17)	0.133 (1.88)
연령	0.011 (2.54)	0.002 (0.57)	0.0006 (0.13)	0.002 (0.44)
상수	-8.920(-28.39)	-7.620** (-16.35)	-5.353** (-6.71)	-7.109** (-15.78)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부표 I-2>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 ( $\ln(\frac{l}{c})$ ) 추정 II

변수	OLS'	IV = 세전 소득-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교육수준, 경력, 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세전소득-시간당 보육비용추정치, 교육수준, 경력
log(w*)	-0.109** (-4.21)	-0.237** (-5.60)	-0.667** (-7.63)	-0.297** (-7.35)
고3 이하 자녀수	-0.047 (-0.91)	-0.053 (-1.14)	-0.192** (-3.26)	-0.067 (-1.46)
만 0~2세 영아 유무	0.597** (6.53)	0.522** (5.76)	0.741** (6.51)	0.541** (6.00)
만 3~5세 유아 유무	0.516** (6.53)	0.473** (6.75)	0.597** (6.81)	0.486** (6.97)
연령	0.014* (3.63)	0.003* (0.76)	-0.0008 (-0.18)	0.002 (0.60)
$\lambda_p$	-4.262** (-11.06)	-4.181** (-11.79)	-4.765** (-10.92)	-4.240** (-12.01)
상수	-7.056** (-21.23)	-6.000** (-12.09)	-1.511 (-1.73)	-5.029**(-11.22)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부표 1-3> 기혼여성 임금근로자 노동공급함수 ( $\ln(\frac{l}{c})$ ) 추정

변수	OLS	IV = 세전 소득-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교육수준, 경력, 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세전소득-시간당 보육비용추정치, 교육수준, 경력
log(w*)	-0.132** (-5.43)	-0.238** (-8.54)	-0.650** (-9.07)	-0.324** (-8.09)
고3 이하 자녀수	-0.044 (-0.95)	-0.054 (-1.26)	-0.198** (-3.68)	-0.074 (-1.75)
만 0~2세 영아 유무	0.518** (5.48)	0.534** (6.21)	0.746** (7.06)	0.569** (6.67)
만 3~5세 유아 유무	0.443** (6.18)	0.426** (6.52)	0.572** (7.14)	0.445** (6.86)
연령	0.002 (0.42)	-0.002 (-0.44)	-0.002 (-0.48)	-0.002 (-0.51)
$\lambda_p$	-4.982** (-13.51)	-4.926** (-14.60)	-5.204** (-12.85)	-4.971** (-14.81)
상수	-5.96** (-18.04)	-4.964** (-11.09)	-1.280 (-1.82)	-4.200** (-9.74)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부표 1-4> 기혼여성 임금탄력성 추정

모형		OLS	IV = 세전 소득-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교육수준, 경력, 시간당 보육비용 추정치	IV = 세전소득-시간당 보육비용추정치, 교육수준, 경력
표본선택 무시 (전체표본)	비보상	-0.32	-0.29	-0.07	-0.30
	보상	0.03	0.06	0.21	0.05
표본선택 고려 (전체표본)	비보상	-0.32	-0.28	-0.12	-0.30
	보상	0.04	0.09	0.25	0.11
표본선택 고려 (임금근로자)	비보상	-0.28	-0.30	-0.12	-0.27
	보상	0.10	0.10	0.27	0.13

## <부록 II> 부양가족 수별 면세점 및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부표 II-1>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2004년 세법 및 본인+부양자녀 1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10,904,762	0
② 10,904,762~15,000,000	2.12625
③ 15,000,000~19,006,536	3.4425
④ 19,006,536~24,235,294	5.355
⑤ 24,235,294~26,522,875	10.71
⑥ 26,522,875~30,000,000	15.3
⑦ 30,000,000~45,000,000	16.2
⑧ 45,000,000~57,210,526	17.1
⑨ 57,210,526~99,315,789	25.65
⑩ 99,315,789~	34.2

<부표 II-2>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2004년 세법 및 본인+부양자녀 2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11,857,143	0
② 11,857,143~15,000,000	2.12625
③ 15,000,000~19,594,772	3.4425
④ 19,594,772~24,823,529	5.355
⑤ 24,823,529~27,111,110	10.71
⑥ 27,111,110~30,000,000	15.3
⑦ 30,000,000~45,000,000	16.2
⑧ 45,000,000~57,736,842	17.1
⑨ 57,736,842~99,842,105	25.65
⑩ 99,842,105~	34.2

<부표 II-3>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2004년 세법 및 본인+부양자녀 3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13,761,905	0
② 13,761,905~15,000,000	2.12625
③ 15,000,000~20,771,243	3.4425
④ 20,771,243~26,000,000	5.355
⑤ 26,000,000~28,287,581	10.71
⑥ 28,287,581~30,000,000	15.3
⑦ 30,000,000~45,000,000	16.2
⑧ 45,000,000~58,789,474	17.1
⑨ 58,789,474~100,894,737	25.65
⑩ 100,894,737~	34.2

<부표 II-4>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2004년 세법 및 본인+부양자녀 4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15,411,765	0
② 15,411,765~21,947,713	4.01625
③ 21,947,713~27,176,471	5.355
④ 27,176,471~29,464,052	10.71
⑤ 29,464,052~30,000,000	15.3
⑥ 30,000,000~45,000,000	16.2
⑦ 45,000,000~59,842,106	17.1
⑧ 59,842,106~101,947,368	25.65
⑨ 101,947,368~	34.2

<부표 II-5>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2004년 세법 및 본인+부양자녀 5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16,588,235	0
② 16,588,235~23,124,184	4.01625
③ 23,124,184~28,352,941	5.355
④ 28,352,941~30,000,000	10.71
⑤ 30,000,000~30,604,938	11.34
⑥ 30,604,938~45,000,000	16.2
⑦ 45,000,000~60,894,737	17.1
⑧ 60,894,737~103,000,000	25.65
⑨ 103,000,000~	34.2

<부표 II-6>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2004년 세법 및 본인+부양자녀 6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17,764,706	0
② 17,764,706~24,300,654	4.01625
③ 24,300,654~29,529,412	5.355
④ 29,529,412~30,000,000	10.71
⑤ 30,000,000~31,716,049	11.34
⑥ 31,716,049~45,000,000	16.2
⑦ 45,000,000~61,947,368	17.1
⑧ 61,947,368~104,052,632	25.65
⑨ 104,052,632~	34.2

<부표 II-7>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2004년 세법 및 본인+부양자녀 7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18,941,176	0
② 18,941,176~25,477,125	4.01625
③ 25,477,125~30,000,000	5.355
④ 30,000,000~30,666,667	5.67
⑤ 30,666,667~32,827,160	11.34
⑥ 32,827,160~45,000,000	16.2
⑦ 45,000,000~63,000,000	17.1
⑧ 63,000,000~105,105,263	25.65
⑨ 105,105,263~	34.2

<부표 II-8>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1안, 본인+부양자녀 1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5,000,000	-30
② 5,000,000~7,000,000	0
③ 7,000,000~10,000,000	50
④ 10,000,000~10,904,762	0
⑤ 10,904,762~15,000,000	2.12625
⑥ 15,000,000~19,006,536	3.4425
⑦ 19,006,536~24,235,294	5.355
⑧ 24,235,294~26,522,875	10.71
⑨ 26,522,875~30,000,000	15.3
⑩ 30,000,000~45,000,000	16.2
⑪ 45,000,000~57,210,526	17.1
⑫ 57,210,526~99,315,789	25.65
⑬ 99,315,789~	34.2

<부표 II-9>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1안, 본인+부양자녀 2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5,000,000	-30
② 5,000,000~7,000,000	0
③ 7,000,000~10,000,000	50
④ 10,000,000~11,857,143	0
⑤ 11,857,143~15,000,000	2.12625
⑥ 15,000,000~19,594,772	3.4425
⑦ 19,594,772~24,823,529	5.355
⑧ 24,823,529~27,111,110	10.71
⑨ 27,111,110~30,000,000	15.3
⑩ 30,000,000~45,000,000	16.2
⑪ 45,000,000~57,736,842	17.1
⑫ 57,736,842~99,842,105	25.65
⑬ 99,842,105~	34.2

<부표 II-10>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1안, 본인+부양자녀 3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5,000,000	-30
② 5,000,000~7,000,000	0
③ 7,000,000~10,000,000	50
④ 10,000,000~13,761,905	0
⑤ 13,761,905~15,000,000	2.12625
⑥ 15,000,000~20,771,243	3.4425
⑦ 20,771,243~26,000,000	5.355
⑧ 26,000,000~28,287,581	10.71
⑨ 28,287,581~30,000,000	15.3
⑩ 30,000,000~45,000,000	16.2
⑪ 45,000,000~58,789,474	17.1
⑫ 58,789,474~100,894,737	25.65
⑬ 100,894,737~	34.2

<부표 II-11>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1안, 본인+부양자녀 4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5,000,000	-30
② 5,000,000~7,000,000	0
③ 7,000,000~10,000,000	50
④ 10,000,000~15,411,765	0
⑤ 15,411,765~21,947,713	4.01625
⑥ 21,947,713~27,176,471	5.355
⑦ 27,176,471~29,464,052	10.71
⑧ 29,464,052~30,000,000	15.3
⑨ 30,000,000~45,000,000	16.2
⑩ 45,000,000~59,842,106	17.1
⑪ 59,842,106~101,947,368	25.65
⑫ 101,947,368~	34.2

<부표 II-12>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1안, 본인+부양자녀 5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5,000,000	-30
② 5,000,000~7,000,000	0
③ 7,000,000~10,000,000	50
④ 10,000,000~16,588,235	0
⑤ 16,588,235~23,124,184	4.01625
⑥ 23,124,184~28,352,941	5.355
⑦ 28,352,941~30,000,000	10.71
⑧ 30,000,000~30,604,938	11.34
⑨ 30,604,938~45,000,000	16.2
⑩ 45,000,000~60,894,737	17.1
⑪ 60,894,737~103,000,000	25.65
⑫ 103,000,000~	34.2

<부표 II-13>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1안, 본인+부양자녀 6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5,000,000	-30
② 5,000,000~7,000,000	0
③ 7,000,000~10,000,000	50
④ 10,000,000~17,764,706	0
⑤ 17,764,706~24,300,654	4.01625
⑥ 24,300,654~29,529,412	5.355
⑦ 29,529,412~30,000,000	10.71
⑧ 30,000,000~31,716,049	11.34
⑨ 31,716,049~45,000,000	16.2
⑩ 45,000,000~61,947,368	17.1
⑪ 61,947,368~104,052,632	25.65
⑫ 104,052,632~	34.2

<부표 II-14>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1안, 본인+부양자녀 7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5,000,000	-30
② 5,000,000~7,000,000	0
③ 7,000,000~10,000,000	50
④ 10,000,000~18,941,176	0
⑤ 18,941,176~25,477,125	4.01625
⑥ 25,477,125~30,000,000	5.355
⑦ 30,000,000~30,666,667	5.67
⑧ 30,666,667~32,827,160	11.34
⑨ 32,827,160~45,000,000	16.2
⑩ 45,000,000~63,000,000	17.1
⑪ 63,000,000~105,105,263	25.65
⑫ 105,105,263~	34.2

<부표 II-15>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3안, 본인+부양자녀 1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26,522,875	0
② 26,522,875~30,000,000	57.8
③ 30,000,000~35,975,309	61.2
④ 35,975,309~45,000,000	16.2
⑤ 45,000,000~57,210,526	17.1
⑥ 57,210,526~99,315,789	25.65
⑦ 99,315,789~	34.2

<부표 II-16>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3안, 본인+부양자녀 2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27,111,111	0
② 27,111,111~30,000,000	57.8
③ 30,000,000~36,530,864	61.2
④ 36,530,864~45,000,000	16.2
⑤ 45,000,000~57,736,842	17.1
⑥ 57,736,842~99,842,105	25.65
⑦ 99,842,105~	34.2

<부표 II-17>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3안, 본인+부양자녀 3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28,287,581	0
② 28,287,581~30,000,000	57.8
③ 30,000,000~37,641,976	61.2
④ 37,641,976~45,000,000	16.2
⑤ 45,000,000~58,789,474	17.1
⑥ 58,789,474~100,894,737	25.65
⑦ 100,894,737~	34.2

<부표 II-18>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3안, 본인+부양자녀 4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29,464,052	0
② 29,464,052~30,000,000	57.8
③ 30,000,000~38,753,087	61.2
④ 38,753,087~45,000,000	16.2
⑤ 45,000,000~59,842,106	17.1
⑥ 59,842,106~101,947,368	25.65
⑦ 101,947,368~	34.2

<부표 II-19>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3안, 본인+부양자녀 5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30,604,938	0
② 30,604,938~39,864,198	61.2
③ 39,864,198~45,000,000	16.2
④ 45,000,000~60,894,737	17.1
⑤ 60,894,737~103,000,000	25.65
⑦ 103,000,000~	34.2

<부표 II-20>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3안, 본인+부양자녀 6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31,716,049	0
② 31,716,049~40,975,309	61.2
③ 40,975,309~45,000,000	16.2
④ 45,000,000~61,947,368	17.1
⑤ 61,947,368~104,052,632	25.65
⑦ 104,052,632~	34.2

<부표 11-21>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분포  
(제3안, 본인+부양자녀 7인 기준)

(단위: 원, %)

근로소득 구간	한계세율
① 0~32,827,160	0
② 32,827,160~42,086,420	61.2
③ 42,086,420~45,000,000	16.2
④ 45,000,000~63,000,000	17.1
⑤ 63,000,000~105,105,263	25.65
⑦ 105,105,263~	34.2

## <부록 III> 소득세 과세체계의 변천

### 1. 세율체계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는 초과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소득세부담 분포가 누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득세의 세율구간은 16~17단계에 이를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었으며 세율구간별 세율격차도 상당히 작은 편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세율단계의 수가 대폭 축소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는 4~5단계로 줄어들었다. 세율 수준은 1980년대의 경우 최고세율이 6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2005년 현재 35%이다<sup>17)</sup>.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세율구간은 1980년대 중반에는 6천만원 초과였으며, 1989년에는 5천만원으로 낮아졌다가 1993년부터는 6,400만원 초과분으로 다시 높아졌으며, 1996년에는 8천만원 초과분으로 상향조정된 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변화가 없다.

17) 소득세 최저세율은 시기에 따라 5~6%에서 10%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다. 2005년 현재 최저세율은 8%이다.

<부표 III-1> 종합소득세 세율체계

	1982	1983~1988	1989~1990
	<p>* 17단계(6~60%)</p> <p>120만원 이하 : 6%</p> <p>120~180만원 : 7만 2천원 + 7%</p> <p>180~240만원 : 11만 4천원 + 8%</p> <p>240~300만원 : 16만 2천원 + 10%</p> <p>300~390만원 : 22만 2천원 + 12%</p> <p>390~480만원 : 33만원 + 15%</p> <p>480~600만원 : 46만 5천원 + 18%</p> <p>600~840만원 : 68만 1천원 + 22%</p> <p>840~1,140만원 : 120만 9천원 + 26%</p> <p>1,140~1,500만원 : 198만 9천원 + 30%</p> <p>1,500~1,900만원 : 306만 9천원 + 34%</p> <p>1,900~2,400만원 : 442만 9천원 + 38%</p> <p>2,400~3,000만원 : 632만 9천원 + 42%</p> <p>3,000~3,800만원 : 884만 9천원 + 48%</p> <p>3,800~4,800만원 : 1,252만 9천원 + 50%</p> <p>4,800~6,000만원 : 1,752만 9천원 + 55%</p> <p>6000만원 초과 : 2,412만 9천원 + 60%</p>	<p>* 16단계(6~55%)</p> <p>180만원 이하 : 6%</p> <p>180~250만원 : 10만 8천원 + 8%</p> <p>250~350만원 : 16만 4천원 + 10%</p> <p>350~480만원 : 26만 4천원 + 12%</p> <p>480~630만원 : 42만원 + 15%</p> <p>630~800만원 : 64만 5천원 + 18%</p> <p>800~1,000만원 : 95만 1천원 + 21%</p> <p>1,000~1,250만원 : 137만 1천원 + 24%</p> <p>1,250~1,550만원 : 197만 1천원 + 27%</p> <p>1,550~1,900만원 : 278만 1천원 + 31%</p> <p>1,900~2,300만원 : 386만 6천원 + 35%</p> <p>2,300~2,900만원 : 526만 6천원 + 39%</p> <p>2,900~3,700만원 : 760만 6천원 + 43%</p> <p>3,700~4,700만원 : 1,104만 6천원 + 47%</p> <p>4,700~6,000만원 : 1,574만 6천원 + 51%</p> <p>6,000만원 초과 : 2,237만 6천원 + 55%</p>	<p>* 8단계(5~50%)</p> <p>250만원 이하 : 5%</p> <p>250~500만원 : 12만 5천원 + 10%</p> <p>500~800만원 : 37만 5천원 + 15%</p> <p>800~1,200만원 : 82만 5천원 + 20%</p> <p>1,200~1,700만원 : 162만 5천원 + 25%</p> <p>1,700~2,300만원 : 287만 5천원 + 30%</p> <p>2,300~5,000만원 : 467만 5천원 + 40%</p> <p>5,000만원 초과 : 1,547만 5천원 + 50%</p>

<부표 III-1>의 계속

	1991~1992	1993	1994~1995
	* 5단계(5~50%) 400만원 이하 : 5% 400~1,000만원 : 20만원 + 16% 1,000~2,500만원 : 116만원 + 27% 2,500~5,000만원 : 521만원 + 38% 5,000만원 초과 : 1,471만원 + 50%	* 6단계(5~50%) 400만원 이하 : 5% 400~800만원 : 20만원 + 10% 800~1,600만원 : 60만원 + 20% 1,600~3,200만원 : 220만원 + 30% 3,200~6,400만원 : 700만원 + 40% 6,400만원 초과 : 1,980만원 + 50%	* 6단계(5~45%) 400만원 이하 : 5% 400~800만원 : 20만원 + 9% 800~1,600만원 : 56만원 + 18% 1,600~3,200만원 : 200만원 + 27% 3,200~6,400만원 : 632만원 + 36% 6,400만원 초과 : 1,784만원 + 45%
	1996~2001	2002~2004	2005
	* 4단계(10~40%) 1000만원 이하 : 10% 1,000~4,000만원 : 100만원 + 20% 4,000~8,000만원 : 700만원 + 30% 8,000만원 초과 : 1,900만원 + 40%	* 4단계(9~36%) 1,000만원 이하 : 9% 1,000~4,000만원 : 90만원 + 18% 4,000~8,000만원 : 630만원 + 27% 8,000만원 초과 : 1,710만원 + 36%	* 4단계(8~35%) 1,000만원 이하 : 8% 1,000~4,000만원 : 80만원 + 17% 4,000~8,000만원 : 590만원 + 26% 8,000만원 초과 : 1,630만원 + 35%

<부표 III-2>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1982~1988	1989~1990	1991~1992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 (1인당 30만원)</li> <li>· 배우자공제 (1인당 42만원)</li> <li>· 부양가족공제 (1인당 24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 (1인당 48만원)</li> <li>· 배우자공제 (1인당 54만원)</li> <li>·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 (1인당 48만원)</li> <li>· 배우자공제 (1인당 54만원)</li> <li>·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li> </ul>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공제(1인당 3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공제(1인당 48만원)</li> <li>· 경로우대공제 (1인당 36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공제(1인당 48만원)</li> <li>· 경로우대공제 (1인당 48만원)</li> <li>· 부녀자세대주공제(1인당 54만원)</li> </ul>
	1995	1996~2001	2002~2003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 (1인당 72만원)</li> <li>· 배우자공제 (1인당 54만원)</li> <li>·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①본인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인자) ④생활보호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①당해거주자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④기초생활보장수급자</li> </ul>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공제(1인당 54만원)</li> <li>· 경로우대공제 (1인당 48만원)</li> <li>· 부녀자세대주공제(1인당 54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①본인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인자) ④생활보호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①당해거주자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④기초생활보장수급자</li> </ul>
소수자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①본인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인자) ④생활보호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①당해거주자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④기초생활보장수급자</li> </ul>

<부표 III-2>의 계속

	1993	1994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 (1인당 60만원)</li> <li>· 배우자공제 (1인당 54만원)</li> <li>·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 (1인당 72만원)</li> <li>· 배우자공제 (1인당 54만원)</li> <li>·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li> </ul>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공제(1인당 48만원)</li> <li>· 경로우대공제 (1인당 48만원)</li> <li>· 부녀자세대추공제(1인당 54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공제(1인당 48만원)</li> <li>· 경로우대공제 (1인당 48만원)</li> <li>· 부녀자세대추공제(1인당 54만원)</li> </ul>
	2004	2005
기본공제	<p>1인당 10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①당해거주자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④기초생활보장수급자</li> </ul>	<p>1인당 10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①당해거주자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④기초생활보장수급자</li> </ul>
추가공제	<p>1인당 100만원(단 ①의 경우 7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50만원, ③의 경우에는 5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로자(65세 이상)</li> <li>② 장애자</li> <li>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li> <li>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li> </ol> </li> </ul>	<p>기본공제대상자 대상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로자(65세 이상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li> <li>② 장애자(1인당 200만원)</li> <li>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1인당 50만원)</li> <li>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1인당 100만원)</li> </ol>
소수자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만원</li> <li>·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만원</li> <li>·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li> </ul>

## 2. 각종 공제체계

소득세의 소득공제체계는 공제 기준 또는 특성에 따라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소득자(거주자) 자신과 부양가족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하에 소득공제액이 결정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대상이 선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적공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인적 특성을 토대로 정액으로 공제액이 결정된다. 인적공제의 종류는 소득자와 부양가족(미성년 또는 노인 대상)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공제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허용해주는 추가공제, 1인 및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수자추가공제 등이 있다. 추가공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그 밖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가 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상기의 소득공제와 함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세의 한계세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해준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의 또다른 형태로 볼 수도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공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 중 일정 수준(2005년 현재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을 소득공제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점차 낮은 비율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00년까지는 근로소득공제의 공제한도를 설정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4,500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5%의 비율로 근로소득공제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특별공제는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

금, 주택자금마련저축 등을 대상으로 항목별로 공제한도를 두어 소득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표준공제라고 하여 60만원 정액을 공제해준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특별공제 대상금액이 표준공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2005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지만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사이의 세부담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와 같이 소득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의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소득포착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수령 시점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면서 소득의 거의 대부분이 과세당국에 보고되기 때문에 소득탈루율이 상당히 낮다. 반면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매입·매출의 축소·은폐·허위보고 등을 통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탈루하고 있다. 사업소득의 상당 부분이 탈루되고 있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탈루되는 부분을 축소하고 소득포착률을 제고하는 것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비롯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세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표 III-3> 근로소득공제의 변천

(단위: 만원)

	1982	1983~1988	1989~1990	1991~1992	1993
구간별 공제율	88 이하: 전액 88~300: 20% 300~ : 10%	94 이하: 전액 94~300: 20% 300~ : 10%	140 이하: 전액 140~400: 25% 400~ : 15%	230 이하: 전액 230~ : 30%	250 이하: 전액 250~ : 30%
공제한도 (상한)	170	170	230	490	600
	1994	1995	1996	1997~1998	1999~2000
구간별 공제율	270 이하: 전액 270~ : 30%	310 이하: 전액 310~ : 30%	~400: 전액 400~ : 30%	~500: 전액 500~ : 30%	~ 500: 전액 500~1500: 40% 1500~ : 10%
공제한도 (상한)	620	690	800	900	1200
	2001		2002~2003.7		2003.7~현재
구간별 공제율	~500: 전액 500~1500: 40% 1500~4500: 10% 4500~ : 5%		~500: 전액 500~1500: 45% 1500~3000: 15% 3000~4500: 10% 4500~ : 5%		~500: 전액 500~1500: 50% 1500~3000: 15% 3000~4500: 10% 4500~ : 5%
공제한도 (상한)	없음		없음		없음

주 : 2003년 7월의 소득세법개정으로 500만~1,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표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됨. 경과조치로 2003년 소득은 공제율을 1000분의 475로 함.

<부표 III-4>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변천

(단위: 만원)

	1982	1983~1988	1989	1990 상반기	1990.7
구간별 공제율	월급여 30~40: 10%	월급여 30~40: 20% 월급여 40~50: 10%	폐지	산출세액의 20%	월급여액~100: 40% 월급여액 100~: 30%
공제한도	-	-	-	30	80
	1991~1992	1993~1996	1997~2001	2002~2003상반기	2003.7~
구간별 공제율	연급여액 3,600이하 산출세액의 20%	전근로자 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50: 45% 산출세액 50~: 30%	산출세액~50: 45% 산출세액 50~: 30%	산출세액~50: 55% 산출세액 50~: 30%
공제한도	50	50	60	40	50

##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김현숙 · 성명재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노년인구 수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노동력 인구비중이 감소해가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여 미래의 노동력 풀(pool)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를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휴노동력의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여성이며 여성 중에서도 가사, 육아, 학업을 이유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기혼여성이다.

그런데 기혼여성은 출산 및 육아를 통해 미래의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장려가 출산 및 육아부담을 가중시켜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는 대신 출산율이 감소하면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일하는 기혼여성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출산과 노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 소득세체계를

개편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Child Tax Credit)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후소득에 근거한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를 효용함수가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함수라는 가정하에 구축하고 2004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여 기혼여성이 소득세 부담에 따라 노동공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였다. 남성의 노동공급함수와 달리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세후소득에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 지출을 차감함으로써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였다.

추정결과 세전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을 차감한 세후소득에 대한 기혼여성의 보상임금탄력성은 0.23~0.26으로 세후소득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노동공급함수 추정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보육비용 지출을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때 과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종의 음(-)의 소득세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유사한 내용으로 면세점 이하의 기혼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과 유사하게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전제로 하여 지급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소 다르다.

구체적인 디자인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를 세액공제해주고 근로소득이 500만~700만원인 경우에는 정책으로 150만원을 지원하며 700만~1,000만원인 경우에는 150만원에 근로소득 700만원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급증-평탄-급감구간을 도입하였다. 이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 참가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의 확대는 9.5%, 신규 노동시장참가비율은 19.6% 증가하여 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나타나는 소득창출효과는 필요재정규모의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정 소득구간에 한하여 정책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혼여성 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며 가구소득이 2,400만~4,800만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정책을 세액공제해주는 경우로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노동공급시간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면세점 이상의 중간소득층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의 45%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액이 50만~125만원인 경우에는 세액 50만원 초과분의 70%를 세액공제하며 근로소득세액이 125만~275만원인 경우 세액 75만원에서 세액 125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노동시장참가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노동공급시간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시행시의 세수감소분에 비해 노동공급 증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된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에 의거할 때 기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는 첫 번째 시나리오인 負(-)의 소득세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행예정인 근로장려세제와 다소 유사하므로 두 제도 간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고려한 후 두 제도를 연계하는 방

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휴인력의 가장 큰 풀(pool)인 25~49세의 전문대졸 이상의 기혼여성에게 정액이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노동시장참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는데 하나는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기혼여성의 소득에 비해 제공하는 세액공제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세액공제방식이나 금액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기혼여성의 세후순소득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도출하고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의 구성시 자녀 수나 자녀의 연령은 효용함수에 직접적인 요소로 사용되지 않고 가구의 예산제약이나 가구의 노동과 여가 간의 대체와 관련한 선호에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CES 노동공급함수를 이용하여 남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여성에게 변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여성 고유의 노동공급함수를 새롭게 구축하여 이를 이용한 임금탄력성 추정이 필요하다. 임금탄력성이 다소 낮은 이유도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의 형태에 대한 가정에 기인할 수도 있다.

둘째,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나 추가적인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세 가지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고학력 기혼여성에게 효과가 없는 제도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장려하는 정책적인 제도를 고안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Abstract>

## Income Tax Policy to Enhanc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 Introduction of Child Tax Credit

Kim, Hyunsook and Sung, Myung Jae

The trend toward very rapidly fallen total fertility rates and population ageing causes high share of elderly and low share of young and labor active population in Korea. It may imply the slow or negative economic growth in the economy due to the shortage of labor force in the future.

We need to devise policy tools to increase fertility rates to cope with shortage of labor supply in the long run. At the same time, we need to induce inactive labor force into participating in labor market in the short term and the main force for inactive labor is married women in Korea.

It is well-known that there may be a trade-off between fertility rates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recently this relationship is changed to positive relationship in a few countries due to strong family friendly government policies.

Thus we need to consider how to get high fertility rates as well as high married or coupl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in designing a family friendly government

policy. One of policy tools is to help women with children under age 5 to reconcile work and child rearing, i.e., child care policy.

Our research agenda is to lessen households' child care expense within income tax scheme using child tax credit and to see how much it can impact o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and working hours.

First, we construct married women's labor supply function under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utility function assumption with the budget constraints incorporating child care expense and hour allocation (working-leisure) constraint. We estimate compensated and uncompensated wage elasticity for married women using year 2004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get the compensated elasticity ranged from 0.23 to 0.26.

We waive child care expense via child tax credit and increase women's effective hourly wage to see child care cost impact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ing hours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nder age 5.

We simulate three different child tax credit scheme to compare effects of different schemes. First, we give child tax credit for only low income women workers with children under age 5 without tax burden in current income tax regime. We design increasing-constant-decreasing tax credit bracket based on the income size as 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 does. The size of child tax credit is 30% of income under wage 5 million won, 1,500 thousand won for

income 5~7 million won of income range and 50% of the difference between income and 7 million won for income 7~10 million won.

This scheme creates 19.6% increase of new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9.5% increase of working hours. It also creates extra income four times higher compare to tax revenue loss for child tax credit implementation.

Second scheme is to give lump-sum tax credit, 600 thousand won for middle income class and has no effect on married women's labor activity. Third scheme is a proportional tax credit with tax burden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regime and has only a small positive effect on working hours.

We found that negative income tax credit for low income earners has large effect on women's labor market activity whereas child tax credit policy for middle class and highly educated women has little effect.

However, we can not conclude child tax credit for highly educated women has no effect based on this result only. Our income elasticity of married women is relative low and more diverse and sophisticated child tax credit design is needed to examine child tax credit effect o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s well as working hours for the further elaborated study.

<著者略歴>

김현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성명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졸업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研究報告書 06-06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

2006년 12월 22일 인쇄  
2006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김현숙·성명재  
발행인 최용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 쇄 일 지 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6

ISBN 89-8191-338-2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8,000원